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일본 II 편 -

2016. 12.

---

연구총괄 강성훈 부연구위원

연구자 이재선 관 세 사  
노영예 전문연구원  
김미정 연구원

# 목 차

제1편 개 관 .....	1
I. 일반 개황 .....	1
II. 경제 개황 .....	4
1. 주요 경제지표 .....	4
2. 수출입동향 및 교역규모 .....	6
3. 외국인 투자 동향 .....	9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12
IV. 자유무역협정 현황 .....	16
제2편 통관제도 .....	20
I. 통관행정 조직 .....	20
1. 통관행정 관련 조직 .....	20
가. 일본 세관의 역사 .....	20
나. 통관행정조직 .....	23
2. 통관 관련 법률 .....	28
가. 관세 관계법령 .....	28
나. 관세 관계법령 개정절차 .....	30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31
1. 관세의 과세요건 .....	31
가. 과세물건 .....	31

나. 과세표준 .....	33
다. 적용 법령 .....	33
라. 납세의무자 .....	35
마. 과세환율 .....	35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37
가. 세액의 확정방식 .....	37
나. 세액의 정정 .....	38
다. 납부기한 .....	41
라. 가산세 .....	43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46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46
나. 통관 관련 수수료 .....	47
<b>Ⅲ. 관세평가제도 .....</b>	<b>51</b>
1. 관세평가 .....	51
2. 과세가격 결정방법 .....	52
가.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	52
나. 원칙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 .....	61
다.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	64
3. 과세가격의 신고 .....	66
가. 평가신고제도 .....	66
나. 과세가격 사전교시제도 .....	69
<b>Ⅳ.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b>	<b>72</b>
1. 품목분류와 관세율 .....	72
가.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	72
나.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 .....	75
다. 관세율 수준 .....	77
2. 관세율의 형태와 종류 .....	82
가. 관세율의 형태 .....	82
나. 관세율의 종류 .....	87

<b>V. 감면 및 환급제도</b>	<b>106</b>
1. 관세의 감면제도	108
가. 관세정률법상 감면제도	108
나. 관세잠정조치법상 감면제도	123
다. 감면 사전교시제도	123
2. 관세정률법상 환급제도	126
3. 기타 환급제도	131
가. 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131
나. 특수 관세 환급	131
<b>VI. 원산지제도</b>	<b>132</b>
1. 원산지 규정 개요	132
2. 특혜 원산지 규정	133
가. EPA 원산지 기준	133
나.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기준	137
3. 비특혜 원산지 규정	141
가.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관련 규정	141
나. 비특혜 원산지 증명 및 절차	142
4. 원산지 사전교시제도	143
가. 원산지 사전교시	143
나. 원산지 사전교시 신청 절차 및 이메일 신청절차	143
다. 사전교시서의 효력 및 이의제기	145
5. 원산지 표시	146
가. 관세법	146
나. 부당 경품·표시 방지법	148
<b>VII. 보세제도</b>	<b>151</b>
1. 보세제도 개요	151
2. 보세지역의 종류	152
가. 지정보세지역	152
나. 보세장치장	153
다. 보세공장	156

라. 보세전시장 .....	158
마. 종합보세지역 .....	159
3. 보세운송 .....	160
가. 보세운송 절차 .....	161
나. 특례보세운송제도 .....	161
<b>VIII. 수출입 규제 .....</b>	<b>163</b>
1. 수출입 금지 .....	164
가. 수입 금지 물품 .....	164
나. 수출 금지 물품 .....	164
2. 외위법에 의한 수출입 규제 .....	165
가. 수입규제 .....	165
나. 수출규제 .....	178
3. 세관이 확인하는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규제 .....	181
가. 수입규제 .....	181
나. 수출규제 .....	195
4. 품질표시 관련제도 .....	197
가. 농산물 품질표시법(JAS법) .....	198
나.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	200
다. 유해가정용품 규제법 .....	201
라. 기타 관련 법 .....	201
<b>IX. 행정구제제도 .....</b>	<b>203</b>
1. 행정구제제도 개요 .....	203
가. 개요 .....	203
나. 행정구제 관련법 .....	204
2. 재조사청구 .....	205
가. 재조사청구 절차 .....	205
나. 이의신청 절차 .....	207
3. 심사청구 .....	209
4. 소송 .....	210

<b>X. 벌칙</b> .....	<b>211</b>
1. 벌칙 개요 .....	211
2. 관세 형벌 .....	212
가. 일본 관세법상 관세 형벌의 특징 .....	212
나. 관세법상 실질범(밀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	214
다. 관세법상 형식범(질서범)에 대한 처벌규정 .....	220
라. FTA 관련 처벌 .....	221
3.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	222
가. 조사 .....	222
나. 처분 .....	223
<b>XI. AEO제도</b> .....	<b>224</b>
1. AEO제도 개요 .....	224
2. AEO 공인 기준 .....	225
가. 법규 준수도 .....	226
나. 전자통관 시스템의 운영 .....	228
다. 재정 건전성 .....	228
라. 법규준수규칙 .....	228
마. 기타 AEO 공인기업에 요구되는 보안대책 .....	231
3. AEO 공인 절차 .....	232
4. AEO 혜택 .....	233
5. AEO 사후관리 .....	234
<b>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b> .....	<b>238</b>
<b>I. 통관제도</b> .....	<b>238</b>
1. 통관의 의미 .....	238
2. 전자통관 .....	239
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	239
나. 수출입코드 .....	240
다.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 .....	243

<b>II. 수입 통관 절차</b> .....	<b>245</b>
1. 일반수입통관 .....	245
가. 수입신고 .....	246
나.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	253
다. 관세의 납부 .....	256
라. 수입허가 .....	258
마. 물품 반출 .....	259
바. 서류보관 및 사후조사 .....	264
2. 특수수입통관 .....	265
가. 우편물 .....	265
나. 휴대품·별송품 .....	268
다. 소액물품 .....	270
라. 기타 특수물품 .....	273
<b>III. 수출 통관 절차</b> .....	<b>276</b>
1. 일반수출통관 .....	276
가. 수출신고 .....	277
나.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	281
다. 보세구역 반입 .....	282
라. 수출허가 .....	284
마. 서류보관 및 사후조사 .....	285
2. 특수수출통관 .....	286
가. 휴대품 .....	286
나. 우편물 .....	286
<b>참고문헌</b> .....	<b>288</b>
<b>부록</b> .....	<b>290</b>



# 표 목차

## 제1편

〈표 1-Ⅱ-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대내 경제 .....	5
〈표 1-Ⅱ-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대외 경제 .....	6
〈표 1-Ⅱ-3〉 일본의 수출입 동향 .....	7
〈표 1-Ⅱ-4〉 최근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	7
〈표 1-Ⅱ-5〉 최근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입 실적 .....	8
〈표 1-Ⅱ-6〉 2015년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	9
〈표 1-Ⅱ-7〉 일본의 업종별 대내 직접투자 .....	10
〈표 1-Ⅱ-8〉 일본의 국가별 대내 직접투자 .....	11
〈표 1-Ⅲ-1〉 최근 우리나라의 10대 무역국 현황 .....	12
〈표 1-Ⅲ-2〉 한·일 교역 추이 .....	13
〈표 1-Ⅲ-3〉 최근 對일본 10대 수출품목 .....	14
〈표 1-Ⅲ-4〉 최근 對일본 10대 수입품목 .....	15
〈표 1-Ⅳ-1〉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현황(2016년 6월 기준) .....	17
〈표 1-Ⅳ-2〉 TPP협상 분야 .....	19

## 제2편

〈표 2-I-1〉 일본 세관의 주요 역사 .....	21
〈표 2-I-2〉 세관상담관 설치관서 .....	24
〈표 2-I-3〉 일본 관세국의 주요 업무 .....	26
〈표 2-I-4〉 일본 관세 관계법령 개요 .....	29
〈표 2-Ⅱ-1〉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32
〈표 2-Ⅱ-2〉 예외적인 적용 법령 .....	34

〈표 2-Ⅱ-3〉 예외적인 외환시세 .....	36
〈표 2-Ⅱ-4〉 경정청구 및 경정 등에 관한 개정 내용 .....	39
〈표 2-Ⅱ-5〉 예외적인 관세 등의 납부기한 .....	42
〈표 2-Ⅱ-6〉 관세 등의 납기연장 방식 .....	43
〈표 2-Ⅱ-7〉 가산세의 산출 .....	43
〈표 2-Ⅱ-8〉 세관 관계 수수료 .....	47
〈표 2-Ⅱ-9〉 통관업자에게 통관수수 등을 의뢰한 경우의 요금 .....	49
〈표 2-Ⅲ-1〉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53
〈표 2-Ⅲ-2〉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요소 .....	54
〈표 2-Ⅲ-3〉 로열티 등의 가산요건 .....	57
〈표 2-Ⅲ-4〉 거래가격의 적용 배제 사유 .....	59
〈표 2-Ⅲ-5〉 평가신고서의 제출 및 면제 .....	66
〈표 2-Ⅲ-6〉 개별신고와 포괄신고의 비교 .....	68
〈표 2-Ⅳ-1〉 일본 관세율표 예시 .....	74
〈표 2-Ⅳ-2〉 일본의 품목분류 사전교시 답변 항목 .....	76
〈표 2-Ⅳ-3〉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 .....	78
〈표 2-Ⅳ-4〉 일본 관세율 수준(2015년 기준) .....	79
〈표 2-Ⅳ-5〉 일본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2015년 기준) .....	80
〈표 2-Ⅳ-6〉 일본 산업별 관세율 수준(2015년 기준) .....	81
〈표 2-Ⅳ-7〉 차액관세 예시 .....	84
〈표 2-Ⅳ-8〉 슬라이드관세 예시 .....	85
〈표 2-Ⅳ-9〉 계절관세 예시 .....	86
〈표 2-Ⅳ-10〉 일본 관세의 종류 .....	88
〈표 2-Ⅳ-11〉 휴대품의 간이세율(2016년 기준) .....	90
〈표 2-Ⅳ-12〉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 품목 .....	91
〈표 2-Ⅳ-13〉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표(2016년 기준) .....	91
〈표 2-Ⅳ-14〉 소액 수입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 품목 .....	94
〈표 2-Ⅳ-15〉 과세중인 덤핑방지관세(2016년 기준) .....	97
〈표 2-Ⅳ-16〉 관세할당 적용 품목(2016년 기준) .....	100
〈표 2-Ⅳ-17〉 일본 EPA 현황(2016년 기준) .....	105

〈표 2-V-1〉 일본의 유형별 관세 감면·환급제도 .....	107
〈표 2-V-2〉 감면 대상이 되는 수출물품의 수입원료품 .....	120
〈표 2-V-3〉 관세정률법상 감면제도 .....	122
〈표 2-V-4〉 세관 사전교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	125
〈표 2-V-5〉 관세정률법상 환급제도 .....	130
〈표 2-VI-1〉 일본의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 항목 .....	145
〈표 2-VII-1〉 일본의 보세제도 .....	151
〈표 2-VIII-1〉 외위법에 의한 수입규제 .....	166
〈표 2-VIII-2〉 수입할당 대상물품 .....	167
〈표 2-VIII-3〉 2호 승인 대상물품(특정 지역규제) .....	170
〈표 2-VIII-4〉 2-2호 승인대상물품(전체 지역규제) .....	172
〈표 2-VIII-5〉 사전확인 대상물품 및 확인사항 .....	175
〈표 2-VIII-6〉 통관시 확인 대상물품 및 제출서류 .....	177
〈표 2-VIII-7〉 일본 수출승인 대상물품 .....	179
〈표 2-VIII-8〉 수입규제 타 법령 일람표 .....	182
〈표 2-VIII-9〉 일본 국가 검역 .....	186
〈표 2-VIII-10〉 수출규제 타 법령 일람표 .....	196
〈표 2-X-1〉 관세법상 실질범에 대한 처벌 .....	219
〈표 2-X-2〉 관세법상 형식범에 대한 처벌 .....	220
〈표 2-XI-1〉 일본 내부감사 체크리스트(수입자·수출자용) 예시 .....	235

### 제3편

〈표 3-II-1〉 일본의 세관과 관할 지역 .....	252
〈표 3-II-2〉 수입신고 후 심사의 구분 .....	253
〈표 3-II-3〉 화물검사의 종류와 방법 .....	254
〈표 3-II-4〉 수입허가된 물품으로 간주되는 것 .....	259
〈표 3-II-5〉 특례수입신고제도 승인의 요건 .....	262

〈표 3-Ⅱ-6〉 특례수입신고 시 담보의 제공 .....	263
〈표 3-Ⅱ-7〉 수입서류 보관 의무 .....	264
〈표 3-Ⅱ-8〉 우편물의 간이 통관절차 .....	266
〈표 3-Ⅱ-9〉 우편물의 서류 제출 .....	267
〈표 3-Ⅱ-10〉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268
〈표 3-Ⅱ-11〉 담배의 세율 .....	274
〈표 3-Ⅲ-1〉 특정수출신고제도 승인의 요건 .....	283
〈표 3-Ⅲ-2〉 수출서류 보관 의무 .....	285

# 그림 목차

## 제2편

[그림 2-Ⅷ-1] 일본 식품검역 절차도 .....	188
[그림 2-Ⅷ-2] 일본 식물검역 절차 .....	189
[그림 2-Ⅷ-3] 일본 동물·식물·식품 등 검역절차 체계도 .....	191

## 제3편

[그림 3-Ⅱ-1] 일본의 수입 절차 .....	246
[그림 3-Ⅱ-2] 수입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 .....	249
[그림 3-Ⅱ-3]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 .....	258
[그림 3-Ⅲ-1] 일본의 수출 절차 .....	277
[그림 3-Ⅲ-2] 수출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 .....	279



# 제1편 개 관

## I. 일반 개황

- 정식 국가 명칭은 일본국(日本國, Japan)으로 수도는 도쿄(東京, Tokyo)임<sup>1)</sup>
  - 행정구역은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도(都, 도쿄), 1개의 도(道, 홋카이도), 2개의 부(府, 오사카·쿄토), 43개의 현(縣)으로 세분화됨
  
- 인구는 2016년 7월 기준 약 1억 2,670만명<sup>2)</sup>으로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일본에는 98.5%의 일본계 민족과 0.5%의 한국계 민족, 0.4%의 중국계 민족, 그밖에 0.6%의 다른 민족이 거주함<sup>3)</sup>
  
- 국토의 면적은 377,915km<sup>2</sup>로 우리나라(99,720km<sup>2</sup>)의 약 3.78배에 달하며, 아시아 대륙 동단의 북태평양과 동해(일본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sup>4)</sup>
  - 29,751km에 달하는 해안선은 북태평양, 동해(일본해), 필리핀해에 둘러싸여 있음

---

1) 외교부, [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804/1\\_22621.jsp?menu=m\\_40\\_10\\_20](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804/1_22621.jsp?menu=m_40_10_20), (검색일자: 2016. 8. 22.)

2)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ja.html>, People and Society, (검색일자: 2016. 12. 9.)

3)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rankorder/2119rank.html#ja>, (검색일자: 2016. 12. 9.)

4)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ja.html>, Geography, (검색일자: 2016. 8. 22.)

## 2 제1편 개관

- 공용어는 일본어로 일본 인구의 99% 이상이 사용하고 있음<sup>5)</sup>
  - 도쿄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표준 일본어가 보급되었으며,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방 방언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전체 국민의 79.2%가 신도를 믿고 있으며, 대부분은 불교를 함께 믿고 있음<sup>6)</sup>
  - 신도는 일본 고유의 토속 신앙으로 자연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시작됨  
- 전체 국민 중 1.5%는 기독교를 믿고 있음
- 정치체제는 천황을 국가의 상징(원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의회는 이원제(二院制)이고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首相)이 국정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sup>7)</sup>
  - 주요 정당으로는 자유민주당(LDP), 민주당(DPJ) 등이 있음
- 일본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산업의 비중은 72.2%, 26.6%, 1.2%임
  - 주요 부존자원은 소량의 광물자원(구리, 아연 등) 및 어류자원임<sup>8)</sup>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 빈약한 편임
- 일본의 화폐단위는 ‘엔(円, JPY)’이며, 1달러는 약 121.02JPY임(2015년 기준)<sup>9)</sup>
  - 2010년 중반부터 심화된 엔고 현상으로 인해 2011년 10월에는 1달러에 75엔 수준까지 상승하여 일본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진 바 있었음
  - 아베정권은 1차 양적완화(2014년 4월)로 95엔 수준의 엔화를 100엔 수준까지 떨어트렸고, 2차 양적완화(2015년 10월)를 통해 120엔까지 떨어트렸음

---

5) Web Japan, [http://web-japan.org/factsheet/ko/pdf/kr19\\_language.pdf](http://web-japan.org/factsheet/ko/pdf/kr19_language.pdf), (검색일자: 2016. 8. 22.)

6)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ja.html>, People and Society, (검색일자: 2016. 8. 22.)

7) Web Japan, [http://web-japan.org/factsheet/ko/pdf/kr08\\_governmental.pdf](http://web-japan.org/factsheet/ko/pdf/kr08_governmental.pdf), (검색일자: 2016. 8. 22.)

8)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ja.html>, Economy, (검색일자: 2016. 8. 22.)

9)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ja.html>, Economy, (검색일자: 2016. 12. 9.)



- 일본은 1985년 9월 플라자합의<sup>10)</sup> 이후 20년간 장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엔화가치의 급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붕괴, 정책대응 미흡, 구조개혁 지연, 대외여건 악화, 인구감소, 재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음<sup>11)</sup>
- 대외여건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반복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됨

---

10) 플라자합의는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도록 결의한 조치임

11) 국회예산정책처, 『일본경제 장기침체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2015. 8, pp. 22~38

## II. 경제 개황

### 1 주요 경제지표

---

- 일본의 경제는 2010년 중반부터 시작된 엔고현상과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가 맞물리며 2012년 이후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5조 9,572억달러, 1인당 GDP는 4조 6,683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경제성장률은 2012년 1.7%, 2013년 1.6%에서 2013년에는 -0.1%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 0.6%로 증가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4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7%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2년 2.3%에서 2013년 1.7%, 2014년 0.9%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 1.2%로 증가함
  - 종합주가지수(닛케이)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상승함
  - 실업률은 2012년 4.3%에서 2015년 약 3.4%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음

〈표 1-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대내 경제

구분	2012	2013	2014	2015*
GDP(억달러)	59,572	49,196	46,024	41,162
1인당 GDP(달러)	46,683	38,633	36,222	32,481
경제성장률(%)	1.7	1.6	-0.1	0.6
소비자물가상승률(%)	-0.0	0.4	2.7	0.8
민간소비증가율(%)	2.3	1.7	0.9	1.2
종합주가지수(닛케이)	10,395	16,291	17,450	19,033
실업률(%)	4.3	4.0	3.6	3.4

주: \*는 추정치

자료: IMF, JETRO,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일본은행, 재무성,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대외 경제에서 수출입 감소, 무역수지 적자, 대외채무 및 환율 증가, 장기금리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와 외환보유액의 변동은 미미하나 외국인투자금액은 2014년을 전후하여 큰 변동을 보임
  - 수출 및 수입은 각각 2012년 약 8,013억달러, 약 8,88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약 1,228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233억달러로 개선됨
  - 대외의존도는 2015년 기준 30.9%로 우리나라(69.9%)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sup>12)</sup>
  - 외국인 투자금액은 2014년 약 106억달러 유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 22억달러 유출로 감소함
  - 대외채무액은 2012년 약 261조 1,070억엔에서 2015년 약 354조 8,790억엔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외환보유액은 2012년 1조 2,681억달러에서 2015년 1조 2,332억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4년간 1조 2천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음
  - 장기금리의 하락세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안전자산 선호에서 기인함

12)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2015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대외의존도는 우리나라 69.9%, 독일 70.9%, 미국 21.2% 등임

○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012년 79.8엔에서 2015년 약 121.4엔으로 상승함

〈표 1-11-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대외 경제

구분	2012	2013	2014	2015*
수출(백만달러)	801,334	719,204	694,270	625,067
수입(백만달러)	888,584	838,889	817,102	648,342
무역수지(백만달러)	-87,250	-119,685	-122,832	-23,275
대외의존도(%)	28.3	31.7	32.8	30.9
외국인투자금액(백만달러)	1,761	2,358	10,622	-2,250
대외채무(십억엔)	261,107	296,826	328,930	354,879
외환보유(억달러)	12,681	12,668	12,606	12,332
장기금리(%)	0.795	0.740	0.320	0.265
환율(엔/US\$)	79.8	97.6	105.9	121.4

주: \*는 추정치

자료: IMF, JETRO,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일본은행, 재무성,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2 수출입동향 및 교역규모

- 일본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각각 -10%, -2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며 수지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화력발전용 원료(LNG) 수입의 급증, 태국 홍수로 인한 부품 공급망 붕괴, 엔고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임

〈표 1-11-3〉 일본의 수출입 동향

(단위: 천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	625,067,631	-10.0	648,342,714	-20.7	-23,275,083
2014	694,270,280	-3.5	817,102,522	-2.6	-122,832,242
2013	719,204,861	-10.3	838,889,076	-5.6	-119,684,215
2012	801,334,629	-2.4	888,584,133	4.2	-87,249,504
2011	820,793,168	7.0	853,069,793	23.4	-32,276,625
2010	767,025,013	32.1	691,447,208	25.2	75,577,804
2009	580,786,595	-25.2	552,251,955	-27.0	28,534,640
2008	775,917,548	8.86	756,086,221	21.74	19,831,327
2007	712,734,968	10.11	621,084,093	7.21	91,650,874
2006	647,290,458	8.2	579,293,603	11.7	67,996,855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Japan'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Yearly). (검색일자: 2016. 8. 26.)

- 일본의 국가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일본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그 뒤를 이어 중국, 우리나라, 대만, 홍콩, 태국 순임
-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약 18% 정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음
- 일본의 총수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비중은 금액을 기준으로 약 8% 정도임

〈표 1-11-4〉 최근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 억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	수출액	비중 <sup>1)</sup>	국가	수출액	비중 <sup>1)</sup>	국가	수출액	비중 <sup>1)</sup>
1위	미국	1331.99	18.52	미국	1294.41	18.64	미국	1258.52	20.13
2위	중국	1298.51	18.05	중국	1271.05	18.31	중국	1092.66	17.48
3위	한국	568.83	7.91	한국	518.28	7.47	한국	440.49	7.05
4위	대만	418.84	5.82	대만	402.18	5.79	대만	369.58	5.91
5위	홍콩	375.82	5.23	홍콩	383.39	5.52	홍콩	350.14	5.60
6위	태국	362.20	5.04	태국	315.55	4.55	태국	279.99	4.48
7위	싱가포르	211.01	2.93	싱가포르	211.20	3.04	싱가포르	198.73	3.18
8위	독일	190.49	2.65	독일	192.05	2.77	독일	162.41	2.60
9위	인도네시아	171.38	2.38	인도네시아	148.48	2.14	호주	128.51	2.06
10위	호주	170.59	2.37	호주	142.99	2.06	베트남	125.35	2.01

주: 1) 각 연도별 일본의 총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Japan'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Yearly). (검색일자: 2016. 8. 26.)

- 일본의 국가별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일본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 호주, 우리나라, 사우디, UAE 순임
- 우리나라는 2015년 일본의 제4위 수입국으로 전년 대비 상승함
  - 이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 산유국으로부터 수입액이 감소한 데서 기인함

〈표 1-11-5〉 최근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억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	수입액	비중 <sup>1)</sup>	국가	수입액	비중 <sup>1)</sup>	국가	수입액	비중 <sup>1)</sup>
1위	중국	1821.92	21.72	중국	1820.71	22.28	중국	1606.74	24.78
2위	미국	703.22	8.38	미국	717.51	8.78	미국	666.38	10.28
3위	호주	513.57	6.12	호주	484.09	5.92	호주	348.30	5.37
4위	사우디	502.86	5.99	사우디	478.00	5.85	한국	268.29	4.14
5위	UAE	428.52	5.11	UAE	419.78	5.14	사우디	250.81	3.87
6위	카타르	372.90	4.45	카타르	337.11	4.13	UAE	235.20	3.63
7위	한국	361.32	4.31	한국	335.79	4.11	대만	232.90	3.59
8위	말레이시아	300.06	3.58	말레이시아	293.53	3.59	말레이시아	215.38	3.32
9위	인도네시아	290.78	3.47	인도네시아	257.89	3.16	태국	204.37	3.15
10위	독일	239.58	2.86	러시아	248.84	3.05	독일	202.90	3.13

주: 1) 각 연도별 일본의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Japan'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Yearly), (검색일자: 2016. 8. 26.)

- 2015년 기준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철강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액화천연가스, 의류 및 부속품 등임
- 최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로 총수출 중 15.9%를 차지하였으며, 최대 수입 품목은 석유로 전년 대비 큰 감소세를 보이며 총수입 중 10.4%를 차지함

〈표 1-11-6〉 2015년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단위: 억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자동차	99,535,832	-4.0	15.9	석유 (Petroleum)	67,637,644	-48.9	10.4
2	반도체 등	32,353,985	-7.7	5.2	액화천연가스	45,689,768	-38.7	7.1
3	철강제품	30,343,414	-19.3	4.9	의류 및 부속품	28,232,877	-8.9	4.4
4	자동차 부분품	28,791,737	-12.8	4.6	반도체 등	24,776,841	-9.2	3.8
5	동력발생장치	21,430,196	-11.1	3.4	전화기 및 전신기	24,268,341	-10.2	3.7
6	가소성물질	20,203,597	-11.9	3.2	의료용제품	24,140,902	14.3	3.7
7	과학광학기기	19,644,007	-15.0	3.1	석탄	16,323,144	-17.8	2.5
8	유기화학물질	17,507,781	-24.5	2.8	컴퓨터 및 관련제품	16,312,270	-19.2	2.5
9	전기 장치	15,329,054	-12.0	2.5	석유 제품	15,063,903	-41.6	2.3
10	전기 계측기	12,135,743	-9.4	1.9	비철금속	13,920,641	-13.4	2.2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Japan'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Yearly). (검색일자 2016. 8. 26.)

### 3 외국인 투자 동향

- 업종별 대일(對日)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11년 실질 투자액은 -17.02억 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17.61억달러로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에는 106.22억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 다시 -22.5억달러로 급감함
- 제조업 부문에서는 2012년 약 53.51억달러 유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2015년에는 약 23.91억달러 유출로 최저치를 기록함
  - 2012년에는 전기기계기구와 화학 및 의약에 대한 직접투자가 높았으나, 2015년에는 화학 및 의약과 운송기계기구의 유출 폭이 높음
-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2011년 약 41.08억달러 유출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014년 약 76.25억달러 유입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 2011년에는 금융 및 보험업과 통신업에서의 유출 폭이 높았으나, 2014년에는 금융 및 보험업과 통신업에서의 유입이 높음

〈표 1-11-7〉 일본의 업종별 대내 직접투자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제조업	2,406	5,351	2,489	2,997	-2,391
식료품	282	133	-221	792	339
섬유	124	22	6	33	98
목재, 펄프	1	-3	7	-0	13
화학, 의약	774	1,537	-361	-568	-4,133
석유	-83	795	-44	-472	60
고무, 피혁	6	45	10	-94	7
글래스, 토석	-66	259	912	100	154
철, 비철, 금속	521	-4	50	101	-48
일반기계기구	70	145	129	542	380
전기기계기구	1,132	2,538	1,502	774	1,029
운송기계기구	252	-135	247	1,032	-1,426
정밀기계기구	-251	39	-209	412	-42
비제조업	-4,108	-3,587	-131	7,625	140
농업, 임업	-5	-10	3	-5	-1
수산업	-1	-	-	1	3
광업	1	14	6	11	15
건설업	-67	-34	-6	-17	42
운송업	-259	-5	216	-859	579
통신업	-2,748	-63	-101	1,550	948
도, 소매업	1,588	-2,421	160	-2,363	-4,815
금융, 보험업	-3,702	-1,383	641	7,411	1,958
부동산업	-239	294	225	255	-141
기타 서비스업	794	-244	-1,663	323	474
합계	-1,702	1,761	2,358	10,622	-2,250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Japan's Outward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By Industry), (검색일자: 2016. 8. 29.)

- 국가별 대일(對日)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실질 투자금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약 52억달러를 투자한 미국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19.4억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 12.7억달러를 투자한 홍콩 순임
- 지역별로는 2015년 기준 실질 투자금액이 가장 컸던 지역은 56.4억달러를 투자한 아시아 지역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52.2억달러를 투자한 북미, 3.4억달러를 투자한 중동지역 순임



〈표 1-II-8〉 일본의 국가별 대내 직접투자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아시아	2,895	867	6,459	5,639
중국	72	140	765	554
홍콩	872	172	2,253	1,273
대만	366	186	1,135	606
한국	559	48	559	823
싱가포르	978	325	1,460	1,937
태국	38	3	152	336
인도네시아	-1	-92	19	84
말레이시아	-15	75	122	-1
필리핀	2	7	-6	16
인도	19	18	-2	23
북미	-61	1,414	6,844	5,220
미국	-110	1,378	6,827	5,194
캐나다	50	36	18	25
중남미	-1,955	-1,363	669	-2,101
멕시코	-	-172	10	7
브라질	-	24	-0	44
케이먼제도	-1,953	-1,104	338	-2,550
대양주	125	376	582	-634
호주	123	366	419	-668
뉴질랜드	-1	10	36	31
유럽	893	1,061	3,237	-8,500
독일	449	10	1,179	-3,203
영국	1,212	618	456	-1,364
프랑스	-463	-645	1,785	1,192
네덜란드	-435	537	71	1,699
이탈리아	-16	88	-91	277
벨기에	-136	-235	-139	-129
룩셈부르크	-4,426	1,279	1,091	218
스위스	5,033	-372	659	-137
스웨덴	-59	505	-1,097	-633
스페인	34	13	92	54
러시아	-15	13	2	-2
중동	-115	9	621	341
사우디아라비아	-	15	-	1
UAE	0	2	285	255
아프리카	-19	-8	14	-7
남아프리카공화국	0	-	5	-1
전 세계 합계	1,761	2,358	18,426	-42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Japan's Outward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By Country and Region), (검색일자: 2016. 8. 29.)

###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 중 4.9%가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며, 총수입 중 10.5%가 일본에서 수입한 것임
-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5위 수출상대국이자 제2위 수입상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음

〈표 1-III-1〉 최근 우리나라의 10대 무역국 현황

(단위: 억달러, %)

순위	수출						수입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위	중국	1452.9	25.4	중국	1371.2	26.0	중국	900.8	17.1	중국	902.5	20.7
2위	미국	702.8	12.3	미국	698.3	13.3	일본	537.7	10.2	일본	458.5	10.5
3위	일본	321.8	5.6	홍콩	304.2	5.8	미국	452.8	8.6	미국	440.2	10.1
4위	홍콩	272.6	4.8	베트남	277.7	5.3	사우디아라비아	366.9	7.0	독일	209.6	4.8
5위	싱가포르	237.5	4.1	일본	255.8	4.9	카타르	257.2	4.9	사우디아라비아	195.6	4.5
6위	베트남	223.5	3.9	싱가포르	150.1	2.8	독일	213.0	4.1	대만	166.5	3.8
7위	대만	150.8	2.6	인도	120.3	2.3	호주	204.1	3.9	카타르	164.7	3.8
8위	인도	127.8	2.2	대만	120.0	2.3	쿠웨이트	168.9	3.2	호주	164.4	3.8
9위	인도네시아	113.6	2.0	멕시코	108.9	2.1	UAE	161.9	3.1	러시아	113.1	2.6
10위	멕시코	108.5	1.9	호주	108.3	2.1	대만	156.9	3.0	베트남	98.0	2.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국내통계 > 한국무역 > 국가수출입, (검색일자: 2016. 8. 31.)

- 최근 5년간 한·일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 교역은 감소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2011년 약 397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대일본 수입 또한 2011년 약 693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한·일 교역은 대일 수출보다 대일 수입이 더 많은 구조이며,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는 2011년 이후 적자 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표 1-III-2〉 한·일 교역 추이

(단위: 억달러, %)

연도	대일 수출			대일 수입			무역수지	
	전체	대일	비중	전체	대일	비중	전체	대일
2011	5,552.1	396.8	7.1	5,244.1	683.2	13.0	308.0	-286.4
2012	5,478.7	388.0	7.1	5,195.8	643.6	12.4	282.9	-255.7
2013	5,596.3	346.6	6.2	5,155.9	600.3	11.6	440.5	-253.7
2014	5,726.6	321.8	5.6	5,255.1	537.7	10.2	471.5	-215.8
2015	5,267.6	255.8	4.9	4,365.0	458.5	10.5	902.6	-202.8

자료: KOTRA(www.kotra.or.kr) 및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금은 및 백금 등임
  - 주요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의 감소세를 보임

〈표 1-III-3〉 최근 對일본 10대 수출품목<sup>1)</sup>

(단위: 천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32,183,788	-7.2	총 계	25,576,507	-20.5
1	석유제품	6,461,818	-23.5	석유제품	3,479,623	-46.2
2	철강관	2,125,815	6.8	반도체	1,757,632	-6.9
3	무선통신기기	2,011,027	-16.0	철강관	1,539,696	-27.6
4	반도체	1,888,100	-15.9	무선통신기기	1,448,880	-28.0
5	금은 및 백금	955,402	-9.7	금은 및 백금	916,895	-4.0
6	자동차부품	883,932	10.3	자동차부품	819,047	-7.3
7	플라스틱제품	817,041	-4.0	플라스틱제품	729,856	-10.7
8	합성수지	807,381	-2.8	정밀화학원료	640,424	-15.8
9	정밀화학원료	760,383	6.8	합성수지	614,399	-23.9
10	주단조품	534,215	6.7	기호식품	516,423	1.1

주: 1)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국내통계 &gt; 한국무역 &gt; 국가수출입(품목별, 수출) &gt; 일본, (검색일자: 2016. 8. 26.)

-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철강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초유분 등임
- 주요 수입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의 경우 다른 품목과는 달리 2014년과 2015년에 모두 증가하고 있음

〈표 1-III-4〉 최근 對일본 10대 수입품목<sup>1)</sup>

(단위: 천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53,768,313	-10.4	총 계	45,853,834	-14.7
1	반도체	4,286,293	-16.1	반도체	3,863,840	-9.9
2	철강판	3,359,948	-8.1	플라스틱제품	2,318,165	-18.3
3	플라스틱제품	2,837,721	-13.1	철강판	2,292,687	-31.8
4	기초유분	2,658,144	16.0	반도체 제조용장비	2,283,809	9.8
5	반도체 제조용장비	2,080,299	7.9	기초유분	2,048,871	-22.9
6	광학기기	1,814,673	-13.1	광학기기	1,470,214	-19.0
7	합금철선철및고철	1,664,395	-23.8	원동기및펌프	1,257,979	-0.8
8	기타화학공업제품	1,476,937	-12.2	기타화학공업제품	1,210,821	-18.0
9	정밀화학원료	1,336,355	-0.6	정밀화학원료	1,187,684	-11.1
10	석유제품	1,281,838	-31.5	계측제어분석기	1,126,220	-5.4

주: 1)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국내통계 > 한국무역 > 국가수출입(품목별, 수입) > 일본,  
 (검색일자: 2016. 8. 26.)

## IV. 자유무역협정 현황

-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sup>13)</sup>
  - 일본 정부는 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EPA는 FTA와 유사한 개념으로 FTA에 비해 경제 전반의 협력을 강조한 포괄적인 협정임
  - 일본 외무성에서는 FTA와 EPA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sup>14)</sup>
    - FTA(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특정 국가 또는 지역 간의 관세 및 서비스 무역장벽 등을 삭감·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經濟連携協定):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노동의 이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경쟁 등 광범위한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
  
- 일본은 2002년에 싱가포르와의 EPA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기준 총 15건의 EP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TPP 협정에 정식 서명한 이후 발효를 앞두고 있음
  - 한편, EPA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EU, RCEP, ASEAN 등이 있음

---

13) 이상엽·김미영·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 34

14)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press/pr/pub/pamph/pdfs/EPA\\_FTA.pdf](http://www.mofa.go.jp/mofaj/press/pr/pub/pamph/pdfs/EPA_FTA.pdf), (검색일자: 2016. 9. 1.)

-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기본 정책 중 하나는 아시아 및 신흥 경제권과 서구 선진 경제권, 자원부국과의 포괄적인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임<sup>15)</sup>
- 2013년 ‘일본부흥전략(Japan Revitalization Strategy)’에서는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RCEP, 한·중·일 FTA 등 광역 FTA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실현을 지향한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함<sup>16)</sup>

〈표 1-IV-1〉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현황(2016년 6월 기준)

기체결 협정(발효일)	협상중	협상연기·중단
일본-싱가포르 EPA (2002.11) <sup>1)</sup>	일본-캐나다 EPA 일본-콜롬비아 EPA 한·중·일 EPA 일본-EU EPA 일본-RCEP 일본-ASEAN (서비스·투자)	일본-GCC EPA 일본-한국 EPA
일본-멕시코 EPA (2005.04) <sup>2)</sup>		
일본-말레이시아 EPA (2006.07)		
일본-칠레 EPA (2007.09)		
일본-태국 EPA (2007.11)		
일본-브루나이 EPA (2008.07)		
일본-인도네시아 EPA (2008.07)		
일본-ASEAN EPA (2008.12, 일부 국가) <sup>3)</sup>		
일본-필리핀 EPA (2008.12)		
일본-스위스 EPA (2009.09)		
일본-베트남 EPA (2009.10)		
일본-인도 EPA (2011.07)		
일본-페루 EPA (2012.03)		
일본-호주 EPA (2015.01)		
일본-몽골 EPA (2016.06)		
일본-TPP (2016.02, 서명/미발효)		

주: 1) 2007. 9, 개정의정서 발효  
 2) 2012. 4, 개정의정서 발효  
 3)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자료: WTO, <http://rtais.wto.org/UI/PublicSearchByMemberResult.aspx?MemberCode=392&lang=1&redirect=1>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검색일자: 2016. 9. 1.)

15)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policy20101106.html>, (검색일자: 2016. 9. 1.)  
 16) 일본 외무성,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en\\_saikou\\_jpn\\_hon.pdf](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en_saikou_jpn_hon.pdf), (검색일자: 2016. 9. 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일본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약 40%를 차지함
  - TPP협상은 2015년 10월 타결되었으며, 국가별로 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일본 국회에서는 TPP 승인안과 관련 법안에 관한 심의가 시작됨
  
- 주요 합의 내용은 상품의 관세뿐만 아니라 환경과 노동, 지적소유권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규칙을 정하고 있음<sup>17)</sup>
  - TPP가 발효되면 일본의 수입관세는 농림수산물과 공산품을 합쳐 95%가 철폐됨
  - 지금까지 체결한 통상 관련 협정 중 최고수준이며 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한도를 설정,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하될 예정임
  
- TPP 분야별 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내각 관방 TPP 정부 대책본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sup>18)</sup>
  - 전체 현황, 농림 수산, 지적재산, 중소기업, 국토교통, 정보통신, 의료 등, 노동, 식품(식품안전), 식품(주류), 금융, 환경,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음
  - 한편, 일본 내 TPP 협정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의견 등은 해당 사이트<sup>19)</sup>를 통해서만 의견접수를 받고 있음

---

17)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jpinfo/weekly.html?bid=japanweek&qry=read&no=43802>, (검색일자: 2016. 10. 10.)

18) 내각 관방 TPP 정부 대책본부, <http://www.cas.go.jp/jp/tpp/kouka/index.html>, (검색일자: 2016. 9. 2.)

19) [https://www.kantei.go.jp/jp/forms/tpp/tpp\\_goiken.html](https://www.kantei.go.jp/jp/forms/tpp/tpp_goiken.html)



〈표 1-IV-2〉 TPP협상 분야

분야	구분	세부 내용		
전통적 FTA	1	상품시장 접근	상품 교역 시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	
	2	원산지규정	관세 감면의 대상인 '원산지 품목' 인정 기준과 증명제도 등	
	3	무역원활화	무역규칙의 투명성 제고와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4	서비스	서비스 교역	서비스 교역 시의 수량규제 금지, 무차별 원칙 등을 제정
	5		상용관계자의 이동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체제 절차의 간소화
	6		금융서비스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룰
	7		전기·통신 서비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 부여
비관세 분야	8	위생식물검역(SPS)	식품 안정성 확보와 동식물의 질병 방지조치 관련 규정 마련	
	9	무역의 기술적 장벽 (TBT)	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 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정	
	10	무역 구제조치 (trade remedies)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 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11	정부조달	공공사업 발주 규칙	
	12	지식재산권	모방품, 해적판 단속	
	13	경쟁 정책	카르텔 방지를 위한 경쟁법, 정책의 강화, 정부간 협력 등	
	14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환경 및 룰 정비를 위한 원칙 등	
	15	투자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무차별 원칙, 투자 분쟁해결 절차 등	
신분야	16	환경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규제 완화 금지	
	17	노동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 규제 완화 금지	
	18	제도적 사항	협정 운용 관련 기관 설치 및 기간의 권한 등	
	19	분쟁해결	협정 해석의 불일치에 따른 체결국 간의 분쟁 해결 절차	
	20	협력	협정 합의 사항의 이행 체제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지원	
	21	협상분야 간 포괄사항	복수의 협상 분야에 포괄되는 규제로 인한 무역 장애 방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TPP 참여의 득실과 한국의 입장」, 『함께하는 FTA』, vol.27, p. 15

## 제2편 통관제도

### I. 통관행정 조직

#### 1 통관행정 관련 조직

---

##### 가. 일본 세관의 역사<sup>20)</sup>

- 일본은 1845년에 체결된 미·일 화친조약을 시작으로 개항하였으며, 1859년에 현재 세관의 전신인 ‘운상소’를 열었음
  - 운상소는 나가사키, 가나가와, 하코다테 항구에 설치되었으며, 오늘날의 세관 업무와 유사한 수출입 화물의 감독, 세금 징수 등의 외교 사무를 관장했음
- 1872년 운상소를 ‘세관’으로 개명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일본 세관은 국제 무역 사회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음
  - 1886년 세관 관제 제정
  - 1964년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가입
  - 1955년 일본의 GATT 가입 정식 발효
  - 2006년 특정수출신고제도 도입
  - 2007년 특정보세승인제도 도입

---

2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 (검색일자: 2016. 9. 5.)

- 2008년 싱글윈도우(부처 공동 포털) 가동
- 2010년 Sea-NACCS와 Air-NACCS 통합(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NACCS))
  - 구 NACCS는 해상화물 통관정보처리시스템(Sea-NACCS)과 항공화물 통관정보 처리시스템(Air-NACCS)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함

〈표 2-1-1〉 일본 세관의 주요 역사

연도	주요 역사
1858	미국(6월), 네덜란드(7월), 러시아(7월), 영국(7월), 프랑스(9월)와 수호 통상조약 체결
1859	하코다테, 카나가와, 나가사키 개항(운상소 설치)
1872	전국의 운상소를 '세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1886	세관 관제 제정
1890	관세법 세관 규칙 시행
1899	관세정률법 시행
1910	관세정률법 전부 개정(1911년 7월 시행)
1951	관세정률법 세율 개정
1954	관세법 전부 개정(7월 시행)
1955	일본의 GATT 가입 정식 발효
1960	관세잠정조치법 시행
1964	관세협력이사회(CCC)에 가입
1967	통관 법 시행
1978	항공화물 통관정보처리시스템(Air-NACCS) 가동
1991	해상화물 통관정보처리시스템(Sea-NACCS) 및 통관정보 종합관정시스템(CIS) 가동
2001	간이신고제도 도입
2006	특정 수출신고제도 도입
2007	특정 보세승인제도 도입
2010	Sea-NACCS와 Air-NACCS 통합(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 (검색일자: 2016. 9. 5.)

## 22 제2편 통관제도

- 최근 일본 세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sup>21)</sup>
  - 적정하고 공정한 관세의 부과 및 징수
  - 테러 관련 물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수에 대응한 단속체제 정비
  - 통관절차 및 시스템 운영 등의 개선을 통한 무역원활화
  
- 또한 선박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하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출항 전 보고 제도(Advance Filing Ruels)’를 통해 테러 대책 및 국제 물류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
  - 대상화물은 일본에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는 컨테이너 화물임<sup>22)</sup>
    - 2014년 3월 10일 보고기한이 도래하는 화물부터 시행
  
  - 보고방법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sup>23)</sup>
    - 사업장이나 자사시스템의 게이트웨이어서버가 없으면 NACCS와 계약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경유하여 보고해야 함
    - 다만, 전기 통신 회선의 고장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전자적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또는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기디스크 또는 서면 등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함
    - 벌칙은 미신고, 신고의 지연, 잘못된 정보의 신고, 미허가 하역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한편, 일본 세관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①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전담부서 ②금지신청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sup>24)</sup>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전담부서에서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화물 또는 일본으로 수입하는 화물 중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고 있음
    - 관세법상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마약, 총기 등을 비롯한 ‘수출 및 수입해서는 안되는 화물’로 규정되어 있음

2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yakuwari.htm>, (검색일자: 2016. 9. 5.)

22) 관세법 제15조 제7항 내지 제8항

23) 관세법 제15조 제9항

24) 일본은 ‘지식재산권’을 ‘지적재산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보다는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금지신청제도’와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규제를 통해 무역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이 수출 또는 수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
  - 해당 화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인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sup>25)</sup>
  - 다만, 세관에서 권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심사하여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신청은 수리되지 않음

## 나. 통관행정조직

- 일본의 관세행정은 내각의 재무대신(財務大臣)이 직접 관장함
  - 재무대신의 지휘·감독하에 중앙조직으로는 재무성 관세국, 세관연수원, 관세중앙분석소를 두고 있으며, 지방조직으로는 9개 지역세관이 있음
  -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독립조직은 없으며, 핵심 업무 분야별 ‘센터’를 세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본 통관행정 조직의 특징은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상이하며, 외부의 특수회사<sup>26)</sup>가 통관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이 있음
  - 수출입 통관과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은 세관에서 담당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은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함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NACCS)는 세관 및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절차 및 관련 민간 업무를 일원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일본 세관은 각 세관에 세관상담관을 설치하는 ‘세관상담관제도’를 두고 있음<sup>27)</sup>
  - 일본 내 9개 지역 세관에 27개의 설치관서가 있음

2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mizugiwa/chiteki/pages/borderenforcement-jpinkr.pdf>, (검색일자: 2016. 9. 6.)

26) 2008년에 재무성, 법무성·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농림수산업성·경제산업성 등 6개의 성이 합동으로 NACCS센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였으며, 통관단일창구의 수준을 넘어 각 성의 관련 민원처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부가 출자한 특수회사(<http://www.naccs.jp>)가 운영하도록 함

2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3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301_jr.htm), (검색일자: 2016. 9. 6.)

- 수출입 수속 등에 관한 상담과 고충처리를 통해 원활한 세관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표 2-1-2〉 세관상담관 설치관서

세관명	관서명	전화번호
하코다테세관	업무부 세관상담관	0138-40-4261
	삿포로세관지소	011-231-1443
도쿄세관	업무부 세관상담관실	03-3529-0700
	하네다세관지소(여객, 수하물)	050-5533-6962
	하네다세관지소(항공화물)	050-5533-6988
	나리타세관지소	0476-34-2128~9
	나리타항공화물출장소	0476-32-6020
	도쿄국제우편출장소	03-5665-3755
	오이출장소	03-3790-6803
요코하마세관	업무부 세관상담관실	045-212-6000
	혼모쿠부두출장소	045-625-5037
	카와사키국제우편출장소	044-270-5780
나고야세관	업무부 세관상담관실	052-654-4100
	키요미즈세관지소	054-352-6117
	쥬부공항세관지소	0569-38-7600
	쥬부국제우편출장소	0569-38-1524
오사카세관	업무부 세관 상담관실	06-6576-3001
	간사이공항세관지소	072-455-1600~1
	난코출장소	06-6614-5345
	오사카국제우편출장소	072-455-1850
고베세관	업무부 세관상담관실	078-333-3100
모지세관	업무부 세관상담관	050-3530-8372
	하카다세관지소	092-263-8265
	후쿠오카공항세관지소	092-477-0101
	후쿠오카국제우편출장소	092-663-6260
나가사키세관	업무부 세관상담관	095-828-8619
오키나와지구세관	세관상담관	098-863-0099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3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301_jr.htm), (검색일자: 2016. 9. 6.)

## 1) 재무성

- 재무성은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한 다음의 6대 소관업무를 수행함
  - 관세·톤세<sup>28)</sup> 및 세관행정에 관한 제도(외국과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관한 협정 포함)의 기획·입안
  - 관세·톤세·수입물품 관련 지방소비세 부과·징수
  - 관세 관련 법령에 의한 수출입물품·선박·항공기·여객에 대한 단속
  - 보세제도의 운영
  - 통관업의 감독 및 통관사 관련 업무
  - 소관 업무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재무성의 조직은 본성(本省)과 외국(外局)으로 구분됨
  - 본성의 하위기관에는 내부부국(内部部局),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 등이 있음
    - 관세와 통관 행정을 주관하는 곳은 내부부국 산하 '관세국(關稅局)'과 지방지분부국 산하 '세관(稅關)'임

## 2) 관세국

- 관세국은 재무성의 하위기관인 내부부국으로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하여 다음의 9대 소관업무를 수행함<sup>29)</sup>
  - 관세·톤세·특별톤세 및 세관행정에 관한 제도(외국과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관한 협정 포함)의 기획·입안
  - 관세·톤세·특별톤세·지방소비세의 부과 징수
  -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화물·선박·항공기 및 여객 단속
  - 보세제도의 운영
  - 통관업의 감독 및 통관사 관련 업무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NACCS) 감독
  - 무역·관세 통계 작성 공표
  - 세관직원의 교양 및 훈련 업무
  - 관세·외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의 서무에 관한 업무

28) 우리나라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료와 유사하나 세관이 징수함

29) 재무성 조직령 제6조

〈표 2-1-3〉 일본 관세국의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총무과	사무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통세 및 특수통세에 관한 정책일반과 관세국·세관의 기구·정원, 예산에 관한 사무</li> <li>· 관세국 내의 종합 조정</li> <li>·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주) 감독 및 세관 전산 사무</li> </ul>
관리과	세관고사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 직원의 인사, 교양, 훈련</li> <li>· 세관사무의 운영, 직원의 복무에 관한 감사</li> </ul>
관세과	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 기획, 입안</li> <li>· 관세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사항의 조사 연구</li> <li>· 관세·외환 등 심의회 관세 분과회의 서무에 관한 사무</li> <li>·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및 외국제도 조사</li> </ul>
	참사관	
	특수관세조사실	
	세관조사실	
	경제연계실	
감시과	감시단속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규에 의한 수출입 화물, 선박, 항공기의 감시·단속</li> <li>· 여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 등의 수출입 허가·징수</li> <li>· 개항·세관공항에 관한 사무</li> <li>· 보세구역에 관한 사무</li> </ul>
	보세조사관	
업무과	지적재산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통세·특수통세 등의 부과와 징수</li> <li>· 관세율표 품목 분류와 과세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무</li> <li>· 수출입 화물의 허가, 승인, 분석 및 우편물의 수출입 통관</li> <li>· 관세 등 불복심사회에 관한 사무</li> <li>· 통관업의 허가, 통관업자의 감독, 통관사 시험 주관</li> </ul>
	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화물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의 조사</li> <li>· 관세 법규 범칙 사건의 조사, 처분, 정보에 관한 사무</li> <li>· 정보에 대한 외국 세관 당국 등과의 연락, 조정</li> <li>· 무역통계의 작성, 공표</li> </ul>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z-kikou.htm>, (검색일자: 2016. 9. 7.)

- 관세국의 조직은 총무과(總務課), 관리과(管理課), 관세과(關稅課), 감시과(監視課), 업무과(業務課), 조사과(調査課)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하에 실(室)을 두고 있음
  - 실무상 실(室)과 과(課)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무관리실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주) 감독 및 세관 전산 사무를 담당함
  - 특수관세조사실은 덤핑방지관세 등 특수관세에 관한 조사를 담당함



- 세관조사실은 세관행정에 관한 기초사항 등의 조사 연구를 담당함
- 지적재산조사실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담당함(2011. 7. 신설)
- 기타 재무성 직속기관으로는 세관연수원 및 관세중앙분석소, 자문기구, 중앙조직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센터 조직을 두고 있음
  - 세관연수원은 재무성 지원에 대해 세관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고, 관세 등에 관한 연수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함
  - 관세중앙분석소는 수출입 화물에 관한 분석, 분석에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등을 담당함
  - 자문기구에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와 관세 등 불복심사회가 있음
  - 센터조직은 중앙조직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쿄와 요코하마 세관에 총 10개 센터를 두고 관세국 업무 분담을 하고 있음

### 3) 세관

- 세관은 관세국 업무 이외에 국제협력, 교육훈련, 기타 재무성 업무 중 위임된 사항 등의 소관업무를 수행함
  - 관세국 업무는 관세·세관행정에 관한 제도 입안, 관세 등의 부과 징수, 수출입 화물·선박·항공기 및 여객 단속, 보세제도의 운영, 통관업의 감독 등임
  - 기타 위임된 업무는 제조담배 및 소금 특정판매업자 감독, 소관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의 관리 조정, 금 수출입 규제, 수출입 화물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임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화물 수출입 규제, 수출입거래법에 의한 화물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음
- 세관은 재무성의 지방지분부국으로 9개 본관(본부 세관)이 있고 산하에 세관지서, 출장소 및 감시서를 두고 있음
  - 9개 본관(본부 세관)은 하코다테,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와, 나가사키, 오키나와에 두고 있음
  - 세관지서는 세관 관할구역 내의 주요 개항 또는 세관공항에서 본관의 소관사무 분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출장소는 세관 또는 세관지서 소관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세관 본관 관할 구역 내 또는 지서 관할구역 중 세관업무의 수요가 비교적 집중

되는 곳에 두고 있음

- 감시서는 불개항장으로의 선박의 입항 또는 화물의 반·출입, 하역 등의 감시 단속을 위해 세관감시서 및 세관지서감시서가 있음
- 2016년 7월 1일 기준 각 세관에는 세관지서 68개소, 세관출장소 및 세관지서출장소 11개소, 세관감시서 및 세관지서감시소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2016년 세관 정원은 9,041명임

## 2 통관 관련 법률

### 가. 관세 관계법령

- 관세에 관하여 규정한 대표적인 법은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과 관세잠정조치법(關稅暫定措置法), 수징법(輸徵法), FTA(EPA), FTA 원산지증명법이 있음
  - 관세정률법은 기본관세율, 과세표준, 감면, 환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 관세잠정조치법은 국내산업보호 또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을 정함
  - 수징법<sup>30)</sup>은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부과대상, 납부, 면제 등을 정함
  - FTA(EPA)는 별도의 단일한 이행 법을 두지 않고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및 이의 적용절차는 관세법 <제3조>를 직접 적용함
    - FTA 국가에 대한 긴급관세 및 관세할당에 대해서는 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8> 내지 <제8조의6>에서 규정함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은 경제산업성 소관의 「경제연계협정에 의거한 특정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經濟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產地證明書の發給等に関する法律)」에서 규정함

30)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輸入品の内国消費税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의 약칭임

- 통관에 관하여 규정한 대표적인 법은 관세법(關稅法)과 통관업법(通關業法),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법<sup>31)</sup>이 있음
  - 관세법은 수입 금지 품목, 관세 납부절차, 보세제도, 수입신고 및 허가 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벌칙 등을 규정함
  - 통관업법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통관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세사법과 유사함
  - NACCS법은 세관 업무뿐만 아니라, 동식물 검역, 사람 및 운송수단의 출입국 관리 업무의 처리 등 관계 정부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 2-1-4〉 일본 관세 관계법령 개요

구분		내용
세금 관련 법령	관세정률법	· 과세표준, 기본/간이세율, 평가, 특수관세, 감면, 환급
	관세잠정조치법	· 잠정세율, 특별긴급관세, 관세긴급조치, 특혜관세, 감면
	수징법	· 각종 소비세의 부과, 납부, 면제 등
	FTA(EPA)	·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신고 및 검증
	FTA 원산지증명법	· 원산지증명 및 검증
통관 관련 법령	관세법	· 수입금지, 관세부과, 보세제도, 수입신고 및 허가, 벌칙 등
	통관업법	· 세관 통관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운영
	NACCS법	· 경제산업성의 수출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이상은 물품) · 후생노동성(사람 + 식의약품) 및 농림수산업성(동식물)의 검역 · 법무성의 출입국관리(사람) 및 국토교통성의 입출항 업무(운송수단) 처리를 위한 단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자료: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p. 117~118

31)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의 약칭

## 나. 관세 관계법령 개정절차<sup>32)</sup>

### 1) 관세법 개정 요구

- 일본은 국내 관계자(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이해 관계자도 포함)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로부터의 관세 개정 요청을 받고 있음
  -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 개정 요청의 경우 외무성에서 접수하여 소관 부처에 전달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직접 요청사항을 관할하는 부처에 요청할 수도 있음

### 2) 개정 요구사항의 심의

- 재무성은 보통 9월부터 관계부처와 관세 개정 요청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개정의 시비에 대해 검토함
  - 관세·외환 등 심의회<sup>33)</sup>, 재무성 관세국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경에 다음 연도의 관세 개정에 대해 답신 등이 이루어짐

### 3) 세제개정안 마련

- 재무성은 관세·외환 등 심의회 등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세제개정안을 마련함
  - 세제개정안은 내각부(内閣府)<sup>34)</sup>의 조세제도에 관한 심의기관인 ‘세제조사회(税制調査会, the Tax Commission)<sup>35)</sup>’의 검토를 거쳐야 함

### 4) 법안 제출

- 관세 정률법 등의 개정 법안은 1월부터 2월경에 내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에서 심의, 표결을 거쳐 가결된 법률은 성립 및 공포됨

---

32) 이상엽 외 2인(2014), pp. 27~28

33) 재무대신의 자문에 응하고 관세율의 개정, 기타 관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조사, 심의 등을 행하는 재무대신의 자문기관

34) 내각부는 재무성, 외무성 등의 각 부처 이외에 내각에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획, 종합뿐만 아니라 내각 및 내각 총리대신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개혁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국회 등 이전심의회, 통계위원회 등 중요 정책회의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음

35)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따라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총리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각부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

##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1 관세의 과세요건

---

#### 가. 과세물건

- 수입물품(서신 제외)에는 관세법 및 관세정률법 등의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sup>36)</sup>
  - 다만, 관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규정에 따름
-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초가 되는 물품의 성질 및 수량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시의 현황에 따름<sup>37)</sup>
  -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과세물건의 경우에는 해당 확정시기를 따름

---

36) 일본 관세법 제3조(과세물건)

37) 일본 관세법 제4조 제1항

〈표 2-II-1〉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과세물건	확정시기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인정된 때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인 외국물품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작업의 행위를 하는 것이 승인된 때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또는 보세전시장에서의 사용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또는 보세전시장에서의 사용이 허가된 때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세전시장에서 외국물품을 가공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하여 얻은 제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당해 물품의 반입 신고가 승인 또는 신고된 때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 허가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것	당해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외국물품으로 망실 또는 감소한 것	당해 물품이 망실 또는 멸각한 때
선적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지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난파물품 등의 운송승인을 받아 운송된 외국물품으로 지정된 운송기간 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것	선적 또는 운송이 승인된 때
특정보세운송에 관계되는 외국물품으로 기간 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것	당해 외국물품이 발송된 때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것	당해 수입이 허가된 때
우편물 수취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우편물	당해 통지가 된 때
수용 또는 유치된 물품,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으로 공매에 회부되거나 수익계약에 의하여 매각된 것	공매 또는 매각된 때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또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우편물	수입된 때

자료: 일본 관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 나. 과세표준<sup>38)</sup>

-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함<sup>39)</sup>
  -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며, 거래가격에 운임 및 운송보험료를 가산한 합계액(CIF가격)임
  -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을 종량세, 가격과 수량 모두 과세표준이 되는 것을 종가종량세라고 함
    - 종가세액 = 과세가격<sup>40)</sup> × 관세율
    - 종량세액 = 수입물품 수량 × 단위당 관세액
  
- 한편,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과 개별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내국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수량으로 함
  - 소비세: 과세표준<sup>41)</sup> × 0.08
  - 기타 내국소비세: 수입물품의 수량 × 단위당 세액

## 다. 적용 법령

-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입신고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따름<sup>42)</sup>
  -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 적용시기를 따름

3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4_jr.htm), (검색일자: 2016. 9. 19.)

39) 일본 관세정률법 제3조(과세표준과 세율)

40) 과세가격 = 거래가격 + 운임 + 운송보험료(CIF)

41)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액 + 개별소비세액

42) 일본 관세법 제5조(적용법령)

〈표 2-II-2〉 예외적인 적용 법령

구분	법령 적용시기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또는 보세전시장에서의 사용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또는 보세전시장에서의 사용이 허가된 때가 속하는 날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 허가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것	당해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날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외국물품으로 망실 또는 감소한 것	당해 물품이 망실 또는 멸각한 때가 속하는 날
선적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지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난파물품 등의 운송승인을 받아 운송된 외국물품으로 지정된 운송기간 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것	선적 또는 운송이 승인된 때가 속하는 날
특정보세운송에 관계되는 외국물품으로 기간 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것	당해 외국물품이 발송된 때가 속하는 날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것	당해 수입이 허가된 때가 속하는 날
우편물 수취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우편물	당해 통지가 된 때가 속하는 날
수용 또는 유치된 물품,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으로 공매에 회부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된 것	공매 또는 매각된 때가 속하는 날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또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우편물	수입된 때가 속하는 날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 또는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인 외국물품으로 수입신고된 후 수입허가되기 전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법령이 개정된 것	당해 허가 또는 승인일

자료: 일본 관세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 라. 납세의무자<sup>43)</sup>

- 관세는 관세법 또는 관세정률법 등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짐<sup>44)</sup>
  -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음
    -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을 말함
    - 송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을 말함
  - 관세 관계 법령에서 수입신고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한편,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이 수입신고되기 전에 전매된 경우에는 전득자가 납세의무를 가짐<sup>45)</sup>

### 마. 과세환율

-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의 일본 통화로의 환산은 당해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수입신고일의 외환시세에 따름<sup>46)</sup>
  - 다만, 다음의 적용법령의 특례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외환시세를 따름
  - 외환시세는 재무성령으로 정함<sup>47)</sup>

---

4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3_jr.htm), (검색일자: 2016. 9. 20.)

44) 일본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

45)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6)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7 제1항

47)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7 제2항

〈표 2-11-3〉 예외적인 외환시세

구분	적용 외환시세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또는 보세전시장에서의 사용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또는 보세전시장에서의 사용이 허가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 허가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것	당해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외국물품으로 망실 또는 감소한 것	당해 물품이 망실 또는 멸각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선적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지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난파물품 등의 운송승인을 받아 운송된 외국물품으로 지정된 운송기간 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것	선적 또는 운송이 승인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특정보세운송에 관계되는 외국물품으로 기간 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것	당해 외국물품이 발송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것	당해 수입이 허가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우편물 수취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우편물	당해 통지가 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수용 또는 유치된 물품,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으로 공매에 회부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된 것	공매 또는 매각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또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우편물	수입된 때가 속하는 날의 외환시세

자료: 일본 관세법 제5조 제1호(적용법령의 특례)

##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가. 세액의 확정방식

#### 1) 신고납부제도

- 관세 등의 납부에 있어서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부과고지제도를 두고 있음
  - 신고가 없었거나 세액의 계산 등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과과세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신고납부방식을 규정함
-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함<sup>48)</sup>
  - 수입신고는 다음의 신고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함
    - 화물의 기호·번호·품명·수량 및 가격
    -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지와 발송인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또는 명칭
    -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 화물의 장치 장소
    - 기타 참고 사항
  - 신고는 개인도 할 수 있고 통관업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음
- 세관은 납세의무자 및 기타 관계자로부터 신고에 필요한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 받은 때에는 적절한 제시를 하여야 함<sup>49)</sup>
  - 관세정률법 [별표]의 품목번호, 세율, 과세표준 등

48) 일본 관세법 제7조 제1항

49) 일본 관세법 제7조 제3항

## 2) 부과고지제도<sup>50)</sup>

- 관세 등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전적으로 세관장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하는 방식을 부과과세방식이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고지제도가 적용됨
  - 일본으로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별송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한 관세
  - 우편물에 대한 관세
    -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기증물품 등 제외)은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됨
  - 상계관세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
  - 관세법,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
  - 관세법, 관세정률법 이외의 관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과과세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세
  -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증가산세

## 나. 세액의 정정

-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납세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제도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 및 결정이 있음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소한 경우 수정신고를, 과다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 및 결정을 할 수 있음
  - 일본 관세법에는 한국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보정<sup>51)</sup>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자발적 수정신고 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됨

50) 일본 관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

51) 한국 관세법 제38조의2(보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①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②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2011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경정청구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정 및 결정 등의 기간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의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

〈표 2-II-4〉 경정청구 및 경정 등에 관한 개정 내용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1년	5년
경정·결정 기간	3년	5년

자료: 관세법 제7조의 15 내지 7조의 16

### 1) 수정신고<sup>52)</sup>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또는 납세신고,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의 납세신고, 사후 수정신고 또는 이와 관련한 경정에 대하여 각각의 경정이 있을 때까지임<sup>53)</sup>
  - 당초 납세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던 중에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에 대하여 재경정이 있을 때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함
-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수정신고서(C-1020)에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54)</sup>
  - 관세납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수정신고 전의 세액과 관련된 납부서를 수정신고 후의 세액과 관련한 납부서로 대체함
  - 관세납부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에 의하여 증가하는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첨부함
  - 수정신고의 대리는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신고를 준용함

52) 일본 관세법 제7조의 14(수정신고)

53)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의14-1

54)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의14-2

## 2) 경정청구<sup>55)</sup>

- 납세신고를 한 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세관장은 그 청구와 관련되는 세액 등에 대해 조사하여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함<sup>56)</sup>
  
-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임<sup>57)</sup>
  - 다만, 수입허가일이 2011년 12월 2일 이전인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임
  
-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경정청구서(C-1030)에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58)</sup>
  - 관세납부 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의 세액과 관련한 납부서를 경정 후의 세액과 관련한 납부서로 대체하도록 함
  - 경정에 대한 경정청구인 경우에는 당해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과 관련한 경정 통지서를 첨부토록 함
  - 경정청구의 대리는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를 준용함

## 3) 경정 및 결정<sup>59)</sup>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조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함<sup>60)</sup>
  
- 또한 세관장은 납세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화물에 대해서 그 수입 시까지 당해 신고가 없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당해 화물과 관련되는 세액 등을 결정함<sup>61)</sup>

---

55) 일본 관세법 제7조의 15(경정청구)

56) 일본 관세법 제7조의 15 제2항

57) 일본 관세법 제7조의 15 제1항

58)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의15-1

59) 일본 관세법 제7조의16(경정 및 결정)

60) 일본 관세법 제7조의16 제1항

- 세관장은 경정 또는 결정을 한 후 그 경정 또는 결정을 한 세액 등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조사에 의하여 당해 경정 또는 결정과 관련되는 세액 등을 경정함<sup>62)</sup>
- 경정 또는 결정의 방법은 세관장은 세액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경정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 행함<sup>63)</sup>
  - 경정통지서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당해 경정에 관계되는 물품의 수입신고 연월일 및 수입신고서의 번호 및 당해 물품의 기호, 번호 및 품명
    - 당해 경정 전·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 당해 경정 전의 세액이 당해 경정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하는 세액
  - 결정통지서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당해 결정에 관계되는 물품의 품명,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 다. 납부기한

### 1) 일반적인 납부기한의 설정

- 납세신고를 한 자는 물품을 수입하는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sup>64)</sup>
  - 관세의 납부 후가 아니면 수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수입허가 시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sup>65)</sup>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따름

---

61) 일본 관세법 제7조의16 제2항

62) 일본 관세법 제7조의16 제3항

63) 일본 관세법 제17의16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18

64) 일본 관세법 제9조 제1항

65) 일본 관세법 제72조

〈표 2-11-5〉 예외적인 관세 등의 납부기한

구분	납부기한
기한 내 특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당해 기한 후 특례신고서를 제출한 날
기한 후 특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당해 기한 후 특례신고서를 제출한 날
수입허가 전의 물품의 반입과 관련한 서면에 기재된 신고에 관계되는 세액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 전에 된 경정에 관계되는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이들 서류가 발송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하는 날
수입허가 후에 한 수정신고에 관계되는 서면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당해 수정신고를 한 날
수입허가 후에 된 경정에 관계되는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당해 경정통지서가 발송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하는 날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당해 결정통지서가 발송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하는 날
결정이 된 후에 경정에 관계되는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당해 경정통지서가 발송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하는 날

자료: 일본 관세법 제9조 제2항

## 2) 납부기한의 연장<sup>66)</sup>

- 관세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sup>67)</sup>
- 관세 등의 납부기한의 연장제도는 개별연장방식, 포괄연장방식 및 특례연장방식 등 3가지 방식이 있음
  - 이는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6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302\\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302_jr.htm), (검색일자: 2016. 9. 3.)

67) 일본 관세법 제9조의 2(납부기한의 연장)



〈표 2-II-6〉 관세 등의 납기연장 방식

구분	내용
개별연장방식	- 개별 수입신고마다 납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입자가 신고할 때마다 관세(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포함)의 납기연장(개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때에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기를 연장하는 방식
포괄연장방식	- 특정월분의 수입신고에 대해 수입자가 당해 특정월의 전월 말일까지 관세의 납기연장(포괄)신청서를 제출함과 더불어 담보를 제공하면 당해 특정 월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기를 연장하는 방식 - 예를 들면 수입의 허가일이 5월 1일, 5월 15일, 5월 30일인 경우에 1개월분 세액을 전부 합쳐서 3개월 후의 말일인 8월 31일까지만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됨
특례연장방식	- 특례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하여 반출신고를 한 특례사업자가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관세(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포함)의 납기연장(특례신고)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때에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납기를 연장하는 방식

자료: 일본 관세법 제9조의 2

## 라. 가산세

-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증가산세로 구분할 수 있음<sup>68)</sup>
  - 관세법상 부대세<sup>69)</sup>에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음

〈표 2-II-7〉 가산세의 산출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부족세액 × 10%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세액 × 15%	
증가산세	과소신고	부족세액 × 35%
	무신고	무신고세액 × 40%

자료: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2 내지 제12조의 4

68) 일본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2

69) 부대세란 본세라는 국세채권에 부가하여 부담해야 하는 국세의 일종으로, 본세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것에서 부대세라고함

### 1) 과소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해당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됨<sup>70)</sup>
- 수정신고 등에 의해 증가한 세액 가운데 당초의 신고세액과 50만엔 중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초과 부분의 15%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됨<sup>71)</sup>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과소신고한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sup>72)</sup>
  - 납세의무자가 세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한 경우<sup>73)</sup>

### 2) 무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무신고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15%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sup>74)</sup>
  -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결정이 된 경우
  -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결정이 된 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된 경우
- 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5%를 추가하여 총 20%의 가산세를 부과함<sup>75)</sup>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무신고한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0)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2 제1항  
71)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2 제2항  
72)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2 제3항  
73)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2 제4항  
74)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3 제1항  
75)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3 제2항

### 3) 중(重)가산세<sup>76)</sup>

- 납세의무자가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입자가 과세가격 등의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대신하여 35%의 증가산세가 부과됨
  - 무신고가산세 부과된 경우 수입자가 은폐 또는 가장하여 수입(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대신하여 40%의 증가산세가 부과됨<sup>77)</sup>
  - 은폐 또는 가장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계산한 세액은 증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될 세액으로부터 공제됨
  
- 한편, 증가산세는 가산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50만엔을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인 가산금액이 부과되지 않음

### 4) 연체세(延滯税)<sup>78)</sup>

- 본세가 법정 납기한을 경과해서 납부되는 경우에 법정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성격의 채권을 연체세라고함
  - 한국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와 같은 개념의 가산세임<sup>79)</sup>
  
- 2016년 현재 연체세의 세율은 7.3%이며, 납기 다음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14.6%가 적용됨
  
-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또한 본세에 대해서 계산되는 것이므로 각종 가산세 등은 연체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않음

76)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4 제1항

77) 일본 관세법 제12조의 4 제2항

78) 일본 관세법 제12조

79) 해당 부족세액×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sup>80)</sup>

---

#### 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관세가 부과되는 모든 품목에는 내국소비세가 부과됨
  - 2016년 7월 현재 소비세율은 8%(지방소비세 1% 포함)임
  -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CIF 가격에 소비세 이외의 내국소비세와 관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지방소비세는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한편, 유가증권, 우표류, 장애인 물품, 교과용 도서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비과세함
  
- 기타 내국소비세에는 주세, 담뱃세,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석유석탄세가 있음
  - 주세는 주세법에 의해 술의 종류에 따라 1kl당 최저 20,000엔 내지 최고 390,000엔까지 차등적인 종량세가 부과됨
  - 담뱃세는 담배세법 및 담배특별세법에 의해 제조담배에 부과되며, 킬런 1,000개피 당 특정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5,302엔, 기타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 11,424엔, 담배특별세는 820엔임
  - 휘발유세는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에 의해 휘발유에 부과되며, 휘발유세와 지방휘발유세를 합하여 1kl당 53,800엔임
  - 석유가스세는 석유가스세법에 의해 자동차용 석유가스용기에 충전된 석유가스에 부과되며, 1kg당 17엔 50전임
  - 석유석탄세는 석유석탄세법에 의해 원유 및 유제품, 가스상 탄화수소 및 석탄에 부과하며,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 2,040엔/kl, 가스석탄화수소 1,080엔/MT, 석탄 700엔/MT임

---

80) 일본 관세국 > 소관 법령 목록 (포함 개정) > 세관 관계 수수료령(<http://law.e-gov.go.jp/htmldata/S29/S29SE164.html>)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검색일자: 2016. 9. 3.)

## 나. 통관 관련 수수료

### 1) 관세법상 세관 관계 수수료

- 관세법에서는 세관 관계 수수료 납부의 근거를 두고 있고,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세관 관계 수수료령(税関関係 手数料令)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00조>에서는 지정 지역 외 화물 검사 허가, 비개항 출입 허가, 보세 장치장 또는 보세전시장 허가, 보세공장 허가 또는 지정공장 승인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02조>에서는 증명서류의 교부 또는 통계 열람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음
  
- 세관 관계 수수료는 일반적인 납부 방법과 수출입관세 등의 납기연장 방식, 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한 방법이 있음
  - NACCS 이용 시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음

〈표 2-II-8〉 세관 관계 수수료

(단위: 엔)

구 분		수수료	정기항공 운송 사업에 제공되는 것	
입출항 관계	비개항 출입 허가 수수료	외국무역선(순톤수 1톤당)	36	-
		외국무역기(자중 1톤당) <sup>1)</sup>	500	250 <sup>2)</sup>
보세· 제조 공장 관계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전시장 허가 수수료	500m <sup>2</sup> 미만	9,500	9,400
		500~1,000m <sup>2</sup>	12,200	12,200
		1,000~2,000m <sup>2</sup>	16,400	16,200
		2,000~3,500m <sup>2</sup>	21,800	21,700
		3,500~7,000m <sup>2</sup>	27,300	27,100
		7,000~15,000m <sup>2</sup>	32,800	32,600
		15,000~25,000m <sup>2</sup>	42,100	41,800
		25,000~35,000m <sup>2</sup>	54,800	54,400
		35,000~50,000m <sup>2</sup>	63,300	62,900
		50,000~70,000m <sup>2</sup>	76,000	75,400
	70,000m <sup>2</sup> 이상	88,700	88,000	

〈표 2-11-8〉의 계속

(단위: 엔)

구 분		수수료	정기항공 운송 사업에 제공되는 것	
보세· 제조 공장 관계	보세공장 허가 수수료 또는 제조공장 승인 수 수수료	2,500㎡ 미만	6,800	6,700
		2,500~5,000㎡	9,500	9,400
		5,000~10,000㎡	13,600	13,500
		10,000~20,000㎡	21,800	21,700
		20,000~40,000㎡	32,800	32,600
		40,000~70,000㎡	42,100	41,800
		70,000㎡ 이상	54,800	54,400
	종합보세구역 허 가 수수료	10,000㎡ 미만	25,500	25,300
		10,000~20,000㎡	35,300	35,100
		20,000~40,000㎡	53,100	52,800
		40,000~70,000㎡	64,700	64,200
		70,000~130,000㎡	77,400	76,800
		130,000~250,000㎡	90,300	89,600
		250,000~500,000㎡	103,200	102,400
		500,000~1,000,000㎡	116,100	115,200
1,000,000㎡	129,000	128,000		
구 분		수수료	NACCS 이용 시	
일반	증명서류 또는 통계 열람	증명서류(1장당)	400	300
		기록매체(1미디어당) 기록매체(1장마다)	23,500	-
화물검사	지정 지역 외 화물 검사 허가 수수료	물품검사 승인(1시간당)	5,000	4,700

주: 1) 당해 4번 이상 동일한 항구를 이용한 외국무역선은 4회 이상부터 수수료가 면제됨

2) 항공법에 지정된 일반 운송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외국무역기의 경우에 해당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1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101_jr.htm), (검색일자: 2016. 9. 5.)

2) 통관업자 수수료<sup>81)</sup>

- 통관업자에게 통관 대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관 관계 수수료 외에 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통관업자 수수료의 최고액은 재무대신(財務大臣)이 정함
- 각종 신고·신청의 절차관련 수속요금에는 신고·신청에 선행되거나 후속 또는 이와 동시에 행해지는 경상적 절차<sup>82)</sup> 처리를 포함함

〈표 2-11-9〉 통관업자에게 통관수속 등을 의뢰한 경우의 요금

(단위: 엔)

통관 업무의 종류		단위	금액
(1) 수출(반송) 신고		1건	5,900
(2) 수입신고	소액화물 간이통관	1건	4,200
	신고납부예비신고 포함	1건	11,800
	소액화물 간이통관	1건	8,600
	부과과세	1건	10,500
	소액화물 간이통관	1건	7,800
	보세장치장 반출·종합보세구역 반출 (가공 또는 제조 혹은 전시된 것은 제외)	1건	7,000
	소액화물 간이통관	1건	5,100
(3) 보세장치장 반입 신청		1건	7,000
(4) 보세공장 반입 신청		1건	7,000
(5) 보세전시장 장치장 등 승인 신청		1건	7,000
(6) 종합 보세구역 반입 신청		1건	7,000
(7) 수입허가 전 화물 인수 신청		1건	5,100
(8) 외국무역선(기)의 용품 적재 신고		1건	5,100
(9) 외국 화물 운송 신고		1건	5,100
(10) 그 밖의 신고·신청 또는 신고서		1건	1,300
(11) 각종 신고 또는 허가승인 사본신청		1건	200
(12) 할증료		1건	요금의 50%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1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101_jr.htm), (검색일자: 2016. 9. 5.)

81) 일본 통관법 제18조, 통관법 기본통달 18-1 내지 18-2

82) 예를 들면 검사 입회, 면세 신청서 작성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업무요금표에 열거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수입화물의 평가에 관한 신고
    -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포괄적 신고서에 근거한 신고에 한함
  - 특례신고
    - 관세법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례신고 화물의 수입신고에 병행해서 대리·의뢰를 받은 경우를 제외함
  - 관세법 <제7조의2 제1항> 신고의 특례의 승인 신청
  - 관세법 <제67조의3 제1항> 수출신고의 특례의 승인 신청
  - 수정신고(수입허가 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한함)
  - 경정청구(수입허가 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한함)
  - 특례신고 물품의 수입신고
    - 당해 특례신고 화물에 관한 특례신고에 병행해서 대리·의뢰를 받은 경우를 제외함
  -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하여 필요한 허가 등의 신청



### Ⅲ. 관세평가제도

#### 1 관세평가

---

-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 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결정<sup>83)</sup>되는데, 과세물건의 가격, 수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함<sup>84)</sup>
  - 과세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을 종가세 제품,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을 종량세 제품이라고 하며, 가격과 수량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혼합세 제품이라고 함<sup>85)</sup>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관세 평가라고 함<sup>86)</sup>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종가세 물품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자, 관세율과 함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83) 일본 관세법 제4조

84) 일본 관세정률법 제3조

8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4_jr.htm), (검색일자: 2016. 8. 2.)

8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1_jr.htm), (검색일자: 2016. 8. 2.)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종량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이나 무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도 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함

- 일본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물품의 수출원가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료 및 운송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sup>87)</sup>

## 2 과세가격 결정방법

- 일본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수용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관세정률법 <제4조> 내지 <제4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원칙적인 방법(제1방법)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종(제2방법)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또는 제조원가에 근거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sup>88)</sup>
    - 원하는 경우 제5방법을 제4방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sup>89)</sup>
  -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정(제6방법)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함

### 가.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 1)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1방법)

-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은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수입거래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그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실제지급가격, 現実支払価格<sup>90)</sup>)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임<sup>91)</sup>

8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4_jr.htm), (검색일자: 2016. 8. 2.)

8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103>, (검색일자: 2016. 8. 2.)

89)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 3 제3항

-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임, 보험료, 포장비용 등의 가산요소 금액을 추가하여야 함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해당 방법에 의하여 계산됨<sup>92)</sup>

가) 실제지급가격

-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거나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으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총액을 말함<sup>93)</sup>
  - 여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하는 당해 판매자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 기타 간접적인 금액이 포함됨
  - 그러나 구매자가 지불하더라도 수입 후에 발생하는 운송관련비용, 관세 등과 연불금리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해당 금액이 지불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수입물품에 대한 해당 비용 등의 금액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비용 등의 금액을 포함한 당해 지불 총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표 2-III-1〉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공제요소
①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입물품에 관한 설치, 조립, 정비 또는 기술지도에 필요한 용역비용
②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당해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③ 일본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기타 과징금
④ 당해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거래인 경우의 연불금리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제1조의 4(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되어야 하는 가격)

90) 일본 관세법에서는 현실지불가격(現實支払價格)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실제지급가격으로 기재함  
 91)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9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01>, (검색일자: 2016. 8. 2.)  
 93)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조의 4(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되어야 하는 가격)

- 수입물품의 송품장이 수입 거래에 관한 가격 등의 조건을 정당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송품장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함<sup>94)</sup>
  - 수입물품에 관한 거래 상황 등으로 보아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이 송품장 가격뿐인 경우 실제지급가격은 송품장 가격과 일치함<sup>95)</sup>

### 나) 가산요소

- 거래가격은 관세정률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산한 가격을 말함
  - 운송관련비용, 수수료,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은 구매자가 지급하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표 2-III-2〉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요소

가산요소
①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
②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료 기타 수수료</li> <li>- 당해 수입물품의 용기</li> <li>- 당해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li> </ul>
③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입과 관련, 구매자에 의해 무상 또는 할인되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등</li> <li>- 생산에 사용된 공구, 주형 등</li> <li>-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물품</li> <li>- 기술, 디자인 등</li> </ul>
④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 거래를 위해 구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
⑤ 수입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으로 작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9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09>, (검색 일자: 2016. 8. 2.)

95) 예를 들어 송품장 가격 외에 할증료,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상계 등이 있는 경우는 송품장 가격에 해당금액을 더한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며, 가격조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조정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므로 유의해야 함

(1) 운임, 보험료

-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란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말하며, 수출항구까지의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함<sup>96)</sup>
- 운송에 필요한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은 운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하역 기타 용역의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을 말하며, 예를 들어 수출업자의 임시 보관비용, 수출 통관 절차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함<sup>97)</sup>

(2) 수수료

- 중개료 및 기타 수수료는 수입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 중 구매수수료 이외의 것은 과세가격에 가산함<sup>98)</sup>
  -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의 명칭뿐 아니라 수수료를 영수하는 자가 수입거래에서 행하는 역할 및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함
    -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위해 수입 거래의 성립을 위한 중개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판매자에 의해 판매에 대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해당됨
  - 특히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의 경우 구매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구매자가 지불한다 하더라도 관세정률법에서 말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sup>99)</sup>

(3) 용기, 포장비용

- 수입물품의 용기는 사진기용 케이스, 악기케이스 등 특정 수입물품을 수납하기 위해

9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16>, (검색일자: 2016. 8. 2.)

9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17>, (검색일자: 2016. 8. 2.)

9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20>, (검색일자: 2016. 8. 2.)

99) 구매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영수하는 자가 매입에 관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그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이 계약서 등의 문서나 기타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시가 가능하여야 함

특별히 제작 또는 상용시킨 것으로 장기간의 사용에 적합하며 그 용기에 수납되는 수입물품과 함께 제시되어 함께 판매되는 물건 등을 말함<sup>100)</sup>

○ 다만, 재수입 면세 등을 받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sup>101)</sup>

□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포장에 관한 재료비 및 포장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포함됨<sup>102)</sup>

#### (4) 생산지원비용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 의해 무상 또는 할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또는 용역은 그 금액 또는 인하된 차액을 가산함

○ 가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은 ①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공구, 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③ 수입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용역(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한 기술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이며, 일본 이외에서 개발된 것을 말함<sup>103)</sup>

#### (5) 권리사용료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특별한 기술에 의한 생산 방식 등과 같이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함

○ 다만, 수입물품을 일본에서 복제할 권리는 포함하지 않음<sup>104)</sup>

○ 기타 로열티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이란 특허권 등에는 이르지 않지만, 생산 등에 관하여 반복 사용하는 정도로 확립된 기술의 창작, 고안, 비결, 기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노하우, 등록되지 않은 의장 등이 있음<sup>105)</sup>

---

10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25>, (검색 일자: 2016, 8, 2.)

101)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의 용기 중 캔, 병, 통, 상자 등 또는 실린더,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용기로 당해 수출 시에 사용된 것 또는 수입 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면세함(관세정률법 제14조 제11항)

10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26>, (검색 일자: 2016, 8, 2.)

103)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제1항 제3호

104)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조의 5 제3항

10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1>, (검색

- 이러한 권리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구매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되는 것인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함<sup>106)</sup>
  -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의장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상표를 부착한 것 등은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 관련되었다고 간주함
  -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지불하는 것이란 구매자가 그 권리사용료를 특허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실질적으로 그 수입물품에 따른 수입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함<sup>107)</sup>
    - 그 판단은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자가 수행하는 역할 및 관계 기타 거래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표 2-III-3〉 로열티 등의 가산요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수입거래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동일)의 대가인 사용료는 수입물품이 특허 발명품인 경우(특허발명품의 생산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재료 포함), 특허제조법에 의한 생산물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는 물품인 경우</li> <li>② 의장권의 대가인 사용료는 수입물품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li> <li>③ 상표권의 대가인 사용료는 수입물품이 상표를 붙인 것 또는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된 것인 경우</li> <li>④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하여도 동일)의 대가인 사용료는 수입물품이 저작권의 대상을 포함하는 것인 경우(예를 들면 녹음한 테이프에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인 가사, 선율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li> <li>⑤ 기타 로열티 및 라이선스의 대가인 것은 상기에 준하는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이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자인 경우에 구매자가 당해 판매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li> <li>②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이 판매자 및 구매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 당해 판매자와 당해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 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li> <li>③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이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 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li> <li>④ 판매자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의 하청회사인 경우에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 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li> <li>⑤ 판매자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허락을 받고 있는 경우로 당해 판매자가 구매자에</li> </ul>

일자: 2016. 8. 2.)

10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3>, (검색 일자: 2016. 8. 2.)

10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4>, (검색 일자: 2016. 8. 2.)

〈표 2-Ⅲ-3〉의 계속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수입거래의 조건
	<p>대하여 당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때에 당해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당해 특허권의 사용에 따른 대가</p> <p>⑥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허락을 받고 있는 경우로 당해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당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때에 당해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당해 특허권의 사용에 따른 대가</p>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13(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특허권 등의 대가)

(6) 사후귀속이익

- 구매자에 의한 수입물품 전매 가타 처분 또는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매출대금, 임대 또는 공임 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함<sup>108)</sup>
  - 예를 들면 수입물품의 이윤분배 거래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분배하는 이익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됨
  - 구매자에 의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배당 기타 급여 등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2)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수입거래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 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10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6>, (검색일자: 2016. 8. 2.)



〈표 2-III-4〉 거래가격의 적용 배제 사유

배제 사유

- ① 수입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 ②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은 경우,
- ③ 과세가격에 대한 의문이 해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 ④ 가산요소 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2항

가)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수입물품과 관련된 수입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인 방법인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sup>109)</sup>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본 거래 이외의 화물 거래 수량이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취지의 조건 등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구매자의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그 귀속되는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sup>110)</sup>가 있는 경우로 당해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9)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제2항

110)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조의8)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법령상 인정된 동업자인 경우

- ② 구매자와 판매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용자인 경우(고용관계)
- ③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관한 의결권 있는 사외주식의 5%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
- ④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반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⑤ 제3자에 의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사외주식이 직·간접으로 각각 5% 이상 소유 또는 관리되거나 소지되는 경우
- 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받는 경우
- ⑦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간접 지배하는 경우
-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나) 수입물품이 수입 거래에 의하지 않는 것일 경우

- 수입 거래는 일본에 본사(주소, 거소, 본점, 지점, 사무소, 사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를 가진 구매자가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판매자와 한 매매를 말하며 당해 화물이 매매로 인하여 일본에 도착한 것이 아닌 경우는 수입거래<sup>111)</sup>로 인정하지 않음<sup>112)</sup>
  - 무상 수입물품
  - 위탁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화물
  - 판매자의 대리인에 의해 수입 된 후 판매자의 위험 부담에 따라 수입국에서 판매 되는 화물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화물
  - 보낸 사람의 소유권이 존속하는 대여화물
  - 동일한 법인격을 갖는 본지점 간의 거래로 수입되는 화물
  - 일본에서 폐기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폐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입되는 화물

### 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이의가 해명되지 않는 경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실제에 지불한 가격 등의 확인이 어렵다면 과세가격에 대한 의문이 해명되지 않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음<sup>113)</sup>
  - 실제지불가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란 수입자의 보충 설명과 추가 자료에도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나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함

---

111)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형식적으로는 매매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거래 가격을 이용한다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수입거래로, 위탁자와 수탁자를 구매자와 판매자로, 가공 등의 대가로 지불되거나 될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수입거래로 수입 되는 화물과 마찬가지로 과세가격을 계산함

11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02>, (검색일자: 2016. 8. 2.)

11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4_jr.htm), (검색일자: 2016. 8. 2.)

라) 가산요소 비용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만을 실제지급가격에 합산함
- 가산을 위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없음<sup>114)</sup>

**나. 원칙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

**1)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 및 제3방법)**

-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어 일본으로 수출한 날 또는 이에 근접한 날<sup>115)</sup>에 일본으로 수출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sup>116)</sup>
  - 동종물품이란 모양, 품질 및 사회적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수입물품과 동일한 것을 말하며 외관상 사소한 차이가 있어도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함
  - 유사물품이란 수입물품과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나 비슷한 모양 및 재질이며, 수입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한 물품을 말함
-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 단계 및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수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수량에 의하여 수입 거래가 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계되는 거래가격으로 함<sup>117)</sup>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한 거래단계 및 동일한 거래수량에 의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이 운송거리 또는 운송형태가 상이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11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 일자: 2016. 8. 2.)

115) 수출한 날은 수입물품을 일본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이에 근접한 날은 일반적으로 수출한 날의 전후 1월을 인정함(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의 2-1)

116)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 2(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117)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 2(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있는 때에는 그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가격차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후의 거래가격으로 함

- 동종물품 거래가격과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종물품 거래가격이 우선함<sup>118)</sup>
  - 수입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물품 거래가격과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물품 거래가격이 동시에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물품 거래가격이 우선함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도 여전히 경합되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우선함

## 2) 국내판매가격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이란 수입물품, 동종 또는 유사물품이 당해 화물의 수입신고일 또는 이에 근접한 기간 내에<sup>119)</sup>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sup>120)</sup>
  - 동종 또는 유사 물품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발생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인 국내 판매와 관련된 일반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발생 운임과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 및 관세 기타 공과금은 공제함
-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있는 경우 그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하며, 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 동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함<sup>121)</sup>
  - 수입물품 및 동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함

118)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의 2-1(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관련된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119) 수입신고일에 근접한 기간은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속하는 날에 근접한 날로서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속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장 빠른 날을 말하며, 가장 빠른 날이라 함은 단위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물품 등이 충분한 물량으로 판매된 날을 의미함(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의 3-1)

120)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 3 제1항

121)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의 3-1(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의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수입한 동종화물의 국내판매가격과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동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수입한 동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함

### 3)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방법)

-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란 수입물품의 제조원가에 수입물품과 동류의 물품의 일본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와 관련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임<sup>122)</sup>
- 국내판매가격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조원가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다만 수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조원가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입물품의 용기 및 포장비용, 구매자에 의해 무상 등으로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일본에서 개발된 용역비용도 생산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포함)을 포함함<sup>123)</sup>

### 4) 합리적인 조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방법에서 충족하지 못한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sup>124)</sup>
- 이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요건을 합리적이고 신축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임
  - 예를 들면 수입물품의 생산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관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속하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음

122)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 3 제2항

123)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의 3-2

12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701>, (검색일자: 2016. 8. 2.)

- 이러한 신축적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당국이 고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sup>125)</sup>
  - 세관당국이 고안한 합리적인 방법이란 일본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계산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함
    - 수입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첫 거래단계 이외의 판매에 따른 가격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일본 도착 후 비용 등을 공제한 가격에 의한 방법
    -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국제 시세가격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의 금액을 더한 가격에 의한 방법
    -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시장가격에서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에 의한 방법 등
  - 이 경우 WTO 평가협약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방법만을 사용하여야 함. 다음의 가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없음<sup>126)</sup>
    - 일본에서 생산된 화물의 국내판매가격
    - 특정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가격
    -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제5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 일본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 최저과세기준가격
    -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

#### 다.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특정한 항공운송화물, 개인 물품 등의 특수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대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12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702>, (검색일자: 2016. 8. 2.)

126)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의 4-1(특수한 수입물품에 관련된 과세가격의 결정)

### 1) 변질 또는 손상에 따른 수입물품

-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에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변질 또는 손상이 없었던 경우의 과세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에 의해 감소된 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sup>127)</sup>
- 수입계약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2) 항공운송화물

- 항공운송화물 중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기에 의한 운송방법이 아닌 일반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에 기초해 과세가격을 결정함<sup>128)</sup>
- 특정 사유란 무료 샘플이나 재난 구호화물, 공중위생 유지 기타 이에 준하는 목적을 위해 긴급 수입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화물, 신문 게재용 뉴스 사진이나 방송 뉴스 테이프,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무상으로 수입되는 것, 일본에서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항공기용품, 정비용품 및 사무용품 등을 말함
- 일반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선박에 의한 통상의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하며, 운임표 또는 보험요율표 등의 자료로 산출한 금액이나 세관장이 공시하는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3) 수입자 등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수입물품

- 입국자의 휴대품이나 기증 물품 등 수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그 수입 거래가 소매단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이 통상의 거래 도매단계에서 수입된 때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sup>129)</sup>
- 소매단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일반 소비자가 통신판매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 외국에 소재하는 지인에게 구입 의뢰하여 수입하는 물품 등을 말함

127)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 5(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128)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 6 제1항

129)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 6 제2항

### 3 과세가격의 신고

-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을 납세신고하여야 하며, 관세평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 교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가. 평가신고제도

##### 1) 평가신고서의 제출

- 관세평가와 납세신고에 있어 신고서에 첨부되는 송품장과 운임명세서 등만으로 과세가격의 계산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sup>130)</sup>
- 다만 관세가 무세(면세)이거나 종량세 적용 대상인 경우, 납세신고에 따른 화물의 송장 당 과세가격의 총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등에는 평가신고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음

〈표 2-III-5〉 평가신고서의 제출 및 면제

평가신고를 요하는 경우	평가신고가 생략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입 거래에 관한 송품장의 가격과 실제 지불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li> <li>②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가산 요소가 있는 경우 (송품장, 운임명세서 등에 의해 금액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li> <li>③ 특수 관계에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수입 거래로, 당해 특수 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li> <li>④ 수입 거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수입 거래에 의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 이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납세신고와 관련된 물품의 관세가 무세(면세 포함) 또는 종량세인 경우</li> <li>② 납세신고와 관련된 물품의 매입처별 과세가격의 총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인 간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수입 거래와 관련된 경우</li> <li>- 하나의 계약가격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수입거래와 관련된 물품을 분할한 경우</li> <li>- 기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확인하는 경우</li> </ul> </li> </ul>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seido\\_gaiyou.htm](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seido_gaiyou.htm), (검색일자: 2016. 9. 13.) 및 관세법 기본통달 7-10(평가신고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13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8\\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8_jr.htm), (검색일자: 2016. 9. 13.)



- 평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구분된 평가 신고서(C-5300<sup>131</sup>) 또는 C-5310)와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 기타 해당 기초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청구서, 가격표 등)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sup>132</sup>)
  -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경우는 수입물품의 평가(개별·포괄)신고서 I(C-5300), 원칙적인 방법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경우는 수입물품의 평가(개별·포괄) 신고서 II(C-5310)를 사용함
  -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평가신고서 I 및 II를 모두 사용하여야 함
    - 평가신고서 II에 기재하여야 할 과세가격 계산 기초를 평가신고서 I에 기재할 수 있는 경우 평가신고서 II의 제출은 생략됨
- 평가신고서는 세관의 수입 사후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포괄신고서와 관련된 통관서류인 송장, 선하증권, 수입허가서 등을 함께 보관하여야 함

## 2) 평가신고의 유형(개별 및 포괄 신고)

- 평가신고에는 개별신고와 포괄신고가 있으며, 평가신고는 개별신고가 원칙이지만 포괄신고를 통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sup>133</sup>)
  - 개별신고는 수입(납세) 신고 시마다 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포괄신고는 동일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 및 특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동일한 내용인 경우 포괄적으로 사전에 이행할 수 있음
    - 포괄신고는 매번 통관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화물의 인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31) 관세법과 관련된 세관양식은 C, 관세정률법과 관련된 세관양식은 T, 관세잠정조치법과 관련된 세관 양식은 P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하에서 언급되는 모든 세관양식 C는 다음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htm#c9000](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htm#c9000), 세관양식 T는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T.htm](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T.htm)에서 확인할 수 있음

132)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8(평가신고서의 사용구분)

13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8\\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8_jr.htm), (검색일자: 2016. 9. 13.)

〈표 2-III-6〉 개별신고와 포괄신고의 비교

구분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부수	유효기간	처리기간
개별	수입신고시	납세신고하는 세관장	1부	당해 수입신고	-
포괄	수입신고서 제출 이전	주요수입예정 지 관할 세관장	2부 (원본, 신고자교부용)	제출일부터 2년 이내	30일 이내 (보정기간 제외)

자료: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9(평가 신고서의 제출 방법 등)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포괄신고는 포괄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서상 기재된 기간(최대 2년) 동안 개별 납세신고 시의 평가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포괄신고 시 평가신고서 2부(원본과 교부용)를 수입물품의 수입 예정지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수입 부호를 취득한 신고자의 경우 수입신고 시 NACCS(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를 이용하여 포괄평가신고수리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음
  
- 포괄신고 후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또는 철회신고를 하여야 함<sup>134)</sup>
  - 원칙적인 방법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원칙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당해 포괄신고서를 제출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포괄)신고서 기재사항의 일부 변경 신고서(C-5320)와 변경 후의 내용에 따른 수입물품 평가신고서(C-5300 또는 C-5310)를 대상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sup>135)</sup>
  - 또한 신고한 가산 요소에 대해 감가상각이 종료된 때와 예정보다 거래가 일찍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포괄평가신고를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 요소만큼의 관세·소비세를 부담해야 함

134)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135) 수입자의 주소 또는 명칭의 변경, 품명의 일부 추가, 기타 간이한 내용의 변경이나 포괄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은 변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됨

- 철회는 평가(포괄)신고서 기재사항의 일부 변경신고(C-5320)를 사용하여 포괄 신고서를 제출했던 세관에 제출하면 됨

## 나. 과세가격 사전교시제도

### 1) 사전교시의 개요 및 종류

- 과세가격 사전교시란 물품 수입예정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관세평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sup>136)</sup>
-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구두(전화 및 세관창구에 문의) 또는 이메일로도 가능함
  - 문서에 의한 조회는 문서로 회신하고, 구두 또는 이메일에 의한 조회는 구두 또는 이메일로 회신함
  - 구두 또는 이메일에 의한 조회는 원칙적으로 즉시 답변이 이루어짐
- 문서에 의한 회신과 구두 및 이메일에 의한 회신은 수입신고 시 취급이 다르므로 유의가 필요함<sup>137)</sup>
  - 문서에 의한 회신은 일정 조건하에서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신고 시 회신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적용이 가능하지만 구두 및 이메일에 의한 회신은 이러한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문서에 의한 회신은 신청인이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 의견 제출과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두 및 이메일에 의한 회신은 의견 제출 등이 불가능함

---

13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2\\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402_jr.htm), (검색일자: 2016. 9. 13.)

137)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17(납세신고와 관련된 사전교시)

## 2) 사전교시의 절차<sup>138)</sup>

- 과세가격 사전교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의 개요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 신청서(관세평가신청용)(C-1000-6) 1부 및 매매계약서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나의 신청서당 하나의 품목을 조회하여야 하며, 참고자료의 제출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함
  
-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해당 수입예정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을 판단하여 사전교시 회답서(관세평가 답변용)를 발급함
  - 회답서에는 요청된 거래내용 요약, 신청인의 견해, 과세가격에 대한 세관의 결정내용 및 사유가 기재됨
  -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문서로 답변(추가정보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신고되었거나 신청된 거래가 가상, 불법 등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발급하지 않음

## 3) 사전교시 회답서의 효력 및 이의제기<sup>139)</sup>

- 세관에서 답변한 사전교시 회답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된 유효기간(최대 3년) 동안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신고 시 적용됨
  - 수입신고 시 회답서 사본이 다른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회답서상의 거래와 동일하게 신고가 된 경우 세관은 해당 회답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처리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전교시 신청을 진행하여야 함

---

138)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18(사전교시에 대한 문서회신 절차 등)

139)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18(사전교시에 대한 문서회신 절차 등)

- 사전교시의 회답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 홈페이지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됨
  - 사전교시 신청인의 성명이나 거래당사자 성명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됨
  - 공개를 통한 조화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청인이 사전교시 신청서에 표시한 경우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관세평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변경되거나 사실관계 및 상황이 변경된 경우 세관은 회답서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회답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본래의 회답서는 적용이 불가함
  
-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통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사전교시 회답서(관세평가 답변용)에 대한 의견 제출신청서(C-1001-1) 1부를 작성하여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하면 됨
  - 재심사 신청은 사전교시 회답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재심사 신청서는 관세평가센터(National Valuation Center)에 전달되어 재검토 되고, 답변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짐

##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 1 품목분류와 관세율

---

#### 가.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는 1983년 무역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하여 상품분류의 국제적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에 관한 국제협약」(Harmonized System, 이하 「HS협약」으로 표기)을 채택함<sup>140)</sup>
- 「HS협약」은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하여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통일품목분류체계임
- 「HS협약」에 따라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는 국제품목분류표인 HS코드를 결정함
- 1988년 「HS협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 또한 관세율표와 함께 수출입통계 목적의 통계품목표도 전면 개정하여 같은 해부터 사용하고 있음

---

14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kanzei\\_shikumi.htm](http://www.customs.go.jp/shiryo/kanzei_shikumi.htm), (검색일자: 2016. 7. 14.)

- HS코드는 2단위 숫자로 표시되는 21개의 부(Section), 2단위로 표시되는 97개의 류(Chapter), 1,224개의 4단위 호((heading) 및 5,205개<sup>141)</sup> 항목의 6자리의 숫자로 표시되는 소호(subheading)가 국제 공통단위임
  - 각국에서는 6단위 이후의 숫자를 고유 목적에 의해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일본은 3자리의 통계 목적용 구분 번호를 더하여 9단위 품목번호를 사용함<sup>142)</sup>
  - 물품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이 품목 분류이며 해당 품목번호를 세번이라고 함
  
- 품목번호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인 관세율을 기재한 것이 관세율표이고 일본은 관세정률법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정해져 있는 관세율에 따르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가 결정됨
  -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함
  
-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sup>143)</sup>에 공개되어 있으며, 최근 관세율표는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관세율을 게시하고 있음
  - 아래 제6401호를 예로 들어보면, HS 코드 6단위와 함께 일본에서 사용하는 9단위 품목번호를 함께 표시하며, 기본세율, 잠정세율, WTO 협정세율, 특혜세율과 특별우대 세율 및 EPA 세율 순으로 고시됨
  - ‘품명’란에 HS코드 6단위와 9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이 표시되고 관세율은 9단위 품목번호에 대해서만 표시됨
  - 관세율표상에 나타난 기본세율, 잠정세율 등 여러 관세율 가운데 관세율의 적용 순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해당 품목의 관세율로 함

141) 일본은 전기에너지 수출입이 없기 때문에 임의호인 제2716.00호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14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2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201_jr.htm), (검색일자: 2016. 7. 14.)

14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 (검색일자: 2016. 7. 14.)

〈표 2-IV-1〉 일본 관세율표 예시

(단위: %)

통계번호		품명 (Description)	관세율					관세율 (EPA)
번호 (HS code)	기본 (General)		잠정 (Temporary)	WTO 협정 (WTO)	특혜 (GSP)	특별 우대 (LDC)	멕시코 등 <sup>144)</sup>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봉합 리벳 조여 못 박는 나사 체결 플러그 중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갑을 바닥에 고정 또는 조립 물건을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 (toe-cap)을 넣은 신발						
	010	스키부츠	27		27			
	080	기타	20		6.7			무세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을 제외한다)						
	010	스키부츠	27		(27)			
	080	기타	20		6.7			무세
6401.99		기타	20		무릎을 덮는 것 6,7, 기타 8			무세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 (검색일자: 2016. 7. 14.)

144) 일본의 EPA협정은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ASEAN 등 총 15개국(지역)과 발효 중이며, 각 협정별 세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나.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sup>145)</sup>

### 1) 사전교시의 개요

-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자는 자체적으로 관세정률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규정된 세번(HS코드)을 결정하여야 함
  - 이러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부 및 류의 주, 호의 용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관세율표 해설)에 따라 이루어짐
  - 또한 일본은 각국에서 과거에 수출입 실적이 있었던 개별 품목분류 등에 대해 정리한 분류예규도 공개하여 품목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는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있는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제도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분류예규 등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임
  -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문의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구두상(전화 및 세관창구 문의)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나 수입신고 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2) 사전교시의 절차

- 사전교시 신청은 물품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의 신청양식 (C-1000) 1부 및 견본, 사진, 도면 등 물품의 제조공정, 성분, 규격,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입예정지역에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과 가까운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전교시 신청은 NACCS(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상담을 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14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202\\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202_jr.htm), (검색일자: 2016. 7. 14.)

- NACCS 의한 사전교시는 서면 사전교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조법, 성분, 비율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미지, 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은 서면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교시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의 정보를 기초로 검토하여 당해 물품의 세번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한 후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함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답변하여야 함
  - 사전교시 회신은 전국의 각 세관에 사전교시 질의가 접수되면 접수한 세관에서 이에 대한 회답안을 작성하여 총괄관세감사관실에 송신하고, 총괄관세감사관실에서는 회답안을 심사하여 이상이 있으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가상 상품 기타 사전교시의 취지에 반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음
- 사전교시의 회답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처리건수는 연간 4,000여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식품류임<sup>146)</sup>

**〈표 2-IV-2〉 일본의 품목분류 사전교시 답변 항목**

구분	답변 내용
등록번호	사전교시 회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사전교시 답변을 한 세관
처리일자	사전교시 회답서의 작성절차 종료일
품명	심사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화물의 개요	사전교시에서 심사대상 물품의 개요(성상, 성분비율 등)
세번	심사대상 물품의 세번(9자리로 구성)
관세율	- 처리 연월일이 속하는 연도의 관세율 - 협정세율은 관세 및 조정금액의 합계
내국세율	처리 연월일이 속하는 연도의 내국세율(연도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음)
분류 이유	상기 세번으로 분류되는 이유
근거 법령	해당 사전교시 관련 법령의 근거

자료: 이상엽 외 2인(2014) p. 142

146)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p. 36

### 3) 사전교시 회답서의 효력 및 이의제기

- 사전교시 회답서의 답변 내용은 회답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수입신고 시에 적용됨
  - 질의 내용과 현품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및 회답이 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답서는 무효 처리됨
-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교시 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회답서 양식 (C-1001) 1부를 작성하여 사전교시 회답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함

### 4) 이메일을 통한 품목번호 및 세율의 조회<sup>147)</sup>

-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교시에 관한 질의 양식을 참고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의 사전교시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여 품목번호 및 세율을 조회할 수 있음
  - 이메일을 통한 질의는 원칙적으로 구두 사전 질의와 마찬가지로 서면 사전교시처럼 수입신고 심사 시에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이메일을 통한 질의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서면 사전교시에 준한 취급의 전환대상이 됨

## 다. 관세율 수준

- WTO에서는 2012년 HS 코드 기준으로 농산물과 비농산물로 구분하여 각 국가별 평균관세율을 산출하고 있음
  - 농산물 제품에는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곡물 및 그 조제품, 설탕 및 과자류, 음료 및 담배, 면섬유 등이 포함됨
  - 비농산물 제품에는 농산물 제품을 제외한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및 화학 제품, 목제품, 직물 및 의류, 기계 및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이 분류됨

14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205\\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205_jr.htm), (검색일자: 2016. 7. 14.)

〈표 2-IV-3〉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sup>1)</sup>

농산물	비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 동물(1류), 육류(2류) 및 이를 원재료로 가공식품(16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5류)</li> <li>- 낙농제품(4류)</li> <li>- 채소(7류), 과일(8류), 수액(13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14류)</li> <li>- 커피 등 차(9류, 18류)</li> <li>- 곡물 및 그 조제품(10류, 11류, 19류, 21류)</li> <li>- 종자 및 기름(12류, 15류)</li> <li>- 설탕 및 과자류(17류)</li> <li>- 음료 및 담배 (22류, 24류)</li> <li>- 면섬유(52류)</li> <li>- 기타 농산물(23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3류),</li> <li>- 광물 및 금속제품(25류, 26류, 31류, 68~71류, 72~76류, 78~83류),</li> <li>- 석유제품(27류)</li> <li>- 화학제품(44~45류, 47~49류, 94류)</li> <li>- 목제품 및 종이(44~45류, 47~49류, 94류)</li> <li>- 직물 및 의류(50~63류, 65류)</li> <li>- 고무, 가죽, 신발 등의 제품(40류, 41~43류, 64류)</li> <li>- 기계류(84류)</li> <li>- 전자기기(85류)</li> <li>- 승용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기기(86~89류)</li> <li>- 기타 제조업 제품(46류, 66류, 67류, 90~93류, 95~97류)</li> </ul>

주: 1) 대표적인 류를 기재한 것으로 세부적인 호, 소호에 따라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5*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일본의 2014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관세율은 평균 4.2%이며, 농산물의 관세율과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각각 14.3%, 2.5%로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를 이루고 있음
- 2013년 세율과 비교해보면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율이 각각 4.7%(19%→14.3%), 0.1%(2.6%→2.5%) 낮아짐에 따라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7% 낮아졌음
  - 2013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sup>148)</sup>하면 전체 품목은 2.1%의 관세율을, 농산물 및 비농산물은 각각 12.8%, 1.2%의 관세율을 보임
  - 2014년 전체 품목에 대한 평균 MFN 관세율 4.2%는 우리나라(13.3%)와 EU(5.3%)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국(3.5%)보다는 약 0.7%p 높음
    - 비농산물의 경우 MFN 관세율이 2.5%로 우리나라(6.8%), 미국(3.2%), EU(4.2%)보다 낮으나 농산물의 경우 14.3%로 우리나라(52.7%)를 제외한 미국(5.1%)과 EU(12.2%)보다 높은 수준임

148) HS 6단위의 MFN 세율을 HS 6단위 수입액으로 가중평균하였음

〈표 2-IV-4〉 일본 관세율 수준(2015년 기준)

(단위: %, 십억달러)

구분		기준연도	일본	우리나라	미국	EU
전체품목	단순평균	2014	4.2	13.3	3.5	5.3
		2013	4.9	13.3	3.4	5.5
	가중평균	2013	2.1	8.0	2.2	3.6
	수입액	2013	821.9	509.6	2,168.2	1,996.5
농산물	단순평균	2014	14.3	52.7	5.1	12.2
		2013	19	52.7	5.3	13.2
	가중평균	2013	12.8	93.2	4.1	22.3
	수입액	2013	61.4	24.6	108.8	128.7
비농산물	단순평균	2014	2.5	6.8	3.2	4.2
		2013	2.6	6.8	3.1	4.2
	가중평균	2013	1.2	3.7	2.1	2.3
	수입액	2013	760.6	485	2,059.3	1,867.8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5*, p. 75, 94, 98, 170,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5\\_e.pdf](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5_e.pdf);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4*, p. 75, 93, 97, 169,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5\\_e.pdf](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5_e.pdf), (검색일자: 2016. 7. 14.)

- 무관세를 적용하는 비율도 비농산물이 농산물에 비하여 약 1.5~1.7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세율이 적용되는 비율 역시 농산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WTO 양허관세율 기준으로 34.1%, MFN 실행 관세율 기준으로 35.9%이며 비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비율은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55.9%, 55.7%임
- 2013년에는 수입액 기준으로 농산물의 47.4%가 무관세를 적용받은 반면, 이 비율의 약 1.7배인 82.9%의 비농산물이 무관세를 적용받았음
- 세율분포를 살펴보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0%에서 10% 사이의 관세율이 약 30%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비농산물의 경우 0%에서 5%의 관세율이 약 25%의 품목에 적용되었음

〈표 2-Ⅳ-5〉 일본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무관세	0%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34.1	18.6	16.1	7.8	10.9	6.2	2.2	4.0
	2014년 MFN 실행관세	36.6	17.7	16.9	7.3	11.3	6.2	0.7	2.5
	2013년 수입액	47.4	11.7	14.9	8.9	7.8	9.2	0.0	0.1
비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55.9	25.7	15.2	2.1	0.4	0.3	0.0	0.1
	2014년 MFN 실행관세	55.7	26.1	15.3	2.1	0.4	0.2	0.0	0.1
	2013년 수입액	82.9	9.3	6.0	1.4	0.1	0.0	0.0	0.1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5*, p. 94,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5\\_e.pdf](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5_e.pdf), (검색일자: 2016. 07. 14.)

- 평균관세율을 각 산업군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76.3%의 낙농제품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9.4%의 평균관세율이 적용되는 가죽 및 신발류임
  - WTO 양허관세율 기준으로 농산물 가운데는 낙농제품이 102.7%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곡물 및 그 조제품이 61%로 그 뒤를 이었음
    - 낙농제품은 MFN 관세율 기준 평균 76.3%, 최대치 586%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며, 곡물류는 34.7%의 평균 MFN관세율이 적용되었음
  - 비농산물 경우 석유제품이 WTO 양허관세율 기준으로는 높은 세율(평균 13.4%, 최대 285%)이 적용되었으나 MFN 관세율은 평균 0.6%, 최대 8%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음
    -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품군은 가죽, 신발류로 해당 품목의 평균 세율은 WTO 양허관세율 9.6%(최대 434%), MFN 관세율 9.4%(최대 432%)임
    - 면섬유<sup>149)</sup>와 비전기기계, 운송기기에 대해서는 무관세율이 100%로 전자기기의 무관세품목 비율(95.5%)보다 광범위하게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149) 제5201호 내지 제5203호의 섬유형태의 면만 해당함. 제5204호 내지 제5212호의 면사 및 면직물은 비농산물의 직물류에 분류되어 집계됨

〈표 2-IV-6〉 일본 산업별 관세율 수준(2015년 기준)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무관세	최대	평균	무관세	최대	비중	무관세
동물제품	14.2	45.7	360	11.3	46.6	360	1.5	2.6
낙농제품	102.7	0	587	76.3	9.1	586	0.2	26.2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9.3	9.6	268	10.1	19.4	268	1.2	15.3
커피, 차	13.5	22.2	138	14.1	22.7	138	0.4	59.5
곡물 및 그 조제품	61	8.2	783	34.7	21.8	783	1.5	69.4
종자, 기름	7.5	46.2	381	8	46	381	0.8	80
설탕 및 과자류	27.1	7.3	131	19.7	12	50	0.1	64.6
음료, 담배	16.1	19.1	48	14.5	30.8	48	1.1	63.7
면섬유	0	100	0	0	100	0	0	100
기타 농산물	3.7	66.5	261	3.4	68.2	215	0.7	70.5
어류 및 수산물	4.9	4.9	12	5.7	3.2	15	1.9	4.9
광물, 금속	1	69.9	10	1	70.4	10	23.4	94
석유제품	13.4	54.2	285	0.6	64.6	8	21.0	94.5
화학제품	2.3	37.4	7	2.2	38.8	7	8.4	59
목제품, 종이제품	1	78.8	10	0.8	80.8	10	3	66.5
직물	5.5	7.6	25	5.4	8.1	25	1.9	7.1
의류	9.2	0	13	9.0	2	13	3.9	3.1
가죽, 신발 등	9.6	50.3	434	9.4	54.1	432	1.7	38.7
비전기기계	0	100	0	0	100	0	7.7	100
전기기계	0.2	95.5	5	0.1	97.8	5	11.3	99.8
운송기기	0	100	0	0	100	0	3.5	100
기타 제조업 제품	1.1	77	8	1.2	75.7	8	5.1	90.5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5*, p. 94,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5\\_e.pdf](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15_e.pdf), (검색일자: 2016. 7. 14.)

## 2 관세율의 형태와 종류

---

### 가. 관세율의 형태<sup>150)</sup>

#### 1) 관세의 부과방법

- 관세는 관세정률법 제3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율은 [별표]에 의함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율 적용방법을 종가세라고 하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는데 대부분 관세율은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음
  - 수입물품 가운데 철광석, 양모, 면화, 사진용 필름, 타이어, 기계류 등 일부는 무세가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약 35% 정도를 차지함

#### 가) 종가세

- 종가는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하므로 관세 부담이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관세액도 변하는 특징을 가짐
  -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적응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물품의 적절한 가격의 파악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관세액도 낮아져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음

#### 나) 종량세

- 종량세는 수입품의 개수, 양, 무게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종량세는 세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변동과 관련하여 세율이 불균등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15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kanzei\\_shikumi.htm](http://www.customs.go.jp/shiryo/kanzei_shikumi.htm), (검색일자: 2016. 7. 14.)



### 다) 혼합세

- 종가와 종량세를 결합한 세율을 혼합세라고하며, 여기에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선택세와 종가·종량세를 병합한 복합세가 있음
- 선택세는 동일한 물품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정하고, 그 중 세액이 높은 세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을 부과함
  - 과세가격이 높은 구간에서 종가세에 따른 세액이 낮으면 종량세가 적용되므로 관세의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 현재 모직물, 계란 노른자, 납괴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에 일정한 종가를 추가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재 일부 유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고, 일부 면직물은 종가세와 복합세 및 선택세가 적용되고 있음

## 2) 특수한 형태의 관세

## 가) 차액관세

- 차액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수입가격과 일정 수준의 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수입품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임
-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의 균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표 2-Ⅳ-7〉 차액관세 예시

(단위: %)

통계번호		품명 (Description)	관세율	
번호 (HS code)			기본 (General)	잠정 (Temporary)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1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010	1. 멧돼지의 것	무세	
		2. 다른 것들	(5)	
	020	1kg당 과세가격이 종량세 적용 기준가격 이하의 것		361엔/kg
	030	1kg당 과세가격이 종량세 적용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분기가격 이하의 것		1kg당 기준 수입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
	040	1kg당 과세가격이 분기가격을 초과하는 것		4.3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 (검색일자: 2016. 7. 13.)

나) 슬라이드관세

- 슬라이드관세에 따라 양파, 동과, 납과 등 국제 시황의 변동이 심한 물품은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종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무관세를 적용함
  -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관세율임
  - 슬라이드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무관세가 되는 구간에 다다를수록 관세액이 감소해 나가는 구간(슬라이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관세라고 칭함

〈표 2-IV-8〉 슬라이드관세 예시

(단위: %)

통계번호		품명 (Description)	관세율	
번호 (HS code)	기본 (General)		잠정 (Temporary)	
0703		양파·샬롯·마늘·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양파와 샬롯		
		양파	10	
	011	1kg당 과세가격이 67엔 이하의 것		
	012	1kg당 과세가격이 67엔을 초과하고 73.7엔 이하의 것		(73.7 엔과 과세가격의 차액)/kg
	013	1kg당 과세가격이 73.7엔을 초과하는 것		무세
	020	2. 샬롯	5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 (검색일자: 2016. 7. 13.)

다) 계절관세

-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을 달리하는 관세임
  - 계절관세의 목적은 국산품의 출하시기가 특정 계절에 치우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이와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산품의 보호를 도모하고, 다른 계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수요도 충족시키는 것임
  - EPA협정이 증가하면서 계절관세제도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나나, 오렌지, 자몽, 포도 등에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표 2-Ⅳ-9〉 계절관세 예시

(단위: %)

통계번호		품명 (Description)	관세율	
번호 (HS code)			기본 (General)	잠정 (Temporary)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플랜틴(plantain)		
		1. 신선한 것		
	100	(1) 매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 까지 수입되는 것	40	11.8
	100	(2)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수입되는 것	50	20.9
	200	2. 건조한 것	6	무세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6_6/index.htm), (검색일자: 2016. 7. 13.)

라) 관세할당

- 관세할당제도는 일정한 수량 이내의 수입품에 한해 무세 또는 낮은 세율(기본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요자에게 저렴한 수입품의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일정 수량을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1961년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국내 산업에 대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자유화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채택되었음
  - 관세할당은 수입물품의 수량이 일정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수량을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 억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함
- 관세할당은 관세정률법 <제9조의 2>에 따른 것과 EPA 협정에 따른 것이 있는데, 잠정세율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도 관세할당이 적용됨<sup>151)</sup>
    - 할당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 각각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정령과 경제연계협정에 따른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일정 수량 이내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수입 수량 제한과 비교하면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실행세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 WTO는 원칙적으로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세할당제도는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함
  - 현재 일반 관세할당은 우유와 크림, 천연치즈, 콩, 옥수수, 맥아, 전분, 곤약감자, 코코아 조제품, 가죽, 신발 등의 품목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EPA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은 멕시코,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몽골 등 11개 협정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음

## 나. 관세율의 종류

- 일본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음
  - 따라서 관세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따라 국내법에 규정된 관세율과 국회의 승인을 받은 조약을 따르는 국제협정관세로 구분됨
- 관세율을 규정한 일본 국내법으로는 관세정률법과 관세잠정조치법이 있음

151)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5 제2항에서 일반적인 잠정세율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 중 세율이 일정한 수량을 한도로 정해지는 물품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정률법은 장기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 신속통관을 위해 일괄적으로 정한 간이세율 및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을 규정함  
- 관세정률법 [별표]에 기본세율과 간이세율을 계기하고 있음
  - 관세잠정조치법은 정책적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관세할당, 특별긴급관세 등의 잠정세율과 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 등에 대해 특혜를 공여하는 목적으로 적용하는 특혜관세 등을 규정함
- 국제조약을 비준절차를 통해 국내법에 수용하여 적용하는 국제협정관세에는 WTO 양허세율과 EPA세율 등이 있음<sup>152)</sup>
- WTO 양허세율은 WTO협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 (양허)한 세율임
  - EPA세율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해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표 2-IV-10〉 일본 관세의 종류

세율의 종류	근거법
편익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관세정률법 제5조 내지 제9조
개발도상국 특혜관세(GSP), 최빈개발도상국(LDC) 특혜관세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
EPA세율	EPA
WTO 양허세율	WTO협정 양허표
잠정세율: 잠정세율, 특별긴급관세, 관세긴급조치	관세잠정조치법 제2조, 제7조의 3~7, 제8조의 5~6
관세할당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5~6, 관세정률법 제9조의 2
기본세율	관세정률법, 법 별표
간이세율	관세정률법 제3조의 2, 제3조의 3, 법 별표의 부표1

자료: 이상엽 외 2인(2014), p. 68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15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5\\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5_jr.htm), (검색일자: 2016. 7. 13.)

### 1) 세율 적용 우선순위<sup>153)</sup>

- 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의 순서로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특혜세율은 해당 국가의 원산지 상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협정세율은 그것이 잠정세율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됨
  - 동일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잠정세율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기본세율 또는 잠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협정세율이 기본세율 또는 잠정세율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의 적용원칙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잠정세율을 적용함
  - EPA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의 적용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EAP세율을 적용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의 적용원칙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 잠정조치법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특혜 세율을 적용함

### 2) 관세의 종류

#### 가) 기본세율

- 기본세율은 관세정률법 [별표]에 품목별로 규정된 관세율로, 국내 산업의 상황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외 가격차와 필요한 보호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되는 세율임<sup>154)</sup>
  - 우선 적용되는 다른 세율이 없는 경우 적용함

#### 나) 간이세율

- 관세액 산정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또는 소액 수입화물에 대해

153)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3-1(세율의 적용 관계)

15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5\\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5_jr.htm), (검색일자: 2016. 7. 13.)

서는 간단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해당 수입자가 간이세율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취지를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 간이세율은 관세정률법 [별표의 부표1]에 기재되어 있음

(1) 입국자 휴대품 등에 대한 간이세율(관세정률법 제3조의 2)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함
  -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과세 처리를 위해 마련된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이 적용됨

〈표 2-Ⅳ-11〉 휴대품의 간이세율(2016년 기준)

구분	품목	세율
주류	위스키, 브랜디	600엔/ℓ <sup>1)</sup>
	럼, 진, 보드카	400엔/ℓ
	리큐어, 소주	300엔/ℓ
	기타(와인, 맥주 등)	200엔/ℓ
기타(관세가 무세의 것을 제외)		15%
퀄런(담배세 및 담배 특별세)		11.5엔/개비 <sup>2)</sup>

주: 1) 인상 전 500엔/ℓ (2014년 4월부터 인상됨)

2) 인상 전 11엔/개비(2014년 4월부터 인상됨)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eitaijetsuso/7105\\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eitaijetsuso/7105_jr.htm), (검색 일자: 2016. 10. 26.)

- 상품의 전부에 대해 간이세율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간이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상업물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 관세가 무관세인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벌칙이 적용되는 물품, 상업적인 양에 달하는 물품,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10만엔을 넘는 것, 미곡(쌀), 식용 김, 파인애플 제품, 곤약감자, 퀄런 이외의 담배, 엽총 등 기타 간이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표 2-IV-12〉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 품목

간이세율 적용 배제 주요 품목	
1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물품
2	범죄에 관련된 물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간이 세율에 의한 것이 적당하지 않은 화물</li> <li>(1) 쌀 (2) 식용 김 (3) 곤약감자(구약나물)</li> <li>(4) 조제, 저장처리한 파인애플 (5) 포도즙 (6) 에틸 알코올</li> <li>(7) 에틸 알코올 (알코올 80% 미만) (8) 담배 및 제조담배 (알코올 80% 이상) 및 대용품(퀵런 제외) 변성 알코올 조제품</li> <li>(9) 수렵용 총</li> <li>-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입국자의 직업 및 입국의 사유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명확하게 상업량에 달한다고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과세가격이 10만엔 이하인 것 제외)</li> <li>- 한 개 또는 한 세트의 과세가격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것</li> </ul>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제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2) 소액물품 등에 대한 간이세율(관세정률법 제3조의 3)

-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sup>155)</sup>의 일반 수입화물 및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과는 별도로 정해진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게 됨
-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품목분류를 크게 6가지와 주류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
  - 소액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은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는 포함되어 있음

〈표 2-IV-13〉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표(2016년 기준)

	품목	관세율
1	알코올 음료 (1) 와인 (2) 소주 등의 증류주 (3) 와인 냉각기(와인 쿨러), 청주, 사과주 등	₩ 70/ℓ ₩ 20/ℓ ₩ 30/ℓ
2	(1) 토마토 케첩 기타 토마토 소스,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 (2) 무두질 또는 마무리한 모피(드롭 스킨)과 모피제 의류, 의류 부속품 기타 모피 제품	20%

155) 2014. 4. 1.부터 10만엔에서 20만엔으로 상향 조정됨

〈표 2-Ⅳ-13〉의 계속

	품목	관세율
3	(1) 커피와 차(홍차 제외) (2) 젤라틴 및 아교 (3) 무두질 또는 마무리한 모피(드롭 스킨 제외)	15%
4	(1) 동물(살아있는 것에 한함) 육과 식용 설육 물고기와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2) 식용 야채, 뿌리 및 괴경 (3)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의 껍질 및 멜론의 껍질 (4) 생강(일시적 보존처리 한 것에 한함) (5) 식용 해초 기타 조류 (6) 고기, 물고기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7) 각종 조제 식료품 (8) 구연산 등 (9) 대나무제의 빗 (10) 짚, 에스파르트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및 바구니 세공물 및 나뭇가지(枝条) 세공물 (11) 견직물 (12)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및 그 식물과 종이 원사 및 그 식물 (13)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14)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	10%
5	(1) 살아있는 나무 기타 식물 및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2)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또는 광물성 왁스 (3) 무기화학 및 귀금속, 희토류 금속, 방사성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4) 유기화학품(구연산 등 제외) (5) 무두질 액기스, 염색 액기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 안료 기타 착색제, 페인트, 바니쉬, 퍼티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정유, 레지노이드, 조제 향료와 화장품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세제, 조제 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광택제,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모델링 페이스트,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6) 각종 화학 공업 생산품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 모피와 인조 모피 및 이들의 제품 (9)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식물류 및 산업용 방직 섬유의 식물류 및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 제품	3%

〈표 2-IV-13〉의 계속

	품목	관세율
5	(10) 우산,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회초리) 및 이들의 부분품 제조우모, 우모제품, 조화(造花) 및 인발제품(人髮製品) 돌,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11) 유리 및 그 제품(유리 구슬 등을 제외) (12) 구리 및 그 제품, 니켈 및 그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13) 납 및 그 제품 (14) 아연 및 그 제품 (15) 비금속 및 서메트 및 이들의 제품 비금속계의 공구, 도구, 칼, 숟가락 및 포크와 이들의 부분품 각종 비금속 제품 (16) 가구, 침구, 매트리스 등 (17) 완구, 유희 용구 및 운동 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6	(1) 동물성 생산품(다른 류에 해당하는 것 제외) (2) 소금, 황(硫黃), 토석류, 플라스틱, 석회 및 시멘트 (3) 의료용 젤 (4) 고무 및 그 제품 (5) 종이 및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6) 도자제품 (7) 철강 (8) 철강제품 (9) 주석 및 그 제품	면세
7	이전 각 호에 기재된 품목 이외의 것	5%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0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001_jr.htm), (검색 일자: 2016. 10. 27.)

- 관세가 무관세인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별칙이 적용되는 물품, 기타 간이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과 상품의 전부에 대해 간이세율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간이세율 적용 배제 물품에는 일반 상업물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표 2-Ⅳ-14〉 소액 수입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 품목

주요 품목 예	
1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물품
2	범죄에 관련된 물품
3	국가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간이 세율에 의한 것이 적당하지 않은 화물 (1) 우유, 크림 등                      (2) 잡두(雜豆)                      (3) 곡물 (4) 곡식 등                              (5) 땅콩과 곤약감자              (6) 돼지고기 및 쇠고기 조제품 (7) 코코아 조제품                      (8) 곡식 가루·곡물 조제품      (9) 조제 식료품 (10) 담배                                (11) 정제 소금                      (12) 석유 (13) 멘톨                                (14) 원피·가죽                      (15) 가죽 (16) 고치·생사                        (17) 니트 제 의류                    (18) 신발 (19) 모조 신변장식용품              (20) 가죽제의 휴대용 시계 밴드    (21) 가죽제의 의자 부분품 (비금속제 이외)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0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001_jr.htm), (검색일자: 2016. 10. 27.)

다) 특수관세

- 특수관세란 불공정한 무역거래 및 수입 급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생산자·공급업자 등을 지정하여 일반관세 외에 할증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또는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함
  -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등 불공정 무역 거래 및 수입 급증 등으로 국내 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무부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조사실에서 국내산업에 미친 실질적 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특수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함

(1) 보복관세(관세정률법 제6조)

- 외국에서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자국 또는 자국의 산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했을 때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적용하는 보복적 성격의 관세임

- WTO 협정에 따라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나라가 일본의 선박, 항공기, 수출화물 또는 통과화물에 대해 차별적으로 불이익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 그 국가에서 수출되거나 그 국가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세율 이외에 당해 화물의 과세가격과 동일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WTO에 의해 일본에 공여된 이익을 무효 또는 침해하거나 WTO협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 보조금 제도가 일본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보복관세는 WTO의 승인을 얻어 부과할 수 있음
- 일본은 미국의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 Act)<sup>156)</sup>에 대응하여 2005년부터 미국의 볼베어링 등의 품목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014년 8월 적용 기간이 종료되었음<sup>157)</sup>

#### (2) 상계관세(관세정률법 제7조)

- 상계관세제도는 수출 보조금을 받은 수입화물에 대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액의 범위 내에서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세계 무역 자유화와 무역 규칙의 강화의 목적으로 WTO협정에서도 일정한 규율에 따라 인정하고 있음
-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과 동종화물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본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함
  - 당해 화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별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액과 동일한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함

156) 정식 명칭은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으로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조자 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며, WTO 제소 결과 WTO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정되었음

15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okusyuu/kazeikamotsu\\_houhuku.htm](http://www.customs.go.jp/tokusyuu/kazeikamotsu_houhuku.htm), (검색일자: 2016. 10. 27.)

- 당해 보조금을 받은 화물의 수입이 일본의 해당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은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납부된 상계관세의 금액이 실제 보조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초과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계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일본은 2006년 1월부터 한국의 하이닉스사의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가 2009년 4월 부과를 종료하였음<sup>158)</sup>

(3) 덤핑방지관세(관세정률법 제8조)

- 덤핑가격으로 판매된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수출국의 덤핑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의 범위 내에서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상계관세와 마찬가지로 WTO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
-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일본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함
- 당해 화물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수입되는 덤핑방지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2016년 일본이 부과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는 다음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

15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okusyuu/kazeikamotsu\\_sousai.htm](http://www.customs.go.jp/tokusyuu/kazeikamotsu_sousai.htm), (검색일자: 2016. 10. 27.)

〈표 2-Ⅳ-15〉 과세중인 덤핑방지관세(2016년 기준)

(단위: %)

구분	대상품목	부과기간	원산지	세율
덤핑	제2820.10호의 전해 이산화망간	2008.9.~2019.3.	스페인	14
			중국	46.5 <sup>1)</sup>
			남아프리카	14.5
	제2929.10호의 톨루엔디아오시아네이트	2015.4~2020.4.	중국 <sup>2)</sup>	69.4
	제2815.20호의 수산화칼륨	2016.8.~2021.8.	한국	49.5
			중국 <sup>2)</sup>	73.7

주: 1) GUIZHOU REDSTAR DEVELOPING DALONG MANGANESE INDUSTRY CO.,LTD.에서 생산된 것은 34.3%  
 2)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okusyuu/kazeikamotsu\\_hutou.htm](http://www.customs.go.jp/tokusyuu/kazeikamotsu_hutou.htm), (검색일자: 2016. 10. 27.)

(4) 긴급관세(관세정률법 제9조)

- 일정 물품의 수입의 증가로 동종의 경쟁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생기는 심각한 손상 등을 방지·구제하는 할증관세임
  - 1994 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제19조〉 및 WTO 세이프 가드 협정에 따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상 방지를 위해 인정된 긴급 조치임
- 외국에서 가격하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에 따라 특정 종류의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동종화물 또는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조업계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경제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물품 및 4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긴급관세조치는 별표의 세율 이외에 당해 화물의 과세가격과 일본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도매가격과의 차액에서 별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함
  - WTO 양허 물품의 경우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별표의 세율의 범위 내에서 그 양허를 수정하고 별표의 세율 또는 수정 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함
  - 타국에서 세이프 가드 협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대항 조치로서 양허의 적용 정지 또는 과세가격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5) 편익관세(관세정률법 제5조)

- 관세에 대한 조약의 특별규정에 의해 편익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이익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
  - 2016년부터 적용되는 편익관세는 부탄, 바하마, 바티칸, 나우루,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알제리,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를 지정국으로 함<sup>159)</sup>

라) 잠정세율

- 잠정세율은 단기적인 경제사정 등의 관점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로, 수입을 억제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함
  -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협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한 경우 잠정세율이 적용됨
- 관세잠정조치법은 일반적인 잠정세율, 특별긴급관세, 관세긴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1) 잠정세율(관세잠정조치법 제2조)

- 관세잠정조치법 <제2조>는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잠정세율을 [별표 1]에 고시하고 있음<sup>160)</sup>
  - 단계적으로 잠정세율을 인하하는 농산물의 경우 [별표 1-3]에 규정하고 있음

(2) 특별긴급관세(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3, 제7조의 4)

-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일정 기준량을 초과하거나(제7조의 3), 과세가격이 일정 기준액 이하로 떨어진 경우(제7조의 4)에 원래의 관세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함

159) 일본 관세정률법 제15조에 의한 편익 관세의 적용에 관한 정령 별표

160) 일본 관세국에서 공개하고 있는 실행관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www.customs.go.jp/tariff/2016\\_6/index.htm](http://www.customs.go.jp/tariff/2016_6/index.htm))



- 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 다음 달의 첫날부터 당해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행관세율에 특별긴급관세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됨
  - 가격을 발동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의 경우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이 클수록 가산되는 관세가 누적되어 커지게 됨
- 수입 수량이 수입 기준수량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의 대상과 추가 되는 관세율은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1의 6]에 계기하고 있고, 과세가격이 발동 기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우의 대상과 추가 관세율은 [별표 제1의 7]에 규정하고 있음
- 주로 우유, 크림, 요구르트, 버터, 콩류, 쌀, 쌀가루, 보리, 밀, 곡분 등이 특별긴급 관세의 대상이 됨

(3) 관세긴급조치(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5, 제7조의 6, 제7조의 7)

- 관세긴급조치는 크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제7조의 5 내지 6)과 EPA 협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제7조의 7)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본은 소고기와 살아있는 돼지 및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관세긴급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신선, 냉장 및 냉동 소고기는 전년도 동일기간까지의 수입량 또는 2002년 및 2003년 동일기간 수입량의 합의 2분의 1 중 더 많은 수량의 17%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잠정세율 및 특혜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률법 별표의 기본 세율 적용함
  - 살아있는 돼지, 설육, 햄, 베이컨 등 돼지고기 등은 직전 3년간의 동일 기간 동안의 평균 수입량의 19%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잠정세율 및 특혜세율 대신 관세 정률법 별표의 기본세율을 적용함
  - 또한 돼지 등은 수입수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 잠정세율에도 불구하고 관세 잠정조치법 [별표 제1의 8]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됨
    - [별표 제1의 8]은 기준 가격별로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특히 일정 가격 범위 내의 것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EPA협정에 따른 관세양허에 의하여 특정 화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 수입량의 증가에 따라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기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산업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 및 기간을 정하여 관세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해당 조치로써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양허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를 하지 않거나 기타 물품에 대하여 실행관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음

마) 관세할당(관세정률법 제9조의 2,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5 제2항, 제8조의 6)

- 관세할당은 권한 있는 기관의 할당을 받은 자가 일정한 수량 내로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할당관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대신 또는 경제산업대신 등에게 관세할당을 신청하여야 함<sup>161)</sup>
-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대신 등은 물품의 사용 및 수입실적, 계획, 국민경제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세할당증명서를 발급함
  - 관세할당증명서는 대상물품의 할당적용 기간까지 유효함
- 관세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신고는 관세할당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함

〈표 2-Ⅳ-16〉 관세할당 적용 품목(2016년 기준)

HS code	품명	기간	수량
0401.10, 0401.20, 0401.40, 0401.50, 0403.10, 0403.90, 0404.90, 1806.20, 1806.90, 1901.10, 1901.20,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 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천연우유의 성분 함유량의 합계가 건조 상태에서 전 중량의 30% 이상인	2016.4.1. ~ 2017.3.3	133,940톤

161) EPA협정에 따른 할당 중 수출국의 인증서에 따라 수입국이 할당을 실시하는 것인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표 2-IV-16〉의 계속

HS code	품명	기간	수량
1901.90, 2101.12, 2101.20, 2106.10, 2106.90	것에 한한다), 커피, 차 또는 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식료품(천연우유의 성분 함유량의 합계가 건조 상태에서 전 중량의 3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조제 식료품 천연우유의 성분 함유량의 합계가 건조 상태에서 전 중량의 30% 이상인 것에 한한다)	2016.4.1. ~ 2017.3.3	133,940톤
0402.10, 0402.21, 0402.29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의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중 학교 등 급식용의 것 이외의 것	2016.4.1. ~ 2017.3.3	74,973톤
0402.10, 0402.2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의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중 학교 등 급식용의 것	2016.4.1. ~ 2017.3.3	7,264톤
0402.91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16.4.1. ~ 2017.3.3	1,500톤
0404.10	무기질을 농축한 유장	2016.4.1. ~	14,000톤
	유장 및 조제유장 중 무기질을 농축한 유장 이외의 것으로 배합사료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2017.3.3	45,300톤
0404.10, 0404.90	유장 및 천연우유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분유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2016.4.1. ~ 2017.3.3	25,000톤
0405.10, 0405.90	우유에서 얻은 버터 및 기타 유지	2016.4.1. ~ 2017.3.3	581톤
0406.10, 0406.40, 0406.90	치즈와 커드 중 가공 치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2016.4.1. ~ 2017.3.3	62,000톤
0713.10, 0713.32, 0713.33, 0713.34, 0713.35, 0713.39, 0713.50, 0713.60, 0713.90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조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중 병아리콩, 녹두 이외의 것	2016.10.1. ~ 2017.3.3	70,000톤

〈표 2-Ⅳ-16〉의 계속

HS code	품명	기간	수량
1005.90	옥수수 중 옥수수전분 제조에 사용되는 것	2016.4.1. ~ 2017.3.3	4,192,500톤
	옥수수 중 사료용의 것		308,000톤
	옥수수 중 콘플레이크, 에틸 알코올, 증류주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109,500톤
	기타 옥수수		125,500톤
1107.10, 1107.20	맥아(볶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16.10.1. ~ 2017.3.3	257,000톤
1108.12, 1108.13, 1108.14, 1108.19, 1108.20, 1901.20, 1901.90	전분(밀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과 이눌린, 곡물의 분, 조분 또는 전분의 조제 식료품(케이크 믹스 및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의 것을 제외한다)(밀전분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전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	2016.4.1. ~ 2017.3.3	167,000톤
1202.30, 1202.41, 1202.4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16.4.1. ~ 2017.3.3	75,000톤
1212.99	구약구(Kuyaku) 뿌리(건조시켰는지, 자르거나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16.4.1. ~ 2017.3.3	267톤
1906.20	코코아를 함유한 그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가루·알갱이 또는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중 초콜릿 제조용의 것	2016.4.1. ~ 2017.3.3	20,500톤
2002.90	토마토 퓨레와 토마토 페이스트 중 토마토 케첩 또는 기타 토마토 소스 제조에 사용하는 것	2016.4.1. ~ 2017.3.3	37,700톤
2008.20	밀폐용기에 넣은 파인애플로 용기 한 개의 총중량이 10kg 이하의 것(자르거나 파쇄 또는 펄프상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2016.4.1. ~ 2017.3.3	40,100톤

〈표 2-IV-16〉의 계속

HS code	품명	기간	수량
2106.90	조제 식용지방(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초과 7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중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것	2016.4.1. ~ 2017.3.3	11,550톤
	기타 조제 식용지방		7,424톤
4101.20, 4101.50, 4101.90, 4104.11, 4104.19, 4104.41, 4104.49, 4107.11, 4107.12, 4107.19, 4107.91, 4107.92, 4107.99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동물의 원피(생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 크롬 태닝한 것, 유연처리하지 않은 것 이외의 것,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중 염색 및 착색한 것 이외의 것,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2016.4.1. ~ 2017.3.3	214,000m <sup>2</sup>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동물의 유연처리한 원피 중 염색 및 착색한 것,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동물의 가죽 중 염색 및 착색한 것 또는 무늬넣기한 것	2016.4.1. ~ 2017.3.3	1,466,000m <sup>2</sup>
4105.30, 4106.22, 4112.00, 4113.10	양 및 염소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중 염색 및 착색한 것, 양가죽과 염소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중 염색 및 착색하거나 또는 무늬넣기한 것	2016.4.1. ~ 2017.3.3	1,070,000m <sup>2</sup>
5001.00, 5002.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2016.4.1. ~ 2017.3.3	798톤
6403.20, 6403.40, 6403.51, 6403.59, 6403.91, 6403.99, 6404.19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컴퍼지션 레더로 라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중 스포츠용의 것, 체조경기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것과 슬리퍼를 제외한 것	2016.4.1. ~ 2017.3.3	21,019,000 켈레

자료: 일본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정령 별표

### 바) 특혜관세(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

- 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출 소득의 증대, 산업화의 촉진을 도모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경제개발도상국 가운데 특혜관세의 수혜 대상국가로 지정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관세잠정조치법 별표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
  - 수입이 증가하거나 이와 동종 물품 또는 용도가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고 해당 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 기간,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음
  
- 특혜관세의 적용 품목, 관세율 등은 농수산물(제1류~제24류)과 광공업품(제25류~제76류, 제78류~제97류)을 구분하여 규정됨
  - 농수산물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함
  - 광공업품은 [별표 3], [별표 4], [별표5]<sup>162)</sup>에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별표 5]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됨
  
- 2016년 4월 현재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메니아, 나이지리아 등 138개국 5개 지역이며, 이 중 최빈개발도상국은 아프가니스탄, 수단, 라오스, 토고 등 47개국임<sup>163)</sup>

### 사) WTO 협정관세

- WTO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임
  - 동일 품목에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협정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162) 별표 3은 과세되는 광공업품의 세율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표로 기본관세 또는 협정관세 중 낮은 관세율에 해당 계수를 곱하여 세율을 산출함. 별표 4와 5는 특혜관세 적용 배제 물품표임

16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4_jr.htm), (검색일자: 2016. 7. 21.)

아) EPA관세

- 일본은 2016년 7월 현재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인도네시아, 페루, 스위스 등 15개국·지역과 EPA협정을 발효하고 있음
- TPP<sup>164</sup>)와 서명된 상태이며, 몽골, 캐나다, EU, RCEP<sup>165</sup>) 등과는 협상 중이고, GCC<sup>166</sup>), 한국과는 협상이 연기되거나 중단되었음

〈표 2-IV-17〉 일본 EPA 현황(2016년 기준)

구분	EPA 계약 상대국
발효	싱가포르(2002. 11. / 개정의정서 2007.9.), 멕시코(2005. 4. / 개정의정서 2012. 4.), 말레이시아(2006. 7.), 칠레(2007. 9.), 태국(2007. 11.), 인도네시아(2008. 7.), 브루나이(2008. 7.), ASEAN(2008. 12.), 필리핀(2008. 12.), 스위스(2009. 9.), 베트남(2009. 10.), 인도(2011. 8.), 페루(2012. 3.), 호주(2015. 1.), 몽골(2016. 6.)
서명 (미발효)	TPP(2016. 2. 서명)
협상 중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EU, RCEP, 아세안(서비스·투자)
협상연기·중단	GCC, 한국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yotsu/kokusai/torikumi.htm>, (검색일자: 2016. 7. 21.)

164)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참여

165) RCEP(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일본, ASEAN10 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협상에 참여

166) GCC(걸프 협력이사회): 아랍 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6개국으로 구성

## V. 감면 및 환급제도

- 수입화물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입관세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면세, 부분적으로 없애는 것을 감세라고 하며 두 개의 개념을 합쳐서 감면이라고 함
  -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함
  
- 관세의 감면 및 환급제도는 관세정률법상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인 감면 및 환급제도와 관세잠정조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잠정적인 감면 및 환급제도로 구분됨
  - 관세감면제도에는 조건부 감면과 무조건 감면이 있음
    - 조건부 감면은 품목을 제한하는 제한적 조건부 감면과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관세환급제도는 관세정률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한국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과 같은 제도는 없으며, 극히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만 사전에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 한편,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납세)신고 시 관세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감면 사전교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물품 수입예정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에 미리 세관에 당해 물품의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를 조회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음



〈표 2-V-1〉 일본의 유형별 관세 감면·환급제도

유형	대상물품	
<b>항구적 감면 및 환급(관세정률법)</b>		
무조건 감면	변질 또는 손상 등 경우의 감세(제10조)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제12조)	
	무조건 면세(제14조 제1호 내지 제8호, 제16호 내지 제18호)	
	재수입 감면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된 화물의 감세(제11조)
		재수입 면세(제14조 제9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재수입 감세(제14조의 2)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제14조의 3)	
	과세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제19조의 2)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 제외)(제16조)		
조건부 감면(일반적)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제16조)	
	특정용도 면세(제15조)	
	재수출 감면	재수출 면세(제17조)
		재수출 감세(제18조)
조건부 감면(제한적)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제13조)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제19조)	
환급	변질 또는 손상 등 경우의 환급(제10조)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의 환급(제19조)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제19조의2)	
	수입시와 동일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의 환급(제19조의3)	
	위약품 등을 재수출 또는 폐기한 경우 환급(제20조)	
<b>잠정적 감면(관세잠정조치법)</b>		
무조건 감면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제8조)	
조건부 감면(제한적)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제4조)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 일자: 2016. 10. 24.)

## 1 관세의 감면제도

### 가. 관세정률법상 감면제도

#### 1) 변질·손상 등 경우의 감세

- 수입화물이 수입허가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의 물품과 가치 감소분에 대한 과세형평을 위하여 변질 또는 손상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sup>167)</sup>
  - 종가세 물품을 수입신고 등의 시기 이후 수입허가(또는 수입허가전인취승인) 시까지의 사이에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됨
  - 종량세 물품은 수출국에서 물품의 적출 이후 수입허가(또는 수입허가전인취승인) 시까지의 사이에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됨
  - 종가종량복합세율은 종가세 상당부분과 종량세 상당부분에 대하여 각각 전기의 종가세 물품과 종량세 물품의 경우에 대해 감세규정이 적용됨<sup>168)</sup>
  
- 감세액은 수입물품이 수입허가 전에 변질 또는 손상에 의한 가치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분에 해당하는 관세액과 변질 또는 손상 후의 성질 및 수량에 따른 관세액과의 차액 가운데 많은 금액이 경감됨<sup>169)</sup>
  
- 감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함
  -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서(특례신고서)에 변질·손상감세명세서(T-1010)를 첨부하여 신고함<sup>170)</sup>
    -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되어 있는 종가세 물품으로 수입신고 시까지 변질 또는 손상으로 세율 변경(저감)을 초래한 것 또는 종량세 물품으로 수입신고 시까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이외 물품으로 수입신고 등의 시 이후 수입허가(또는 수입허가전인취승인) 시까지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절차에 의함

167) 일본 관세정률법 제10조

168) 일본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p. 86

169)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2조

170) 일본 관세정률법 제3조 제1항

## 2)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된 화물의 감세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그 수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가공 또는 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관세액 이외의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경감할 수 있음<sup>171)</sup>
  - 다만, 가공을 위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그 가공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함
  
- 가공 또는 수리용 화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가공·수선수출화물검사신고서(T-1050), 수출승인증(또는 가공·수선에 관한 계약서)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함<sup>172)</sup>
  - 수출신고서에는 수출 취지, 수입 예정시기 및 예정지를 기입
  
- 감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공 또는 수선을 입증하는 서류와 가공·수선·조립제품감세명세서(T-1060) 외에 수출 시에 교부받은 수출허가와 관련된 세관관서의 확인을 필한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sup>173)</sup>
  - 가공 또는 수선을 입증하는 서류는 수출승인증 또는 가공·수선에 관한 계약서 등으로 함
  
- 한편,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편의상 재수입면세<sup>174)</sup>를 적용할 수 있는 간이처리요령이 있음<sup>175)</sup>
  -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하여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 수출허가 시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 또는 수선(예를 들면, 나사 조임, 기름 세척, 주유 등)만을 한 후 수입되는 경우
  - 일본에서 수출된 생필품이 촬영 후 미현상(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현상이 끝난 것을 포함)으로 수입되는 경우

171) 일본 관세정률법 제11조

172)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조,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1-3

173)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조의 2,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1-4

174)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0호

175)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1-1(2)

### 3) 생활 관련 물자의 감세 및 면세

-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이 높은 화물의 수입가격이 국내품의 도매가격보다도 높은 경우 또는 흉작,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경우 등에는 화물 및 기간을 정하여 그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감세 및 면세의 요건은 수입되는 쌀, 벼, 보리, 밀에 대한 것, 돈육(돼지고기)에 대한 것, 기타 생활 관련 화물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쌀, 벼, 보리, 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 및 기간을 정령으로 정하고 그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sup>176)</sup>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관세 및 수입항에서 도매시장까지의 통상 비용을 가산한 것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동등한 국내산품의 도매가격보다도 고가인 때
    - 흉작의 경우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돈육(돼지고기)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 및 기간을 정령으로 정하고 그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sup>177)</sup>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관세 및 수입항에서 도매시장까지의 통상 비용을 가산한 것이 일본에서 생산된 동등한 국내산품의 도매가격보다도 고가일 때
    - 정령으로 정하는 돈육의 국내도매가격이 「축산물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183호)」〈제3조 제1항 제2호〉의 안정 상위 가격을 초과하여 등귀하거나 또는 등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기타 생활 관련 화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 및 기간을 정령으로 정하고 그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sup>178)</sup>
    - 물품의 수입가격이 현저하게 등귀하거나 또는 등귀할 우려가 있는 때
    -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수입이 국내의 동종물품 등 기타 용도가 직접 충돌하는 물품의 생산에 관한 일본의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감세 및 면세의 범위는 쌀, 벼, 보리, 밀, 돈육 및 기타 생활 관련 물자 중 감면되는 물품의 종류 및 그 기간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176) 일본 관세정률법 제12조 제1항

177) 일본 관세정률법 제12조 제2항

178) 일본 관세정률법 제12조 제3항

- 국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가격요건, 긴급요건 등)이 충족되는 때에 수시로 정부가 제한적이고 탄력적으로 감면을 실시하기 위함
- 또한 쌀, 벼, 보리 및 밀에 대해서는 잠정법에 의거하고 그 잠정세율이 무세(쌀에 대해서는 일부 유세)로 되어 있음

#### 4)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및 면세

- 다음의 제조용 원료품으로 수입되어 그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 또는 면세함<sup>179)</sup>
  - 곡물사료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수수, 옥수수, 호밀, 바나나 분말, 설탕 등
  - 땅콩기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땅콩
  
-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은 조건부 감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 또는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함<sup>180)</sup>
  -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한 경우
  -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종료 및 제조 원료의 검사를 위한 수량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배합사료(配合飼料), 단체사료(単体飼料), 땅콩기름(落花生油) 제조에 사용되는 다음의 각 수입 원료품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세함<sup>181)</sup>
  - 배합사료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수, 옥수수, 호밀, 바나나분말, 설탕, 당밀(糖蜜), 카사바 또는 고구마말랭이
  - 단체사료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수, 옥수수
  - 땅콩기름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땅콩
  
- 제조공장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182)</sup>

179) 일본 관세정률법 제13조,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6조

180) 일본 관세정률법 제13조 제7항

181)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6조의 2

182)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6조의 3

- 해당 제조공장의 명칭, 위치, 구조 및 연면적
  - 해당 제조공장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하는 기간
  - 해당 제조공장에서 관세의 경감 또는 면세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원료품의 품명
  - 해당 제조공장에서 원료품을 사용하여 행하려고 하는 제조 방법 및 계획, 해당 생산에 의한 제품의 품명
  - 신청서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공장 및 그 부근의 도면을 첨부해야 하나, 세관장이 그 첨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감세 및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용 원료품의 수입신고 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제조용 원료품·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 감세 및 면세 명세서(T-1100)를 첨부하여 그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183)</sup>
-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서면에 원료품의 수입신고 시에 품명 및 수량, 제품의 품명 및 예정 수량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원료품의 보관 장소 및 제조기간을 기재해야 함
    - 제조용 원료품의 수입신고는 제조공장의 승인을 받은 자의 명의로 해야 함
  - 제조용 원료품·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 감세 및 면세 명세서(T-1100)의 경우 원본과 보세감독부서용으로 총 2통을 제출해야 함
    - 보세감독부서용의 면세 명세서는 승인공장 관할 세관의 보세감독부서에 송부해야 함

### 5) 무조건 면세

- 무조건 면세는 협의의 무조건 면세와 재수입되는 물품의 무조건 면세로 구분할 수 있음
- 협의의 무조건 면세는 국제관례상, 사회통념상, 사회정책상 등으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부과하지 말아야하는 물품이므로 그 관세를 면제함<sup>184)</sup>
- 천황 및 내정신분인 황족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제1호)
  - 외유 외국원수 등의 물품(제2호)
  - 훈장, 상패 등(제3호)

183)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관세법 기본통달 13-11

184)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

-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기증물품 등(제3호의 2)
  - 박람회 등의 카탈로그류(제3호의 3)
  - 기록문서 기타 서류(제4호)
  - 국가의 전매품(제5호)
  - 주문을 받기 위한 견본(제6호)
  - 품질을 표시하는 라벨(제6호의 2)
  - 휴대품(제7호)
  - 이사물품(제8호)
  - 신체장애자용 기구 등(제16호)
  - 뉴스·영화용 필름(촬영된 것) 및 뉴스용 테이프(녹화된 것) 등(제17호)
  -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만엔 이하의 소액물품(제18호)
- 재수입물품의 무조건 면세는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됨
- 재외공관에서 송부한 공용물품(제9호)
  - 재수입물품(제10호)
  - 일본에서 수출된 컨테이너(제11호)
  - 조난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제부품 또는 의장품(제13호)
  -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에 의해 반송된 물품(제14호)
- 무조건 면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 해당 수입신고서에 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sup>185)</sup>

## 6) 재수입 감세

-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물품이 반송되거나 혹은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의 경감, 면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수출된 후 그 정상대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함<sup>186)</sup>
-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에 규정된 보세작업의 이유로 부과되지 않은 세액이란 재수입된

185)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3조

186)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의 2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장치 또는 보세작업에의 사용승인 시의 성질 및 수량에 의거 산출된 관세액을 말함<sup>187)</sup>

- 감세액은 수입물품의 관세액이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 또는 수출로 인해 경감, 면제, 환급 또는 공제된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 재수입된 물품이 손모 등의 이유에 의해 가치가 감소되어 그 본래의 관세액이 부과되어야 할 관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함<sup>188)</sup>
- 재수입 감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수출(반송)허가서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 또는 경감, 면세, 환급 또는 공제받은 관세액에 대한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189)</sup>
  - 보세작업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한 증명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을 제조한 보세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받을 수 있음
  - 이미 경감, 면제, 환급 또는 공제받은 관세액에 대한 증명서는 수입되는 물품의 수출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 증명받을 수 있음

## 7)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세 및 면세

-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음
  - 일본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어획된 수산물 및 일본에서 출어한 일본 선박 내에서 해당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제조하여 얻은 제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함<sup>190)</sup>
  - 일본 선박 내에서 외국 선박이 채포한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제조하여 얻은 제품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sup>191)</sup>

187)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의2-1-(1)

188)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의2-1-(4)

189)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의 5

190)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의 3 제1항



- 정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해당 가공 또는 제조 이전의 수산물의 성질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임<sup>192)</sup>

- 감세 및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193)</sup>
  - 수산물가공제품에 대한 승인신청서(T-1190) 2통(원본, 승인서용)
    - 승인서용에는 승인 인(C-5006)을 날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함
  - 수산물가공제품감세명세(T-1200)
  -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면세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또는 제조)증명서
  - 일본의 재외공관 또는 현지 외국의 관공서 혹은 상업회의소에 의해 발급된 당해 가공 또는 제조에 대한 증명서
- 감세액은 수입제품의 관세액에서 그 원료가 된 수산물(가공·제조에 당해 수산물 이외의 외국물품이 사용된 때에는 당해 외국물품을 포함)이 가공·제조 전의 성질 및 수량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sup>194)</sup>

## 8) 특정용도 면세

- 특정용도 면세는 무역 및 국내산업의 조장, 국제관행의 존중, 학술 진흥, 문화정책 및 사회복지의 고려, 기타 각 방면에서의 국가정책상의 목적을 두고 있음
- 다음의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관세를 면제함<sup>195)</sup>
  - 표본, 참고품, 연구용품 등(제1호)
  - 학술연구 또는 교육을 위한 기증물품(제2호)
  - 자선, 구휼을 위한 기증물품(제3호)
  - 국제친선을 위한 기증물품(제3호의2 )

191)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의 3 제2항

192)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의 7 제1항

193)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의 6

194)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의 7 제2항

195) 일본 관세정률법 제15조

- 의식용 또는 예배용의 기증물품(제4호)
  - 일본적십자사에 기증된 의료기기(제5호)
  - 박람회 등의 사용물품 등(제5호의 2)
  - 항공기의 발착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제8호)
  - 이사 시의 자동차 등(제9호)
  - 조약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제10호)
- 특정용도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 용도 외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196)</sup>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및 면제받은 관세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 허가와의 관련되는 세관, 그 허가 일자 및 수입 허가서의 번호
  - 당해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은 용도 및 사용 장소
  - 양도하고자 하는 이유
  - 양도 후 당해 물품의 사용 목적, 방법 및 장소
- 특정용도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이 허가된 물품이 그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가 즉시 징수됨<sup>197)</sup>
- 징수되는 관세액은 수입 시에 면제된 금액이지만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 물품의 변질, 손상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신청에 기초하여 그 관세가 경감됨<sup>198)</sup>

## 9)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일본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공용품 또는 외국의 대사, 공사, 영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직원이 수입하는 자용품(自用品)에 대해서는 상호조건에 따라 관세가 면제됨<sup>199)</sup>

---

196)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5항

197) 일본 관세정률법 제15조 제2항

198) 일본 관세정률법 제10조 제1항

- 면세절차는 국제관행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 등의 서류심사만하고 개장검사는 생략함
  - 수입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간이통관사무처리 방식의 면세도 인정되어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에 면세를 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sup>200)</sup>
  
-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본에서 파견된 외교사절에 대하여 면세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동일한 대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조건에 따름<sup>201)</sup>
  - 일본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 일본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가족의 용품으로 해당되는 사절이 수입하는 것
  - 일본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물품으로 오로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본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自用品)으로 당해 직원이 수입하는 것
  
- 한편,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중 그 수입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함<sup>202)</sup>
  - 외교관용 물품에 대한 면세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면세이지만 자동차,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그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 해제 조건부 면세로 되어 있음<sup>203)</sup>

## 10) 재수출 면세

- 수입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sup>204)</sup>

199) 일본 관세정률법 제16조 제1항

200)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27조의 2

201)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p. 118

202) 일본 관세정률법 제16조 제2항

203)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p. 117

204) 일본 관세정률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재수출 면세는 일반적 해제 조건부 면세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거나 면세허가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가 즉시 징수됨
- 재수출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205)</sup>
  - 가공되는 물품 또는 가공재료가 되는 물품(제1호)
  - 수입물품의 용기(제2호)
  - 수출물품의 용기(제3호)
  - 수선되는 물품(제4호)
  - 학술연구용품(제5호)
  - 시험용 물품(제6호)
  - 수출입물품의 시험기기(제6호의 2)
  - 주문을 받기 위한 견본 또는 제작을 위한 견본 등(제7호)
  - 국제적인 운동경기 및 국제회의 등에서의 사용물품(제7호의 2)
  - 순회홍행용 물품 및 영화촬영기계 등(제8호)
  - 박람회, 전람회, 공진회, 품평회 등에의 출품물품(제9호)
  - 일시입국자가 휴대 또는 별송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등(제10호)
- 재수출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① 수입 시의 절차 ② 수출 시의 절차 ③ 수출 신고 시의 절차를 따라야 함<sup>206)</sup>
  - 수입신고 시에는 재수출물품감면세명세서(T-1340)를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고<sup>207)</sup>,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수입목적 및 수출예정지를 추가 기입하고 가공의 종류 및 가공자의 주소, 성명(명칭)을 기재해야 함<sup>208)</sup>
  - 재수출 면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을 수출신고 시에는 그 물품의 수입허가서(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수출지 세관에 제출하고, 그 수출물품이 수입 가공된 것인 때에는 가공한 자가 작성한 가공증명서(T-1380)를 함께 제출해야 함<sup>209)</sup>
  - 재수출 면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을 기간 내에 수출한 때에는 재수출감면세물품수출신고서(T-1385)에 교부받은 수입허가서(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210)</sup>

205)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33조의 3

206)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 II』, 2012, pp. 124~125

207)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34조

208)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36조

209)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한편,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협약(ATA협약)에 따른 통관증서(ATA 까르네<sup>211)</sup>)를 사용하여 간편한 통관을 할 수 있음
  - ATA 까르네는 ‘일본상사중재협회’에서 발급함

### 11) 재수출 감세

- 일반적으로 대차계약 또는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입되는 화물로서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특정 물품은 5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sup>212)</sup>
- 재수출 감세의 적용을 받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그 물품을 소정의 기간 내에 수출한 때에는 재수출 면세의 규정에 준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재수출 감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허가 후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감된 관세를 징수함
  - 다만, 경감받은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망실된 경우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멸각된 경우에는 관세는 징수되지 아니함
  - 감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정령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정령에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없음<sup>213)</sup>

### 12)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및 면세

-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품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경감,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 당해 물품의 수출이 당해 원료품의 수입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수출되는 것을 요건으로 함<sup>214)</sup>
  -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은 원료품의 용도외사용 또는 용도외사용을 위한

210)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211) 아타(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 시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

212) 일본 관세정률법 제18조 제1항

213)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1조

214)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

양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한편 벌칙이 적용됨(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sup>215)</sup>

-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은 면세대상이 되는 수입원료품<sup>216)</sup>과 감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원료품<sup>217)</sup>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제조공장의 승인을 받은 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제조용 원료품·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 세금 감면명세서 (T-1100)를 수입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218)</sup>
  - 관세의 감면을 받은 원료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기간 내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 신고 시에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의 수입허가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교부된 제품 검사서를 첨부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수출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은 상기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그 수입허가서에 수출 완료의 취지를 기입하여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함<sup>219)</sup>

〈표 2-V-2〉 감면 대상이 되는 수출물품의 수입원료품

수출물품	수입원료품(면세)
1. 납 및 안티몬을 사용한 합금제품	납의(합금을 제외함) 괴
2. 어패류 통조림, 병조림 또는 단지조림	면실유(목화씨기름)
3. 글루타민산소다	공기름 찌꺼기, 마니오카전분, 사고전분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전분) 또는 감자전분
4. 정제설탕, 얼음사탕 또는 각설탕	설탕
5. 전분 캐러멜 또는 설탕 캐러멜	마니오카전분, 사고전분 또는 설탕
6. 리신	당밀
7. 정제 포도당	마니오카전분, 사고전분 또는 감자전분
8. 기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

215)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 II』, 2012, p. 127

216)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17)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218)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9조

219)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표 2-V-2〉의 계속

수출물품	수입원료품(감세)	관세율
1. 글루타민산소다	밀가루	12.5%
2. 비타민C 및 그 유도체(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 이상의 제제를 포함. 제48조에서 “비타민C 등”	마니오카전분, 사고전분 또는 감자전분	2.5%
3. 결정(結晶) 포도당	마니오카전분, 사고전분 또는 감자전분	2.5%
4. 에리소루빈산 및 그 유도체(제48조에서 “에리소루빈산 등” 이라함) 또는 소르비톨	마니오카전분, 사고전분 또는 감자전분	2.5%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내지 제2항

### 13)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 과세완료원료품 또는 국산원료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때에는 그 수출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되는 동종의 외국원료품의 관세를 면제함<sup>220)</sup>
- 이러한 대체면세가 적용되는 외국원료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내국원료품의 수량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수량한도 내의 수량임
  - 다만, 제조공정에서 다른 물품이 동시에 제조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에 의해 그 작업에 사용한 내국원료품의 수량을 산출함<sup>221)</sup>
-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확인 등의 절차 ②제품 수출 완료의 확인 절차 ③ 대체면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sup>222)</sup>
  - 대체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국원료품에 의한 제품에 관한 확인신청서(T-1580)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세관장은 상기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경우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수출완료의 취지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체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에 내국원료품에 의한 제품의 수출에 관련된 관세면세명세서에 상기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220)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의2

221)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 5

222)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 2

〈표 2-V-3〉 관세정률법상 감면제도

제도명	근거 조항	제도의 취지 및 개요
변질·손상 등 경우의 감세	제10조	수입신고 후 허가 전 또는 수입허가 후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에 변질·손상에 의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화물에 대해, 정상적인 화물과 동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변질·손상 부분에 상당하는 관세액에 대해 경감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된 화물 의 감세	제11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일본에서 수출되어 1년 이내에 수입되는 화물(가공을 위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가공이 일본에서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수출시의 성질·형상에 의해 수입된 경우의 관세 상당분을 경감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	제12조	식료품, 의료품 등 생활 관련 물자의 가격 상승을 막아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되는 생활 관련 물자의 수입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 관세를 감면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	제13조	특정 제품(배합사료 등)을 제조하는 국내산업의 육성 또는 국민 생활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그 원료품(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
무조건 면세	제14조	왕실용품, 외국원수 등의 물품, 국가의 전매품, 재수입품(다음 항의 재수입감세대상물품을 제외)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
재수입 감세	제14조의 2	일본에서 수출된 후 성질 및 형상에 변경이 없이 재수입되는 화물 가운데, 보세 작업에 의한 제품 또는 이전에 감면·환급을 받은 제품으로 보세 작업으로 부과되지 않았던 가액 또는 감면·환급세액이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과세의 형평상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경감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	제14조의 3	어업 장려 및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 일본 선박에 의해 외국에서 채포 혹은 가공된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감면
특정용도 면세	제15조	학술 진흥 등의 차원에서 특정의 용도에 공하는 특정 화물(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해 조건부로 관세를 면제
외교관용 화물 등 의 면세	제16조	국제관행, 국제법상의 의무에 근거해 대사관 등의 공용품, 외교관 등의 자용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재수출 면세	제17조	가공무역의 진흥, 문화학술 수준의 향상 등 차원에서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나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입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
재수출 감세	제18조	장기의 내용연수를 갖는, 통상의 수입 형태가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해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 재수출되는 기계 등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된 가치를 제외한 재수출분에 상당하는 관세를 경감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	제19조	해외에서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수출 화물의 제조에 사용된 특정의 원료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 한 경우의 면세	제19조의 2	보세공장에서 제품의 제조 시 부득이한 이유로 종래 사용하던 외국 원료품과 동종의 내국원료품을 사용한 경우에 사용한 내국원료품과 동종의 수입 원료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제10조 내지 19조의 2



## 나. 관세잠정조치법상 감면제도

- 관세잠정조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감면제도는 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감세로 구분할 수 있음
- 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일본에서 제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서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함<sup>223)</sup>
  - 항공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및 이들의 제작에 사용하는 소재
  - 인공위성,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등 발사 및 추적에 사용하는 장비 및 기타 우주 개발용으로 제공하는 물품
-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은 다음의 제품 중 그 수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경감함<sup>224)</sup>
  - 관세정률법 [별표 제4202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외면이 가죽제, 폼포지션레더제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과 [별표 제4203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야구용의 글로브와 미트 이외의 것
  - 관세정률법 [별표] 제57류 및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제품
  - 관세정률법 [별표] 제6406.10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갑피

## 다. 감면 사전교시제도

### 1) 사전교시의 개요 및 종류

- 물품 수입예정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에 미리 세관에 당해 물품의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감면 사전교시제도를 두고 있음
  - 사전교시 답변서의 내용은 답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최장 3년) 내에는 수입(납세) 신고심사 시에 적용됨(법률 개정 등에 의해 취급이 변경된 경우 제외)

223)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제4조

224)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

- 사전에 수입 예정화물에 대한 세금의 감면 적용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수입통관 시 세관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
- 서면을 통한 사전교시 조회가 원칙이며, 구두(전화 및 세관 창구에서 조회) 및 이메일을 통한 사전교시 조회도 가능함
  - 세관은 구두 및 이메일을 통한 방법보다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면 질의를 권장하고 있음
- 다만, 서면에 의한 질의와 구두 및 이메일을 통한 질의는 ① 수입(납세)신고 심사 시 ② 세관의 답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의 취급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
  - 수입(납세)신고 심사 시 서면에 의한 회신은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구두 및 이메일에 의한 회신은 적용되지 않음
  - 세관의 답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질의는 의견 신청이 가능하나, 구두 및 이메일을 통한 질의는 의견 신청이 불가능함
- 한편, 이메일을 통한 사전교시 조회 중 다음의 특정 조건 충족 시에는 서면 질의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할 수 있음<sup>225)</sup>
  - 전환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로 서면 질의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하는 취지의 통지(세금감면 답변용)(C-1000-26)를 송부함
  - 전환 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서면을 통한 사전교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답변내용은 해당 답변서가 발표된 후 3년간 수입신고 심사 시에 적용됨(법률 개정 등에 의해 취급이 바뀐 경우를 제외함)
  - 전환된 이메일 사전교시의 조회 및 답변 내용은 세관 홈페이지(사전교시 답변(세금감면) 사례 목록)<sup>226)</sup>에서 공개됨
    - 조회자 이름이나 거래 관계자 이름은 원칙적으로 익명화됨
    - 단, 공개에 의해 조회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22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e-jizen\\_genmenzei.htm](http://www.customs.go.jp/zeikan/seido/e-jizen_genmenzei.htm), (검색일자: 2016. 10. 10.)

22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genmenzei/kaitoujirei.htm>, (검색일자: 2016. 10. 10.)

〈표 2-V-4〉 세관 사전교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세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도쿄 세관	tyo-gyomu-genmen@customs.go.jp	03-3599-6338
요코하마 세관	yok-gyomutuso@customs.go.jp	045-212-6153
고베 세관	kobe-tsuso@customs.go.jp	078-333-3155
오사카 세관	osaka-genmen-hourei@customs.go.jp	06-6576-3316
나고야 세관	nagoya-gyomu-tsuso2@customs.go.jp	052-654-4114
모지 세관	moji-gyomu@customs.go.jp	050-3530-8401
나가사키 세관	nagasaki-gyo-sokatsu@customs.go.jp	095-828-0126
하코다테 세관	hkd-shinsa@customs.go.jp	0138-40-4258
오키나와 지구 세관	oki-9a-tsuso2@customs.go.jp	098-862-9281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e-jizen\\_genmenzei.htm](http://www.customs.go.jp/zeikan/seido/e-jizen_genmenzei.htm), (검색일자: 2016. 10. 7.)

## 2) 사전교시의 절차

- 서면 사전교시 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당해 화물의 주요 수입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
  - 화물의 개요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세금 감면 조회용)(C-1000-22)
  - 견본 또는 이를 대체할 사진, 도면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 조회 요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받은 조회서 등을 검토하고 해당 수입예정화물에 대한 세금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세금 감면 답변용)를 발급함
  - 원칙적으로 조회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함
- 세관의 답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교시 회답서(변경통지서)(세금감면 답변용)에 관한 의견 신청서(C-1001-2)를 사전교시 답변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은 사전교시 답변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임

## 2 관세정률법상 환급제도

### 1) 변질·손상 등 경우의 환급

- 관세를 완납한 물품이 수입허가 후 계속하여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되어 있는 사이에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그 관세를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음<sup>227)</sup>
- 환급액은 멸실한 물품과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음<sup>228)</sup>
  - 멸실한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의 금액(부대세 제외)
  -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경우 변질 또는 손상에 의한 감세 시에 사용되는 산정 방법에 기초하여 산출된 금액(부대세 제외)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
  - 재해 등의 종료일 이후 신속하게 재해물품 신고서를 수입지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이후 환급 신청 시에는 피해화물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서(T-1040)에 재해물품확인서 및 당해 환급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 수입지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229)</sup>
    - 피해화물신고서(T-1020)를 그 재해물품의 수입지세관에 제출 시 수입지 세관은 그 확인을 재해물품확인서로 교부함
    - 환급은 재해 등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수입허가서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2)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의 환급

-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품의 경우 그 제조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 공장에서 제조될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금액은 수입원료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의 전액임<sup>230)</sup>

227) 일본 관세정률법 제10조 제2항

228)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29)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3조의 2

- 환급대상이 되는 수입원료품은 다음과 같음
  - 과실, 잼, 마말레이드, 주스, 청량음료, 유산균음료, 토마토케첩, 야채를 깡통·병·통·기타 용기에 적입한 것과 리큐르, 가당분유, 연유 등임<sup>231)</sup>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① 물품의 수출절차 ② 환급절차를 따라야 함
  - 환급대상 원료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232)</sup>
    - 수출신고서
    - 수출화물의 제조용 원료품에 의한 제조보고서(T-1460) 또는 수출화물의 제조용 원료품에 의한 화물제조보고서·화물제조증명서(T-1490)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 4분기마다 4분기 중에 수출한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품에 관련된 관세환급(감액·공제)신청서(T-1520)에 물품제조보고서 또는 물품제조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233)</sup>

### 3)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

-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서 제품의 제조 시 부득이한 이유로 본래 사용하던 외국 원료품과 동종의 내국원료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내국원료품과 동종의 수입 원료품에 대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음<sup>234)</sup>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물품을 수출물품의 원료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 대체면세 적용을 받기 곤란할 것
    - 과세원료품과 동종의 외국원료품을 6개월 이내에 수입할 예정이 없는 경우
  -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과세원료품으로 수입 시의 성질 및 형상에 변경을 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세공장 등에 반입할 것
  - 당해 관세원료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것

230)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231)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232)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3조의 2

233)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3조의 3

234)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의 2 제2항

- 환급액은 과세원료품으로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의 금액으로 함<sup>235)</sup>
  - 당해 과세원료품을 원료로 제조한 물품의 일부가 수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해 수출물품 중에 포함되게 된 부분에 따른 금액으로 함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sup>236)</sup>
  - 환급에 관계되는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시에 다음을 기재한 신청서(T-1620)에 과세 원료품의 수입허가서(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및 환부받은 제조보고서(T-1610)를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한 세관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후 환급액 결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 4) 수입 시와 동일 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의 환급

-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물품 중 수입 시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sup>237)</sup>
  - 환급금액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의 전액임<sup>238)</sup>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
  - 수입신고 시 재수출 예정시기 및 예정지, 당해 물품의 성질 및 형상, 기타 재수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재수출물품확인신청서)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함<sup>239)</sup>
  - 또한 그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재수출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그 수입 시에 물품에 기호표시 기타 재수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sup>240)</sup>
  - 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및 형상을 확인하고 당해 신청서에 확인한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환부함<sup>241)</sup>

---

235)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 7

236)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 9

237)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의 3

238)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 15

239)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 13 제1항

240)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 13 제2항

241)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 13 제3항

### 5)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한 경우의 환급

-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화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할 때 당해 물품이 수입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sup>242)</sup>
  - 위약품(품질 또는 수량 등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sup>243)</sup>
  - 개인이 통신판매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sup>244)</sup>
  - 수입 후 법령(이에 근거한 처분 포함)의 제정·개정 등에 의한 경우<sup>245)</sup>
  
- 환급액은 반송(수출)한 경우와 폐기한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음
  - 반송(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의 전액임
  -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에 의해 잔존물이 없는 때 및 폐기에 의한 잔존물이 무제품인 때에는 납부한 관세의 전액임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①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절차 ② 수출하는 경우의 절차 ③ 폐기하는 경우의 절차를 따라야 함
  - 위약품 등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때에는 위약품 등 보세구역 반입 신고서(T-1630)를 보세구역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위약품 등의 반입을 확인한 때에는 보세구역반입신고수령서로서 신고자에게 교부함<sup>246)</sup>
  - 위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 시에 위약품 등의 수출에 관련된 관세환급(감액·공제)신청서(T-1640)에 위약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입허가서 및 위약품 등 보세구역반입신고수령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247)</sup>
  - 위약품 등을 수출에 대신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멸각(폐기)승인신청서에 위약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 물품을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입허가서 및 위약품 등 보세구역반입신고수령서를 첨부하여 위약품 등을 반입한 보세구역 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248)</sup>

242) 일본 관세정률법 제20조

243) 일본 관세정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244) 일본 관세정률법 제20조 제1항 제2호

245) 일본 관세정률법 제20조 제1항 제3호

246)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2항

247)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248)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세관에서 폐기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함
- 위약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에는 위약물품 등의 폐기에 관련된 관세환급(감액·공제) 신청서(T-1660)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 교부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폐기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sup>249)</sup>

〈표 2-V-5〉 관세정률법상 환급제도

구분	근거 조항	제도의 취지 및 개요
변질, 손상 등 경우의 환급	제10조	수입신고 후 허가 전 또는 수입허가 후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에 변질·손상에 의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화물에 대해, 정상적인 화물과 동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변질·손상 부분에 상당하는 관세액에 대해 환급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의 환급	제19조	해외에서 수출화물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수출 화물의 제조에 사용된 특정의 원료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또는 환급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	제19조의2	보세공장에서 제품의 제조 시 부득이한 이유로 종래 사용하던 외국 원료품과 동종의 내국원료품을 사용한 경우에 사용한 내국원료품과 동종의 수입 원료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또는 환급
수입 시와 동일 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의 환급	제19조의3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화물이 그 수입시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수입 시 납부된 관세를 환급
위약품 등을 재수출 또는 폐기한 경우의 환급	제20조	위약품 등을 재수출·폐기한 경우 수입자는 경제적 효과를 받지 않으므로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제10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249)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 3 기타 환급제도

#### 가. 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 세관장은 관세(체납처분비 포함)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금전으로 환급해야 함<sup>250)</sup>
  -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위한 지불결정을 하는 날 또는 충당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에 연 7.3%에 상당하는 환급 가산금을 그 환급 또는 충당하여야 하는 금액에 가산함<sup>251)</sup>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오납금의 금액이 1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당해 과오납금의 금액에 1만엔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함
    - 상기 환급가산금의 금액이 1천엔 미만인 경우 환급가산금은 가산하지 않고 환급 가산금의 금액에 1백엔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함
- 한편, 관세의 과오납 또는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세 환급 또는 환급에 관한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시효를 가짐<sup>252)</sup>

#### 나. 특수 관세 환급

- 특수 관세의 환급에는 ①상계관세의 환급 ②덤핑관세의 환급이 있음
  - 지정물품의 수입자가 납부한 상계관세액이 당해 지정물품의 실제 보조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필요액에 상당하는 상계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sup>253)</sup>
  - 지정물품의 수입자가 납부한 덤핑방지관세액이 당해 지정물품의 실제 덤핑판매 차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필요액에 상당하는 덤핑방지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sup>254)</sup>

250) 일본 관세법 제13조 제1항

251) 일본 관세법 제13조 제2항

252) 일본 관세법 제14조의3 제1항

253) 일본 관세정률법 제7조 제29항

254) 일본 관세정률법 제8조 제32항

## VI. 원산지제도

### 1 원산지 규정 개요

---

- 원산지 규정은 화물의 원산지(물품의 국적)을 결정짓는 규칙으로서 관세정책 등의 적용·비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sup>255)</sup>
  -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여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에서는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EP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은 물품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규정한 원산지 기준과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원산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 일본의 원산지 규정은 크게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분류함<sup>256)</sup>
  - 특혜 원산지 규정에는 EP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규칙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를 적용하는 규칙이 있음

---

255) 일본 관세국, 「원산지규정의 개요」(原產地規則の概要), 2016, 6.

256) 일본 관세국, 「원산지규정의 개요」(原產地規則の概要), 2016, 6.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정 국가에 특혜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 이외 WTO 협정세율 적용, 덤핑관세, 보복관세 등에 사용되는 규정임
- 일본은 수입을 예정하고 있는 화물에 대해 원산지 인정 관련 법령 적용 및 해석 등에 대해 세관에 문의 및 조회하여 서면으로 답을 받을 수 있는 사전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257)</sup>
- 동 제도를 통해 사전에 EPA에 따른 세율과 GSP 적용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원산지 인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2 특혜 원산지 규정

### 가. EPA 원산지 기준

#### 1) EPA 원산지 기준

- 일본은 2016년 6월 현재 15개 EPA를 체결하고 있으며 EPA의 원산지 규정에 각 협정의 규정이 직접 적용됨
- EPA의 원산지 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협정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음<sup>258)</sup>
  - 완전 생산기준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된 물품에 대해 인정하는 것임
  - 실질적 변경기준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일본의 EPA에서 실질적 변경기준은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의 골격으로 관세 분류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sup>259)</sup>

257) 일본 관세국, 「원산지규정의 개요」(原產地規則の概要), 2016, 6.

258) 일본 관세국, 「EPA」(原產地規則), 2016, 6.

- 관세 분류 변경기준은 제품의 4단위 품번과 원재료의 품번이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 기준은 부가가치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음
- 가공공정 기준은 비원산지 상품 재료에 대해 EPA 상대국에서 특정 가공공정이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기준으로 EPA상에서는 단순 조립 등은 실질적인 변경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 등 비원산지 물품이 관세 분류 변경기준과 가공공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된 상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의 적용 유무나 인정기준은 각 EPA에 따라, 품목마다 다름

## 2) 관련 규정

- EPA의 관세율 산정은 EPA협정서의 기준을 직접 적용하여 결정하고 EPA 적용 대상 물품의 긴급 관세, 관세할당 등에 대해서는 관세잠정조치법에 따르도록 함
  - 관세법 기본통달 <제6장 5절 68-5-2><sup>260)</sup>에서 EPA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협정의 품목별 규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관세법 기본통달 <68-5-4>에서는 관세 분류 변경기준, 가공공정 기준, 부가가치 기준 산정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68조>, 동 시행령 <제61조>, 동 기본통달 <68-5-0> 내지 <68-5-22> 관세 잠정 조치 법 <제12조의 2>, 기본통달 <12의 2-1~12의 2-9>에서 각 협정의 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3) EPA세율 적용 통관절차

- EPA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 수출업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② 인증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 또는 ③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제품 신고서 중 하나(이하, 원산지 증명서 등)이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함

259) 일본 관세국, 「EPA」(原產地規則), 2016. 6.

260) EPA에 따른 수입통관

-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칙적으로 직접 운송원칙을 적용함
  - 단, 교통사정 등으로 제3국으로 환적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의 선하증권(B/L) 등의 제출이 필요함
-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제품 신고서 등은 화물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세관장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수입허가 이전 화물의 인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후 제출이 허용됨
- 과세가격 총액이 20만엔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4) EPA 증명

- EPA 증명과 관련하여 EPA 증명법에서 특정 원산지의 발급주체, 발급절차, 원산지 증명서류의 보관, 원산지 증명서의 변경에 따른 수정통보, 원산지 검증,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EPA에서는 수입화물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임을 세관에 증명하는 방법으로 ① 제3자 인증제도 ② 인증 수출자에 의한 증명제도 ③ 자기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수입국 세관으로 상대국가 발급 기관에 검증(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상대국을 방문하여 유효성 검사에 동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든 EPA마다 명시되어 있음
- 제3자 인증제도는 수출자가 수출국 발급기관(또는 그 지정기관)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한 후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수입자가 수입 세관에 그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일본의 모든 EPA에 사용되고 있음
- 인증 수출자에 의한 증명제도는 수출국 발급 기관이 인증한 수출자가 송장 등 상업 서류에 특정 원산지 신고문을 기재한 후 수입자가 수입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원산지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도임<sup>261)</sup>

- 일본의 EPA 중, 스위스, 페루, 멕시코와의 EPA에서 제삼자 증명제도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 자기신고제도는 화물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스스로가 해당 화물이 협정상의 원산지 상품임을 명기한 문서(원산지 상품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하는 제도임<sup>262)</sup>
  - 호주와의 EPA에서 제삼자 증명제도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신고제도 하에서 일본에서의 수입신고 시에는 원산지 상품 신고서 외에도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상대국에서도 필요에 따라 원산지 상품 신고서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제1종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제품서약서 등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 증명하는 제2종 원산지 증명서는 인증수출자만이 발급할 수 있음
- 원산지 증명서서 또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였거나, 원산지 증명서의 변경사항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EPA 증명법에 따라 30만엔 이하의 벌금 및 징역 등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기타 특혜 적용을 목적으로 특정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sup>263)</sup>

## 5) 원산지 사후 확인

- 원산지 사후 확인은 특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 각 EPA와 관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통관이 이루어진 후 화물이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특혜관세의 적정성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261)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approved.html](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approved.html), (검색일자: 2016. 7. 21.)

26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roo/procedure/riyou.pdf>, (검색일자: 2016. 7. 22.)

263) 정재호·김미영·홍현표,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 p. 39

- 수입자에 대한 사후 확인은 서면으로 정보제공 요청 또는 수입자의 사업장 등을 개별적으로 방문 조사하여 실시되며 수입신고된 화물이 원산지 상품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화물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또는 현지 방문에 의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화물이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을 시 특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며 사안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대상이 됨

## 나.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기준<sup>264)</sup>

### 1)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이하 GSP) 원산지 기준 및 관련 규정<sup>265)</sup>

- GSP는 개발도상국(특혜 수혜 국가)을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일반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특혜 세율)을 적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임
- GSP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및 적용 국가, 지역, 품목, 관세율 등을 관세잠정 조치법,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음<sup>266)</sup>
  -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1조> 및 관세잠정조치법 기본통달 <8의 2-1> 내지 <8의 2-17>에서 특혜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에서 적용품목을, 동법 <제8조의 2 제2항> 및 관세잠정 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등에서 특혜 적용 제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특혜 수혜국가 및 지역<sup>267)</sup>에 대해서는 잠정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국가와 지역 및 특혜배제물품<sup>268)</sup>은 관세잠정조치법령 <제25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264) 일본 관세국, 「일반특혜관세설명서」(一般特惠関税マニュアル), 2016

26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1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266) 일본 관세국, 「일반특혜관세설명서」(一般特惠関税マニュアル), 2016

26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4_jr.htm), (검색일자: 2016. 7. 15.)

26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 (검색일자: 2016. 10. 22.)

- 기타 소액 화물에 관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취급은 잠정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GSP의 원산지 기준은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경기준을 적용함<sup>269)</sup>
  - 완전 생산기준은 수입화물이 하나의 특혜 수혜국가 등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잠정규칙 제8호에 따르고 있음
  - GSP의 완전 생산기준은(원산지 증명서 제8란(원산지 기준)에 ‘P’로 기입되어 있음) 관세잠정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를 따르고 있음
  - 실질적 변경기준은 수입화물이 당해 특혜 수혜국가 등의 완전 생산품이 아니더라도 물품의 원료 또는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공 생산된 물품) 해당 특혜 수혜국가 등의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실질적 변경기준(원산지 증명서 제8란(원산지 기준)에 ‘W’와 4단위 품번이 기입되어 있음)은 완제품의 4단위 품번과 원재료의 품번이 다른 것을 의미함
  - 특혜 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운송 및 저장을 위한 조작, 단순한 절단, 선별, 포장, 개조, 구분, 라벨 부착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실질적 변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
    -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가공 또는 제조 예는 잠정규칙 〈제9조〉 및 동법 별표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후발 개발도상국(LDC)에는 대체로 모든 품목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특별특혜관세라고 함
- 특혜관세 및 특별특혜관세 적용으로 일본 국내의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령으로 해당 품목의 특혜관세 또는 특별특혜관세 적용을 정지하며 이를 ‘Escape Close’라 함
-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한 특혜 수혜국가 또는 지역과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는 특혜 수혜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되며 특혜관세 적용의 전면줄업, 부분줄업, 국가별 및 품목별 특혜의 적용 예외로 구분할 수 있음<sup>270)</sup>

269) 일본 관세국, 「일반특혜관세설명서 一般特恵関税マニュアル」, 2016



-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특혜 수혜국가 중 아래와 같은 기준에 적합할 시 특혜 조치가 부분적으로 배제됨<sup>271)</sup>
  - 해당 연도의 첫날을 포함한 전년도에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통계(이하 세계은행 통계라 한다)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또는 지역
  - 해당 연도의 전전년도의 무역통계(예를 들어, 2011년도의 경우 2009년도 무역 통계)에서 ‘고소득 국가’(또는 지역)의 원산지 제품의 수입액이 10억엔을 초과하고 그 품목의 총수입액의 25%를 초과하는 품목
  
-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특혜 수혜국가 중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특혜 조치가 전면 배제됨
  - 일본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중 해당 연도의 전년도까지의 3년간의 세계은행 통계에서 연속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국가(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전면 배제 대상이 된 국가(또는 지역)가 3년간 세계은행 통계에서 연속하여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그 해의 다음해부터 그 국가(또는 지역)에 다시 특혜 수혜가 적용됨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수혜국의 원산품은 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sup>272)</sup>
  - 해당 연도의 전전년도까지 3년간의 무역통계에서 있는 국가(또는 지역)의 원산지 제품의 수입액 평균이 15억엔을 초과하고 그 품목의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품목
  -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서 총특혜 적용 수입액의 25%를 초과하는 품목 또는 EPA 체결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는 국가(또는 지역)제품
  - 수산 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지역 어업관리기관에서 보존 관리 조치에 위반되는 국가(또는 지역)에서의 대상 어종에 대한 환경·자원 보호의 관점에서 특혜 공여를 할 적절하지 않은 품목

27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 (검색일자: 2016. 7. 15.)

27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 (검색일자: 2016. 7. 15.)

27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 (검색일자: 2016. 7. 15.)

- 특혜관세 적용 대상은 농수산물과 광공업산품으로 나뉘어 있으며 농수산품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광공업산품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각 품목마다 특혜 세율이 설정되어 있음<sup>273)</sup>
  - 무세가 적용되는 주 품목은 지제품, 도자기 제품, 철강제품 등임
- 특혜관세 적용 대상은 농수산품의 경우(제1류 내지 제24류) 잠정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광공업 산품(제25류 내지 제76류, 제78류 내지 제97류 까지) 잠정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2) GSP 원산지 증명 및 절차<sup>274)</sup>

- GSP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혜 수혜국이 발급한 GSP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출 시에는 원산지의 세관 또는 권한을 가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적용 원산지 증명서(GSP Form A)를 제출해야 함
-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잠정령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증명은 물품의 '수출 시'에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사후 발급도 유효함
-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세관이 발급한 것을 인정함
  - 단, 원산지에서 세관이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 권한을 가지는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일본의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발급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함
- 직접운송 원칙을 따르지만 교통 사정 등의 이유로 제3국으로 환적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B/L 등이 요구됨

---

27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6_jr.htm), (검색일자: 2016. 7. 15.)

274)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1조, 관세잠정조치법 기본통달 8의2-1 내지 8의2-17

-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신고 시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 허가 전에 인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후 제출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신고 과세가격의 총액이 20만엔 이하의 물품과 물품의 종류 또는 형태에 따라 그 원산지가 분명하다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목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sup>275)</sup>
- 특혜원산지 증명서 생략가능 대상 물품 중 자국 관여품 및 누적 가공품과 원산지 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국 관여품
  -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30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은 누적 가공품
  -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제3국 경유 수입품

### 3 비특혜 원산지 규정

#### 가.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관련 규정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무역정책 혹은 조치 시행을 위해 원산지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으로 WTO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경기준을 적용하며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6>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으로 함
  - 실질 변경기준은 가공 또는 제조에 의해 생산되어 실질적인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재무성령으로 정하고 있음
  - 실질적인 변경은 제조물품의 해당 세번(4자리 품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수송과 저장을 위한 조작 단순한 절단, 선별, 포장, 개조, 구분, 라벨 부착 등이 행위는 제외함

27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5\\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505_jr.htm), (검색일자: 2016. 7. 29.)

## 나. 비특혜 원산지 증명 및 절차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청구서 등의 통관 서류로 원산지의 확인은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음
- 비특혜 원산지 관련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물품의 수입 불허가는 관세법에서, 수출입거래법에서 허위표시 수출 규제를, 외국환관리법에서 오인표시 수출규제, 상공회의소법에서 수출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sup>276)</sup>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WTO 협정세율 적용, 덤핑관세의 적용, 보복관세의 적용,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을 위해 적용되며 각 목적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 정률법, 관세법 기본통달 등을 준용함
  - WTO 협정세율 적용에 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에서 편익 관세의 적용은 관세 정률법 기본통달 <5-1> 및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에 따라 결정됨
  - 덤핑관세의 적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해 이산화망간에 부과 덤핑관세에 관한 정령을 따르도록 함
  - 보복관세의 적용은 일반 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베어링 등에 대하여 부과 보복관세에 관한 정령을 따르며 원산지 표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 및 관세법 기본통달 <71-3-1>을 준용함
  - 무역통계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 무역 등에 관한 통계 기본통달 <7-2>을 준용함
- 일본에서는 WTO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에 대한 양허표는 있지만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적용한다거나 하는 개별 품목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수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수출입거래법 <제2조> 및 수출무역 관리령 <제2조>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

---

276) 정재호 외 2인(2015), p. 33

## 4 원산지 사전교시제도

### 가. 원산지 사전교시

- 원산지 사전심사는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사전심사 신청은 구두(전화 및 세관 창구)나 이메일로 가능함
  - 다만, 서면신청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문서에 의한 신청과 취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음
- 원산지 사전교시제도를 통해 수입 예정화물의 원산지 취급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원가계산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판매 계획 등을 수립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sup>277)</sup>
  - 또한 화물의 수입 통관 시 이미 취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조기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음
- 세관이 발표한 응답문서의 내용은 발표 후 최장 3년간 수입신고 심사 시에 적용됨 (법률 개정 등에 의해 취급 변경된 경우 등은 제외함)

### 나. 원산지 사전교시 신청 절차 및 이메일 신청절차

- 원산지 사전교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품목번호, 가공내용 및 제조방법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신청서(원산지 신청용, C-1000-2) 1부와 원자재 내역서, 제조공정도,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278)</sup>
  -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

27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h>, (검색일자: 2016. 8. 2.)

27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kisaizirei.pdf>, (검색일자: 2016. 8. 5.)

- 사전교시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의 정보를 기초로 검토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교시 회답서(원산지 답변용, C-1000-3)를 발급해야 함<sup>279)</sup>
  
- 서면 사전교시와 서면질의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된 이메일 사전교시 신청 및 답변의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함
  - 다만, 신청자 성명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공개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이메일로 신청 시 신청자 및 그 이해 관계자가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이 불복신청 또는 소송 중이거나 원산지에 관한 분쟁중일 경우 특정한 외의 신청은 불가능함<sup>280)</sup>
  - 수입신고 중인 물품에 관한 조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이해 관계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을 제외한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가공하지 않은 화물로 견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원산지 대해 사전 서면교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며, 인터넷 사전교시 조회서(C-1000-16)에 날인 또는 서명 이미지를 첨부하였다면 서면질의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서면 질의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 한 후 30일 이내에 세관은 회답서를 발송해야 하며 전환한 사전교시의 답변서는 우편 또는 세관 관서에서 수취할 수 있음<sup>281)</sup>
  - 인터넷을 통한 조회를 서면 질의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할 수 없을 시 세관은 이메일 사전 조회 회답서 겸용 서식(C-1000-18)을 사용하여 통지함

---

279)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kisaizirei.pdf>, (검색일자: 2016. 8. 5.)

28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kisaizirei.pdf>, (검색일자: 2016. 8. 5.)

28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kisaizirei.pdf>, (검색일자: 2016. 8. 5.)

〈표 2-VI-1〉 일본의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 항목

등록번호	사전교시 회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사전교시 답변을 한 세관
처리일자	사전교시 회답서의 작성절차 종료일
일반 품명	심사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세번	심사대상 물품의 세번(4자리, 6자리 또는 9자리로 구성)
화물의 개요	사전교시에서 심사대상 물품의 개요 (제조에 사용된 재료나 제조공정, 가공이 행해진 국가 등)
종별	GSP와 EPA 특혜세율 등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 등
답변	종별에 근거한 답변
원산지 인증 이유	원산지 인정 이유
근거 법령	해당 사전교시 관련 법령의 근거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kaitoujirei.html>, 검색일자 2016. 8. 5.

#### 다. 사전교시서의 효력 및 이의제기

- 세관이 발급한 답변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후 최대 3년간 수입신고 심사에 반영됨
- 이메일로 신청한 사전교시가 서면 질의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서면 질의와 마찬가지로 답변서의 내용은 최대 3년간 수입신고 심사에 반영됨<sup>282)</sup>
  - 단, 신청 내용과 현품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해 취급이 변경된 경우, 답변 내용이 법령 등의 적용을 잘못된 경우 회답서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구두나 이메일로 사전교시를 신청한 경우, 사전서면교시 신청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시에 지속적으로 회답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28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e-jizen\\_origin.htm](http://www.customs.go.jp/zeikan/seido/e-jizen_origin.htm), (검색일자: 2016. 11. 14.)

- 받은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전교시 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회답서(C-1000) 1부를 작성하여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283)</sup>

## 5 원산지 표시

### 가. 관세법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화물이 실제로 생산·제조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원산지에 대해 속인 표시 또는 오인을 야기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외국화물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세관은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 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정, 삭제 또는 반송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은 허위 표시, 오인을 야기하는 표시가 수입화물 자체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화물의 용기, 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표시되는 경우임

#### 1) 허위 표시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것으로 잘못 표기하는 것을 말함<sup>284)</sup>
  - 예를 들어 ‘Made in ○○’, ‘Produced in ○○’, ‘Fabricated in ○○’처럼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화물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말함
  - 수입화물의 부분품, 용기, 포장, 라벨 등의 경우 및 해당 부분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물품, 당해 용기에 담겨진 물품, 당해 포장에 의해 포장되는 물품, 해당 라벨이 되는 물품 등의 원산지가 당해 수입물품에 표시되고 그 원산지가 수입화물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 수입 화물의 수입자(위탁자 포함)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여 용도가 확인되면 허위표시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28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e-jizen\\_origin.htm](http://www.customs.go.jp/zeikan/seido/e-jizen_origin.htm), (검색일자: 2016. 11. 14.)

28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15.)



## 2) 오인을 야기하는 표시

- 원산지의 오인을 야기하는 표시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및 객관적으로 원산지 혼동을 야기 하는 경우를 말함<sup>285)</sup>
- 원산지 이외의 국가, 지역 및 도시 등의 명칭이 잘못 표기된 다음의 경우 원산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음
  - 단순히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을 일부로 사용한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 화물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이 ‘Imported from ○○’, ‘Licensed by ○○’ 처럼 수출 국가를 나타내는 어휘 등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되는 어휘와 함께 표시된 경우 등
  - 화물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이 화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로 표시된 경우(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이 ‘Yarn’, ‘Material’, ‘Fabric’ 등의 문구 다음에 ‘Made in ○○’과 같이 표시되는 경우)
- 물품의 회사명, 상표 기타 도안 등이 잘못 표기된 다음의 경우 원산지 혼동을 야기하게 됨<sup>286)</sup>
  - 화물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국기 또는 그 도안이나 그런 국기 또는 그 도안을 이용한 상표 기타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화물의 원산지에 소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의 상호 또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원산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상표 또는 기타 도안이 표시된 경우
  - 수입화물의 원산지 이외의 특정 국가 등의 특산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화물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
- 원산지 이외의 국가 등의 표시가 화물의 유행이나 품질, 성능 등을 표현하는 같은 어휘와 병기되어 있을 시 해당 어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음<sup>287)</sup>
  - 예를 들어 ‘Fashion in ○○’, ‘Mode in ○○’, ‘○Style’, ‘○Patent NO’와 같이

28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15.)

28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15.)

28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15.)

표시되는 경우는 제외함

-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저명한 풍경 등이 표시되거나 그 나라의 문자를 사용한 설명 또는 광고문구가 표시되었을 시 해당 표시를 보고 명백하게 국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한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음<sup>288)</sup>
- ‘JIS 마크’, ‘JAS’마크,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근거하여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 또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따른 품질, 규격 등에 관한 표시(예를 들어, ‘ST마크’(일본 완구 협회 완구 안전마크)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원산지 오인표시에서 제외됨

## 나. 부당 경품·표시 방지법

### 1) 개요<sup>289)</sup>

- 부당 경품·부당표시 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이하 경표법)은 상품 및 무역 거래 시 부당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 시행령, 시행규칙은 없으며, 품목별 또는 분야별 부당표시 등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규약이 있음
  -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일본 수입자가 공정경쟁규약에 가입되어 있을 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협회의 제재를 받음
- 상품의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오인표시 및 원산지를 허위표기 및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sup>290)</sup> 소비자청 또는 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반 행위 방지 조치<sup>291)</sup>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8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15.)

289)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p. 156~163 및 이상엽 외 2인(2014), 9, p. 113

290) 부당 경품·부당표시 방지법 제4조

291) 부당 경품·부당표시 방지법 제6조

- 또한 위의 사항을 위반했을 시 오인요소를 제거, 재발 방지 조치, 위반행위의 취소 등의 조치를 비롯하여 소비자청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보고의무 위반, 허위보고 등을 한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92)</sup>

## 2) 규제대상

- 식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에 따라 일반적인 식품, 주류, 신변용품, 가정용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기계, 스포츠용품, 악기 등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이 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오인표시는 상품의 품질 규격이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하는 수량 오인표시와 상품의 가격 등 거래조건이 거래상대방에 실제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유리 오인표시가 있음
- 또한 상품·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리대신이 지정하는 표시 또한 규제대상임<sup>293)</sup>
  -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표시는 청량음료수, 상품의 원산국, 소비자 신용의 용자 비용, 부동산 광고, 물품 광고에 대한 부당 표시 등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상품·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함
- 이 법에서 규제하는 원산국 부당표시는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서 부당표시로 상품이 그 원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및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서 부당표시로 그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함<sup>294)</sup>

292) 일본 부당 경품·표시 방지법 전문(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http://law.e-gov.go.jp/htmldata/S37/S37HO134.html>, (검색일자: 2016. 8. 22.)

293) 일본 부당 경품·표시 방지법 전문(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http://law.e-gov.go.jp/htmldata/S37/S37HO134.html>, (검색일자: 2016. 8. 22.)

294) 일본 부당 경품·표시 방지법 전문(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http://law.e-gov.go.jp/htmldata/S37/S37HO134.html>, (검색일자: 2016. 8. 22.)

- 여기서 원산국이란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가 행해진 국가로서 상품의 원산지가 일반적으로 국가명보다 지명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를 원산국으로 간주하여 적용하도록 함

## VII. 보세제도

### 1 보세제도 개요

- 보세지역은 무역 진흥 및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화물을 보세상태로 세관의 규제하에 둬으로써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관세 등의 징수를 하는 지역을 말함
- 관세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보세지역은 지정보세지역,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및 종합보세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Ⅶ-1〉 일본의 보세제도

근거 조항	종류	주요기능	장치기간	설립요건
제37조	지정보세지역	외국 화물의 하역, 운반, 일시 장치 등 예) 컨테이너 야드 등	1개월	재무대신 지정
제42조	보세장치장	하역, 운반 또는 장치 예) 창고 등	2년(연장 가능)	세관장의 허가
제56조	보세공장	외국 화물의 가공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혼합 포함) 예) 조선소, 제철소, 정유소 등	2년(연장 가능)	
제62조의2	보세전시장	외국 물품의 전시 또는 사용 예) 박람회, 박물관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제62조의8	종합보세지역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의 종합적인 기능 예) 국제공항 등	2년(연장 가능)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2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203_jr.htm), (검색일자: 2016. 12. 15.)

- 보세지역은 관세를 확보하고 단속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세관에서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재무대신의 지정이 필요한 지정보세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보세구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특정 화물에 대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외국화물은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화물을 반출하려 할 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난파선화물, 세관장이 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허가한 화물, 특정 우편물, 특례수출화물 등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음

## 2 보세지역의 종류

### 가. 지정보세지역

- 지정보세지역은 관세법 <제4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항만시설이나 공항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자 가운데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또는 건물 기타 시설을 말함<sup>295)</sup>
  - 개항 혹은 세관 공항에서 세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또는 외국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을 하거나 이를 일시 장치하도록 재무대신이 지정한 곳으로, 장치화물의 종류를 지정함
  - 2016년 7월 기준, 항만 중심으로 총 88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세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

#### 1) 보세작업의 내용

- 세관장은 지정보세구역에 넣을 수 있는 화물의 종류를 정할 수 있음
  - 하역 또는 운반 외에 외국 물품에<sup>296)</sup> 대해서 원칙적으로 1개월간 내용을 점검함

295) 이상엽 외 2인(2014), p. 119

296) 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는 화물 및 수출 허가를 받은 화물

- 물품의 개조, 구분 기타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견본을 전시하거나 간단한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도 가능함
- 단, 장기간 화물을 장치하거나 지정업체의 독점적 사용 및 복잡한 가공, 제조 또는 화물의 성질을 바꾸는 작업은 허가하지 않고 있음

## 2) 지정보세구역의 운영

- 지정보세구역에서 화물을 관리하는 자, 또는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지정보세구역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화물관리자가 관리하는 화물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지정보세구역에서 양도, 처분 또는 용도 변경, 개축, 이전, 철거 등의 기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외 무역의 감소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어야 함
  - 지정보세구역이 취소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동안 물품의 지정이 취소된 곳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인정함

## 나. 보세장치장

- 보세장치장에 대한 내용은 관세법 <제4장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원활화 및 중계무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보세장치장은 외국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을 하거나 이를 장치하기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함<sup>297)</sup>
  -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할 수 있으며 보세장치장 승인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함

29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29.)

### 1) 보세장치장 허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장치장 허가를 제한하지만, 세관장은 신청인의 요청 시 필요한 경우 물품의 보세장치장 장치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음
  - 신청인이 보세지역허가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법규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조직폭력배 또는 관련인의 고용, 폭력 관련 처벌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세장치장 허가를 제한함
  - 세관장은 신청인의 요청 시 필요한 경우 물품의 보세장치장 장치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음

### 2) 보세장치장 허가의 특례(특정 보세 승인제도)<sup>298)</sup>

- 일본은 관세법 <제4장 제3절 제50조>에서 보세장치장 허가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화물의 장치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법정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서 당해 업무에 관해 신고만으로 보세장치 업무를 영위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허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음
  - 보세장치장 허가의 특례제도는 보세장치장의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허가제한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 요건<sup>299)</sup>, NACCS(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 시스템)를 사용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임원을 포함한 당사자,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법규준수를 위한 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함
  - 승인보유자가 사망, 허가 만료, 승인기간 만료, 승인보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세관장의 개선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승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됨

29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cp/leaflet.pdf>, (검색일자: 2016. 8. 9.)

299) 일정 기간 동안에 관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칙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함 (관세 관계 법령은 3년, 기타 법령은 2년)



- 특정 보세 승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례 수입자 등의 승인·인정 신청서(C-9000)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기존의 보세장치장 등 허가 장소에 대한 신고 시 외국화물의 장치 등 보세 작업에 대한 위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 보세장치장의 허가기간이 6년인 것에 비해, 특정 보세 승인을 받은 장치장은 허가기간이 8년으로 일반 보세장치장 보다 긴 허가기간을 두고 있음

### 3) 보세장치장 운영

- 보세장치장 화물 수용능력을 증가 또는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유 및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함
  - 허가기간 내에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세관에 신고해야 함
- 보세장치장에 있는 외국화물이 망실 또는 멸각된 때에는 당해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함
  - 그러나 외국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망실한 경우 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음
- 보세장치장 허가 효력이 상실 및 취소되는 경우는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해산, 파산절차의 개시, 허가기간이 만료한 때 및 세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함
  - 세관장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보세장치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한 때와 허가를 받은 자가 통고처분, 금고이상의 형 등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임
  - 보세장치장을 상속인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다. 보세공장

- 보세공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가공 또는 제조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함<sup>300)</sup>
  - 그러나 작업의 사정에 따라 세관의 허가를 받아서 기간을 연장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가공 또는 제조를 할 수 있음
-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료의 수입과 제품 수출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 판매 제품과 함께 수출품 가공 및 제조를 위해 또는 국내 판매를 위한 공장 입지조건과 관련하여 항구에서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기도 함
- 보세공장에서 가공, 생산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해산물 통조림, 과자, 철강, 전선, 선박, 자동차, 정밀 기계, 토목 기계, 공작 기계, 석유 제품, 섬유, 농약, 화학제품, 필름 등이 있음

### 1) 보세공장 허가, 특례승인 및 지정보세공장제도

- 보세공장은 관세법 <제4장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공장에 한하여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보세공장에 병설된 보세장치장)
  -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보세공장에 물품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동안만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보세장치장 특례승인의 조항을 준용하여 보세공장에 대해서 재무성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치나 시설에 대해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의 경우에만 보세작업을 신고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사용된 원료제품의 제조 수율 등 기타 보세작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세공장을 지정하여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30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29.)

- 보세공장에서의 보세작업이 허용된 특정 제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보세작업 시작 및 종료에 대한 신고를 요하지 않음
- 간이절차의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제품과 원재료의 수량 기타 등 기타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월별로(매달 10일, 세관장이 특별한 기간을 지정했을 때 당해 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2) 보세작업의 종류

- 보세작업은 외국화물에 대한 가공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혼합 포함) 및 개조 등의 작업을 말함
- 보세공장에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외국화물과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보세작업을 한 제품은 보세공장에서 당해 물품의 보세작업 사용이 승인된 날부터 2년 동안 장치할 수 있음<sup>301)</sup>

## 3) 보세공장의 운영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기간, 해당 작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화물의 번호, 품명, 내국화물 또는 외국화물의 수량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서면으로 보세작업을 신고해야 함
- 원칙적으로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은 외국화물에 대해서만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내국화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
  - 외국화물과 내국화물을 혼용하여 외국화물만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제품과 동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작업의 성격, 공정 등을 감안하여 당해 내국화물을 사용하는 사유가 정당하고 원료의 수량과 제품의 수량의 비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은 내국화물의 혼용을 승인할 수 있음
- 무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며 이 법의 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에서 작업을 허용할 수 있음

---

301) 이상엽 외 2인(2014), p. 122

- 당해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종류, 기간 위치 및 이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함
- 이 경우 세관은 허가받는 물품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관세를 징수해야 함

## 라. 보세전시장

- 보세전시장은 외국 물품을 전시하는 장소로서 관세법 제4장 제4절에서 규정하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말함<sup>302)</sup>
- 국제적인 규모로 열리는 박람회 또는 공공 기관이 실시하는 외국제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화물을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채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전시 및 사용하기 위한 장소임

### 1) 보세작업의 종류

-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등의 시설의 건설, 유지 또는 철거 또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작업 등을 할 수 있음
-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화물의 하역, 운반 또는 장치, 내용물의 점검 또는 개조, 구분 및 관리, 전시 또는 사용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음<sup>303)</sup>

### 2) 보세전시장의 운영

- 보세전시장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 및 세관에서 요청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화물을 보세전시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화물 중 판매되어 사용·소비 또는 사용 또는 소비가 예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전시장 내에서 당해 물품이 장치된 위치를 제한하거나 성질 또는 형상의 변경되는 사유를 보고해야 함

30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29.)

303) 이상엽 외 2인(2014), p. 123

-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화물의 전시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간 내에 화물을 반출해야 함
  -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의 화주는 즉시 세관에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세관장은 보세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으로 간주하며, 판매가 예정된 물품에 대해서 해당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마. 종합보세지역

- 종합보세지역은 관세법 <제5장 제5절>에서 규정하며 외국화물의 장치, 가공, 제조, 전시 등 상기 보세지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곳임<sup>304)</sup>
  -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 각종 시설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각 시설 사이에서는 절차 필요 없이 외국화물의 이동이 가능함

#### 1) 종합보세지역 허가

- 허가요건으로는 토지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어야 하고 무역관련 시설의 관련성이 높아야 하며 종합적으로 수입 촉진 및 무역 진흥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작업이 필요한 곳이어야 함
  - 당해 토지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재무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보세지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심사해야 함

#### 2) 종합보세지역에서 허용되는 작업

- 종합보세지역에서는 외국화물의 하역, 운반, 장치, 내용물의 검사, 개조, 구분 및 관리와 가공 또는 외국화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혼합 포함), 외국화물의 전시 또는 이와 관련된 사용을 포함하는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음<sup>305)</sup>

30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29.)

- 종합보세지역에서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종합보세지역의 허가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함

### 3) 종합보세지역 운영

- 종합보세지역에서 판매, 소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외국화물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함
  - 특히 유료로 관람되는 물품, 전시관, 사무실 기타 시설의 건설 또는 철거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장치 및 운반 장비 등은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그 임원 기타 종업원이 종합보세지역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종합보세지역의 허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합보세지역에 장치된 물품이 망실 또는 멸각되어 관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 경우, 당해 종합보세지역의 물품관리자가 허가를 받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관리자가 법인과 연대하여 관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됨

## 3 보세운송

- 외국화물은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개항, 세관, 공항, 보세지역, 세관관서 및 세관장이 지정한 특정 장소 사이에서 외국화물의 상태로 운송할 수 있음<sup>305)</sup>
- 보세운송 승인 대상화물은 원칙적으로 외국화물로 제한하되, 다만 외국무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환적되는 화물 및 수출허가를 받고 환적되는 화물은 보세운송 절차가 면제됨
  - 우편물, 특례수출화물 등은 세관장에 신고를 하고 보세운송을 할 수 있음

305) 이상엽 외 2인(2014), p. 124

30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29.)

### 가. 보세운송 절차

- 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명칭, 등록 기호 또는 종류,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운송 대상,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및 운송 기간 및 목적을 서면으로 기재한 후 세관에 제출하여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함
- 보세운송 신고를 위해서는 운송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예외적으로 1년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송되는 화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인을 허용한 화물에 대해서는 월별로 운송목록을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 운송목록을 제출한 경우 및 세관의 도착확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승인과 도착확인의 세관관서가 동일한 경우 운송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동일 세관관할 구역 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특정 장소간의 보세운송 또는 수출 허가를 받은 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또한 운송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보세운송의 승인을 하는 경우 운송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송기간을 경과하여 화물이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함
-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자는 도착확인을 받은 운송목록을 보세운송을 승인받은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보세운송 승인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화물검사를 받거나 관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우편물(특정 우편물 제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특정 구간에 한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으며 이때 운송목록을 세관에 제시하여 확인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특례보세운송제도

- 특례보세운송제도는 인증을 받은 특례보세운송업자에 대해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sup>307)</sup>

- 특례보세운송업자는 특정 구간에서의 보세운송에 대해 세관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지만 운송목록 제출, 도착확인 등의 절차는 그대로 따라야 함
  - 특례보세운송업자는 통관업자,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공장 허가의 특례승인을 받은 국제 운송화물취급업자 또는 기타 국제 운송화물취급업체로서 정령 <제55조의2>에 의한 요건<sup>308)</sup>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함
  
- 특례보세운송업자의 승인을 위한 요건은 법규준수도, 특례보세 운송 업무를 전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임원, 대리인 기타 종업원들이 법규준수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 등임
  - 결격사유는 관세법, 관세 정률법 기타 관세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형벌 또는 통고 처분을 받고 집행 또는 통고처분의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제 운송화물취급업체의 기준이 되는 법규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기타 법규를 위반하여 형벌의 집행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당해 승인취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법규준수도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특례보세운송제도를 이용할 시 특례수입자 등 승인·인정 신청서(C-9000)를 기재 하여 신청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 관할 세관의 특정보세 운송제도 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세운송 특례승인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특례적용을 받지 않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 특례보세운송 승인을 받았을 시 보세운송에 대한 개별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등 간이 절차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0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검색일자: 2016. 11. 29.)

308)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공장 특례승인을 받은 자,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공장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자, 지정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 화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시작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자,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에 보세운송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상운송법, 항만운송사업법, 항공법, 화물이용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허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자



## VIII. 수출입 규제

- 통상적으로 수입규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조절하는 관세 규제와 관세 외에 통관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수입을 불허하는 등의 비관세 규제로 구분할 수 있음
  - 비관세 규제는 관세법에 열거된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불허하는 수입금지가 가장 엄격하며 통관단계에서 각종 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을 허가하는 수입제한의 방법 등이 있음
  
- 수입제한은 다시, 근거법령에 따라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위법(外爲法)’)과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등에서 규제하는 요건이 있는 기타 법령에 의한 규제로 구분됨
  - 경제산업성은 소관품목인 공산품 외에도 외위법에 의거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입 할당, 멸종위기 동식물 등에 대한 수입승인 등 무역규제 종합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sup>309)</sup>

---

309)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28

## 1 수출입 금지

### 가. 수입 금지 물품

- 관세법 <제69조의 11>에 따라 수입 금지 물품 등을 수입할 시 처벌 대상이 됨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각성제, 아편 흡연 도구 지정 약물(의료 등의 용도 제외)
  - 권총, 소총, 기관총, 대포 이러한 총포탄과 권총 부품, 폭발물, 화약류, 화학무기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정 물질
  -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일종의 병원체 등
  - 동법 <제21항>에서 규정하는 병원체 등 화폐, 지폐, 은행권, 인지, 우표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품, 모조품 및 위조카드 (공카드 포함),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칠만한 서적, 도화, 조각물 기타 상품, 아동 포르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회로 배치 이용권 등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등
- 그 밖에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으며 허브와 아로마 오일, 목욕 소금 등의 상품 중 마약 및 지정 약물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음

### 나. 수출 금지 물품

- 다음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69조의 2>에 따라 처벌받음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아편, 각성제, 아동 포르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할 시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음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음<sup>310)</sup>

## 2 외위법에 의한 수출입 규제

- 외국환 거래의 관리와 수출입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외환 및 외국 무역관리법 (이하 외위법)은 <제52조>와 하위법령인 수입무역관리령, 수출무역관리령 및 경제산업성 고시(수입공표)에서 구체적인 수출입 규제대상 품목을 열거하고 있음
- 외위법에 의한 수출입 규제는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sup>311)</sup>와 안전보장무역심사과<sup>312)</sup>에서 주관하고 있음

### 가. 수입규제

- 외위법에서 규정하는 수입규제제도는 수입할당, 수입승인, 확인제도가 있음
  - 수입할당(Import Quota)은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금지하나 일정 수량의 범위 내에서 할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 수입승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나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2호 승인제도, 원산지 또는 선적지를 불문하고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2호의 2 승인제도가 있음
  - 확인제도란 통관 전에 품목별로 소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확인제도 및 수입통관 단계에서 소관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통관 시 확인 제도를 포괄함

310) 상품 등에 대한 표시로 타인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상품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311)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ndex.html](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ndex.html), (검색일자: 2016. 10. 23.)

312)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심사과, <http://www.meti.go.jp/policy/np/index.html>, (검색일자: 2016. 10. 25.)

〈표 2-Ⅷ-1〉 외위법에 의한 수입규제

구분	근거법령	대상물품
수입할당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 제1호,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1	청어, 대구, 가리비 등 수산물과 식용 해초, 해초의 조제식료품, 오존층 파괴물질 등
2호 승인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 제2호,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2	국제조약에 의한 수산물, 이라크 및 시리아 불법취득 문화재, 소말리아 산 목탄, 북한산 모든 화물,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산 모든 화물
2의2호 승인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 제2호,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2의 2	마약류, 핵물질, 폭발물, 무기류, 구제역 백신 등
사전확인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제 제1항 3호,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3-6, 3-7	임상시험용 백신, 우라늄 촉매, 특정 문화재 등
통관시확인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 제3호,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3-8	방사성동위원소, 농약, 양귀비 및 대마의 열매 등

자료: 주일대한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35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1) 수입할당

- 수입할당제도는 천연자원 또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 가능한 수량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품목은 수입공표 〈제1호〉에서 정함
  -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등 HS 제3류와 제12류의 김, 식용해초, 제21류의 해초의 조제식료품 등 수산물과 몬트리올의정서<sup>313)</sup>에 의해 규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이 이에 해당됨
- 수산물 등의 수입할당은 수입할당신청서 등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며, 경제산업성에서 수입할당을 허용하는 경우 수입할당증명서 및 수입승인서를 교부함<sup>314)</sup>

313) 정식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프레온가스(CFCs)나 할론 등 지구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 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 발효되었음

- 수입할당 승인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수입할당의 승인을 받은 물품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되어야 함<sup>315)</sup>
- 오존층 파괴물질은 2020년까지 수입량을 전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할당을 실시하고 있음<sup>316)</sup>
  - 수입규제 연도의 전년도 말에 공시되는 기간 내에 수입승인신청서, 규제 3년간 수입통관실적표 등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면, 수입 쿼터 한도 수량 범위 내에서 신청이 있었던 수량 또는 수입실적에 따라 수량을 할당함
  - 수입할당의 유효기간은 규제연도의 말일까지이며, 할당받은 자는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에 할당받은 수량을 모두 수입 통관할 때까지 수입 통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표 2-VIII-2〉 수입할당 대상물품

구분	대상물품	
수산물	0301.99-2	살아있는 청어( <i>Clupea</i> spp.), 대구( <i>Gadus</i> spp., <i>Theragra</i> spp. and <i>Merluccius</i> spp.), 방어( <i>Seriola</i> spp.), 고등어( <i>Scomber</i> spp.), 멸치( <i>Etrumeus</i> spp., <i>Sardinops</i> spp. and <i>Engraulis</i> spp.), 전갱이( <i>Trachurus</i> spp. and <i>Decapterus</i> spp.) 및 콩치( <i>Cololabis</i> spp.)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살아있는 청어( <i>Clupea</i> spp.), 대구( <i>Gadus</i> spp., <i>Theragra</i> spp. and <i>Merluccius</i> spp.), 방어( <i>Seriola</i> spp.), 고등어( <i>Scomber</i> spp.), 멸치( <i>Etrumeus</i> spp., <i>Sardinops</i> spp. and <i>Engraulis</i> spp.), 전갱이( <i>Trachurus</i> spp. and <i>Decapterus</i> spp.) 및 콩치( <i>Cololabis</i> spp.)
	0303	냉동 청어( <i>Clupea</i> spp.), 대구( <i>Gadus</i> spp., <i>Theragra</i> spp. and <i>Merluccius</i> spp.), 방어( <i>Seriola</i> spp.), 고등어( <i>Scomber</i> spp.), 멸치( <i>Etrumeus</i> spp., <i>Sardinops</i> spp. and <i>Engraulis</i> spp.), 전갱이( <i>Trachurus</i> spp. and <i>Decapterus</i> spp.) 및 콩치( <i>Cololabis</i> spp.)

314) 일본 수입무역관리규정 제2조(승인 절차 등)

315) 일본 수입무역관리령 제5조

316)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2\\_exandim/04\\_ozon/ozon\\_im.html](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2_exandim/04_ozon/ozon_im.html), (검색일자: 2016. 10. 13.)

〈표 2-Ⅷ-2〉의 계속

구분	대상물품	
수산물	0304	청어(Clupea spp.), 대구(Gadus spp., Theragra spp. and Merluccius spp.), 방어(Seriola spp.), 고등어(Scomber spp.), 멸치(Etrumeus spp., Sardinops spp. and Engraulis spp.), 전갱이(Trachurus spp. and Decapterus spp.) 및 쾡치(Cololabis spp.)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
	0305	건조, 염장이나 염수한 청어(Clupea spp.), 대구(Gadus spp., Theragra spp. and Merluccius spp.), 방어(Seriola spp.), 고등어(Scomber spp.), 멸치(Etrumeus spp., Sardinops spp. and Engraulis spp.), 전갱이(Trachurus spp. and Decapterus spp.) 및 쾡치(Cololabis spp.) 및 이들 어종의 어분, 대구의 알
	0307	살아있거나 신선 또는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한 가리비 관자와 오징어(Mongo ika 제외)
	1212.21-1	한 장의 면적이 430cm <sup>2</sup> 이하인 사각형 모양의 식용의 해초
	1212.21-2	식용의 김 및 이를 섞은 식용 해초 (제1212.21-1호의 것 제외)
	1212.21-3	기타 식용의 해초
	2106.90-2-(2)-E	제1212.21-2호, 제1212.21-3호의 해초의 조제 식료품
오존층파괴 물질	몬트리올의정서 부속서 C 그룹 I에 속하는 물질 <sup>1)</sup>	HCFC (hydro-chloro-fluoro-carbon)

주: 1) 수입공표1에서는 부속서 A그룹 I, A그룹 II, B그룹, C그룹 II, C그룹 III, E그룹의 물질도 할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부속서 C 그룹 I에 속한 HCFC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생산 및 소비 모두 전폐

자료: 일본 수입공표 제1호 제1(자유화되지 않은 품목), 제2(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 규정된 규제물질)

## 2) 수입승인

- 수입승인제도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나, 국내 산업보호, 공공복리 증진,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특정 지역에서 선적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와 국가나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로 구분됨
  - 전자에 해당하는 국가와 원산지는 수입공표 <제2호>에 규정하며 후자의 경우 수입 공표 <제2호의 2>에 규정함
    - 2호의 2승인은 상업적 수입인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품목으로 볼 수 있음
-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한 승인절차는 수입승인신청서와 수입화물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 관련 수입승인 신청사유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산업성에 신청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수입승인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이루어짐
- 원산지와 품목이 함께 규제되는 물품으로는 국제조약에 따라 규제하는 물품을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하거나 안보 등의 이유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등이 있음
  - 국제포경단속조약 가맹국 중 비포경국 이외의 국가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고래 및 조제품<sup>317)</sup> 등 희귀종 보호를 위한 조약에 의한 수산물은 원산지 또는 선적지에 따라 수입이 규제됨
  - 이라크 또는 시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문화재,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또는 세바스토폴 특별시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모든 화물, 소말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목탄 등도 포함됨
  - 워싱턴조약<sup>318)</sup>에 따른 멸종위기 동식물,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317) 현재 국제포경단속조약(IWC) 가맹국 중 포경국인 브라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페루, 대한민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만 인정하고 있음

318)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으로 정식 이름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이다. 멸종 위협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부속서 I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종은 부속서 II에 수록하고, 또한 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협력이 필요한 곳으로 확인된 종은 부속서 III에 열거했음

화학무기금지조약<sup>319)</sup>에 따른 화학무기 등은 당해 조약의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나 지역이 원산지 또는 선적지인 물품은 승인 대상에 해당됨

〈표 2-Ⅷ-3〉 2호 승인 대상물품(특정 지역규제)

HS code	대상물품
0106.12, 0208.40, 0210.92, 1504.30, 1521.90, 1601, 1602.10, 1602.20, 1602.31, 1602.39, 1602.49, 1602.50, 1602.90, 2301.10, 2309.10, 2309.90	고래 및 그 조제품
0302.35, 0302.90-2, 0304.49-2, 0304.59-2	참다랑어 (대서양 또는 지중해에서 축양된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302.36, 0302.90-2, 0304.49-2, 0304.59-2	남방참다랑어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301.91-2, 0301.99-2, 0302.11, 0302.13, 0302.14, 0302.19, 0302.90, 0303.11, 0303.12, 0303.13, 0303.14, 0303.19, 0303.90, 0304, 0305.10, 0305.20, 0305.39, 0305.41, 0305.43, 0305.49, 0305.59, 0305.69, 0305.72, 0305.79, 1604.11, 1604.19, 1604.20	연어와 송어 및 이들 조제품
0106.12, 0208.40, 0210.92, 1504.30, 1521.90, 1601, 1602.10, 1602.20, 1602.31, 1602.39, 1602.49, 1602.50, 1602.90, 2301.10, 2309	바다 포유류 및 그 조제품
0208.40, 0210.92,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1504.10, 1504.20, 1506, 1604, 1605, 2106.90, 2301.20, 2309	물고기, 갑각류 기타 수생 동물 및 이들 조제품
0504, 0506, 0507, 0508, 0511.91, 0511.99	동물성 생산품
1212.21, 1212.29, 2106.90	해초 및 그 조제품
9701, 9702, 9703, 9704, 9705, 9706	1990년 8월 6일 이후 이라크에서 불법으로 취득된 문화재

319) 정식 명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임. 이 조약에 의하여 조약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고,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2007년까지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음



〈표 2-VIII-3〉의 계속

HS code	대상물품
4402	목탄
9701, 9702, 9703, 9704, 9705, 9706	2011년 3월 15일 이후 시리아에서 불법으로 취득된 문화재
모든 화물	북한에서 수입된 것
모든 화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것
총포류, 화약류, 폭발물, 군용품 등	에리트레아, 리비아, 소말리아에서 수입된 것
워싱턴조약 부속서Ⅱ의 해당 종에 속하는 동물, 식물 및 파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파생물
워싱턴조약 부속서Ⅲ에 열거된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부속서Ⅲ의 해당 종에 속하는 동물, 식물 및 파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파생물
몬트리올의정서 부속서 A, B, C, E에 열거된 물질, 부속서 D에 열거된 제품	오존층파괴물질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 특정물질 및 이를 함유하는 것	

자료: 일본 수입공표 제2호 제1(표의 기재된 지역 등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물품), 제2(워싱턴조약의 동식물 및 그 파생물,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 규정된 물질 및 제품,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1종 특정물질 등)

-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로는 우라늄광, 천연 우라늄 등의 핵물질 및 그 관련물품, 화약, 폭약, 도화선 등의 폭발물, 군용 항공기, 전차, 군함 등과 권총, 도검류 등 무기관련 물품 등이 해당함
  - 워싱턴조약의 멸종위기 동식물, 바젤협약<sup>320</sup>의 유해폐기물, 화학무기금지조약의 화학무기, 스톡홀름협약<sup>321</sup>의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등 국제조약에 의하여 규제되는 물품도 승인대상에 포함됨

320)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함

32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으로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함

〈표 2-Ⅷ-4〉 2-2호 승인대상물품(전체 지역규제)

구분	대상물품	
원자력물품	2612	우라늄 광 및 토륨 광
	2844.10	천연 우라늄 및 그 화합물, 이를 함유하는 합금, 분산물, 도자기 및 혼합물
	2844.2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플루토늄 및 이들의 화합물, 이를 함유하는 합금, 분산물, 도자기 및 혼합물
	2844.30	우라늄 235를 감소시킨 우라늄과 토륨 및 이들의 화합물, 이를 함유하는 합금, 분산물, 도자기 및 혼합물
	2844.40	핵분열성 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이를 함유하는 합금, 분산물, 도자기 및 혼합물
	2844.50	사용된 원자로 용 핵연료 요소
	8109.90	지르코늄 관
	8401.10	원자로
	8401.30	핵연료 요소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9030.10	이온화 방사선의 측정 또는 검출용의 기기(핵연료 물질을 포함한 것에 한한다)
	9030.90	이온화 방사선의 측정 또는 검출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핵연료 물질을 포함한 것에 한한다)
구제역 백신	3002.30	구제역 백신
화약류	3601	화약
	3602	폭약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다음의 점화기를 제외한다 1. 화약 0.1그램 이하의 점화기 중 흑색 화약을 사용하여 전기에 의해 점화하는 구조의 것, 2. 화약류 단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화공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다이아몬드 원석	7102.10	다이아몬드 원석(선별하지 않은 것)
	7102.21	다이아몬드 원석(산업용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7102.31	다이아몬드원석(산업용 이외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군용기계류	8411	군용 항공기용 원동기(가스터빈) (부분품을 제외한다)
	8412.10	군용 항공기용 원동기(터보제트의 반동엔진)
	8412.39	군용 항공기용 원동기(압축공기식)
	8412.80	군용 항공기용 원동기(기타)
	8710	전차와 기타의 장갑 차량(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무기를 장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8802	군용 항공기(관세율표 제 8802.60 호의 것을 제외한다)
	8906	군함

〈표 2-VIII-4〉의 계속

구분	대상물품	
무기류	9301	군용 무기
	9302	권총
	9303	기타 화기 및 이와 유사한 기구에서 발사 화약에 의해 작동하는 것
	9304	기타 무기
	9305	관세율표 제9301호 내지 제9304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관세율표 제9305.99호이며, 플라스틱, 고무, 가죽, 합성 가죽제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2. 삼각대 기타 특수 지지대, 3. 총의 낚시대와 밴드 및 총신 또는 총상 고리, 4. 총 반동 흡수 장치에서 분리가 있는 것, 5. 격침을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
	9306	폭탄, 수류탄, 어뢰, 기뢰,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및 탄약통 기타 총포탄 및 발사체 및 이들의 부분품(산탄을 포함하고, 충전되는 와드(wad)를 제외한다)
화학무기	2921.19-00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일명 HN1), 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일명HN2), 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일명 HN3)
	2930.90-900	에스-2-(디알킬아미노)에틸과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2-클로로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2931.90-00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2-클로로비닐디클로로아르신,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트리스(2-클로로비닐)아르신,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이들의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 이들의알킬화나수소화된염들, 오-이소프로필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오-피나콜릴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3002.90-100	색시톡신(saxitoxin), 리신(ricin)
1종 화학물질	2903.29	헥사클로로벤젠
	2903.81	알파-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 베타-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 감마-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
	2903.82	알드린(Aldrin), 클로르덴(chlorodane), 헵타클로르(heptachlor)

〈표 2-VIII-4〉의 계속

구분	대상물품
1종 화학물질	2903.89 독사펜(Toxaphene), 미렉스(Mirex)
	2903.92 헥사 클로로 벤젠 및 DDT
	2903.99 폴리염화비페닐, 폴리염화나프탈렌(염소 수가 세 이상에 한한다. 이하 같다), 펜타클로로 벤젠 및 헥사브로모페닐
	2904.90 PFOS, PFOSF
	2906.29 켈센(Kelthane)
	2907.19 2,4,6-디 트리 부틸 페놀
	2909.30 테트라 브롬 디 페닐 에테르, 펜타 브롬 디 페닐 에테르, 헥사 브롬 디 페닐 에테르, 헵타 브롬 디 페닐 에테르
	2910.40 디엘드린(dieldrin)
	2910.90 엔드린(endrin)
	2914.70 클로르덴(chlorodane)
	2921.51 엔, 엔-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2931.20 산화트리부틸주석
	2933.99 2-(2H-1,2,3-벤조트리아졸-2-1)-4,6-디-트리-부틸 페놀
	2934.99 엔도설판(Endosulfan)
	3404.90 폴리염화비페닐 및 폴리염화나프탈렌
	3824.82 폴리염화비페닐
3824.90 폴리염화나프탈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파생물	워싱턴조약부속서 I 의 해당종에 속하는 동물 또는 식물 및 파생물
유해 폐기물	<p>바젤협약부속서 IV에 열거된 처분 작업을 위해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약 부속서 I에 열거된 것으로서 조약 부속서 III에 열거된 유해한 특성 중 하나를 가지는 것,</li> <li>2. 조약 부속서 II에 열거된 것,</li> <li>3. 조약 제3조 1 또는 2의 규정에 따라 일본이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물건,</li> <li>4. 조약 제3조 3항에 따라 협약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된 것이며 이러한 통보에 따른 지역을 원산지, 선적 지역 또는 경유지로 하는 수입</li> </ol>
폐기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석탄재, 슬러지,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시체 기타 오물이나 찌꺼기로서, 고형 또는 액상의 것(방사성 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을 제외한다)(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일본에 입국하는 자가 휴대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자료: 일본 수입공표 제2-2호 제1, 제2(워싱턴조약의 동식물 및 그 파생물, 화학무기금지법에 규정된 특정 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규정된 규제물질 등)

## 3) 사전확인

- 국내법의 실효성 확보, 수입할당제도의 보완, 국제조약의 이행 등을 위해 수입하기 전에 각 품목별 소관기관으로부터 용도 등을 확인받아 관련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하도록 하는 규제임
- 대상품목은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제3호 제6> 및 <제7>에 규정하고 있음
- 임상시험용의 구제역 백신은 농림수산성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정 외국 문화재 및 피점령지역 유출 문화재 등은 문부과학성의 확인이 있어야 함
  - 선박으로 수입되는 기타 참치류, 특정 냉동 참치류, 국제 포경 단속 조약 가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래 및 그 조제품,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상 규정물질 등은 경제산업성의 확인을 받아야 함

〈표 2-VIII-5〉 사전확인 대상물품 및 확인사항

법령	대상물품	확인사항 및 기관
수입공표 제3호 6-(1)	임상시험용 구제역 백신	임상시험을 위한 것임을 농림수산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6-(2)	특정 외국문화재 (외무대신으로부터 도난된 것임을 통지받은 것)	외국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지 않은 것임을 문부과학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6-(3)	피점령지역 유출문화재	일본에서 임시 보관해야 할 것임을 문부과학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1)	1종화학물질과 이들의 동위원소의 화합물 및 화합물	시험연구용인 것임을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1)	PFOS 및 그 염	에칭제, 반도체용 레지스트, 업무용 사진필름에 사용되는 것임을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2)	선박으로 운송된 신선, 냉장, 냉동 참치 (황다랑어,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눈다랑어 제외) 및 새치(황새치 제외)	수산청의 접수번호가 날인된 수입보고서를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3)	냉동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	수산청이 발급한 정규 허가 선박·양식장 목록 대책 확인서를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표 2-VIII-5〉의 계속

법령	대상물품	확인사항 및 기관
수입공표 제3호 7-(4)	비막치어(메로)	수산청이 발급한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위원회의 보존 조치에 따른 불법 어업 선박 대책에 반하지 않는 화물 확인서를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5)	고래 및 그 조제품(2호승인 대상 제외)	원산지 증명서 등을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6)	국제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 등을 원산지로 하는 워싱턴조약 부속서Ⅱ에 해당하는 동식물 및 그 파생물(살아있는 것 제외)	수출국의 워싱턴조약 관리당국 등이 발행한 수출 허가서를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7)	워싱턴조약부속서Ⅱ에 해당하는 동물중 살아있는 것(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 제외)	수출국의 워싱턴조약 관리당국 등이 발행한 수출 허가서를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워싱턴조약 부속서Ⅲ에 열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부속서Ⅲ의 해당 종에 속하는 동물 중 살아있는 것	수출국의 워싱턴조약 관리당국 등이 발행한 수출 허가서를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 증명서를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9)	원료로 사용되는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A, B, C, E에 열거된 물질(2호 승인 대상 제외)	해당 물질 이외의 물건 제조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임을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10)	시험, 연구, 분석에 사용되는 몬트리올의 정서 부속서 A그룹Ⅰ, B, C그룹Ⅱ, C그룹Ⅲ, E에 열거된 물질(2호승인 대상 제외)	시험, 연구, 분석에 사용되는 것임을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11)	검역소에 사용되는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E에 열거된 물질(2호승인 대상 제외)	화물의 수출입 검역소에 사용되는 것임을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수입공표 제3호 7-(12)	러시아에서 선적된 냉동 계 및 조제품(밀 폐용기에 담긴 것, 쌀을 포함한 것 제외)	러시아연방 어업청이 발급한 증명서 등을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러시아 외의 국가 등에서 선적된 냉동 계(왕게, 대게, 털게에 한함)	선적지 정부 등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등을 경제산업대신이 확인

자료: 일본 수입공표 제3호 제6 내지 제7

4) 통관 시 확인

-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해진 서류를 수입통관 시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임
  - 양귀비 및 대마의 열매, 방사선 동위원소, 농약, 사전확인 대상 외의 참치, 냉동하지 않은 게 등은 수입공표 <제3호 제8>의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표 2-Ⅷ-6〉 통관시 확인 대상물품 및 제출서류

법령	대상물품	제출서류
수입공표 제3호 8-(1)	양귀비 및 대마	열처리 등에 의해 발아 불능 처리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공표 제3호 8-(2)	워싱턴조약 부속서Ⅱ에 해당하는 동식물 및 그 파생물(살아있는 동물 및 국제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 등을 원산지로 하는 것 제외)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 증명서
수입공표 제3호 8-(3)	워싱턴조약 부속서Ⅲ에 해당하는 동식물 및 그 파생물 (부속서Ⅲ 열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 중 살아있는 동물 제외)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 증명서, 가공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중 하나
수입공표 제3호 8-(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2호 승인, 2-2호 승인 및 사전확인 대상 제외)	해당 개체 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취지의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 중 미국, 러시아, 호주에서 수입하는 것	학술연구 또는 번식의 목적으로 그 개체 등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수입공표 제3호 8-(5)	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 허가증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 판매 또는 판매 신고 증명서
수입공표 제3호 8-(6)	신선 또는 냉장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황새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황새치 통계증명서(재수출의 경우 재수출 증명서 포함)
수입공표 제3호 8-(7)	다이아몬드 원석(용기 또는 포장에 열려있지 않은 것으로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열린 흔적이 없는 것에 한함)	김벌리 프로세스 증명서
수입공표 제3호 8-(8)	농약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농약	농약 제조, 가공 또는 수입 등록 증명서
수입공표 제3호 8-(9)	러시아에서 선적된 냉동하지 않은 게	러시아 연방 어업청이 발급한 증명서
	러시아 외의 국가 등에서 선적된 냉동 게(왕게, 대게, 털게에 한함)	선적지 정부 등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자료: 일본 수입공표 제3호 제8

## 5) 예외물품

- 상기의 수입규제물품에 해당하더라도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물품,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일시입국자의 휴대품 등 상업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수입허가 또는 승인, 요건 확인 등의 절차가 면제됨<sup>322)</sup>
- 자가사용물품, 무상수입물품 등으로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들이 면제대상<sup>323)</sup>에 포함됨
  - 수입할당을 받아야 할 물품으로서 총물품가액이 18만엔 이하의 무상물품, 구호물자, 상품 견본 또는 선전용물품,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 전용물품, 유골, 공공기관용 물품, 무상으로 송부된 기록문서, 종교법인 또는 예배시설에 사용되는 식전용구, 예배용구,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해당 선박 내에서 제조한 물품, ATA 까르네 물품 등의 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이 있음
- 또한 일시적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휴대 또는 별송품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직업용구 및 이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규제가 면제됨
-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임시로 보관하는 물품,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에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물품인 상태로 장치, 하역, 운반, 개장, 구분 기타 작업을 위한 물품 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의 수입규제가 배제됨

## 나. 수출규제

### 1) 수출승인

- 특정 지역으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수출,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을 할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함<sup>324)</sup>
- 다이아몬드원석, 핵관련 물질,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 위조, 변조 또는 모조 화폐 등의 물품은 수출승인이 필요함

322) 일본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2항

323) 일본 수입무역관리령 별표 1

324)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제2조(수출승인)



- 워싱턴조약에 따른 야생동식물,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로테르담 협약<sup>325)</sup>에 따른 화학물질 등 국제협약에 따른 물품 또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또는 원산지 오인표시 물품 등이 수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유해폐기물과 폐기물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상품목이 전 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규제대상임
- 북한으로의 수출은 소고기, 어류, 주류, 담배, 의류, 음성 또는 영상 재생기, 기록기, 라디오 수신기, 카메라, 시계, 악기 등의 물품이 2017년 4월까지 규제됨<sup>326)</sup>
- 외국에서의 가공을 위탁하는 위탁가공무역계약에 따라 지정가공에 사용되는 가공 원료 중 일부는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sup>327)</sup>
- 현재 가죽, 모피, 가죽제품(모피 제품을 포함) 및 그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가죽 (원모피 및 모피 포함) 및 피혁제품의 반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지정하고 있음

〈표 2-Ⅷ-7〉 일본 수출승인 대상물품

지역	대상물품
전지역	다이아몬드 원석
전지역	혈액제제(원칙 수출 금지)
전지역	핵연료 물질, 핵원료 물질
전지역	방사성 폐기물
전지역	방사성 동위원소
전지역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등
전지역	어선
전지역	밀기울, 쌀겨와 밀 밀기울
전지역	배합 사료
전지역	표고 버섯 중균(원칙 수출 금지)

325) ‘유해 화학물질 사전통보 승인조약’으로 특정 유해 화학물질과 농약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절차를 규정함.

326)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근거한 북한 수출입 금지 조치 연장 발표」, 2015. 3. 31.

327)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2\\_export/16\\_itaku/index.html](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2_export/16_itaku/index.html), (검색일자: 2016. 10. 13.) 및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2-Ⅷ-7〉의 계속

지역	대상물품
전지역	통나무
전지역	장어 치어
미국	냉동 바지락, 조개
전지역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몬트리올의정서)
전지역 (남위 60° 이북 의 공해 제외)	유해 폐기물(바젤조약)
	폐기물
전지역	유해 화학물질(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전지역	[미시행] 수은, 수은 화합물, 수은 사용 제품(미나마타 조약)
전지역	멸종위기 동식물의 개체, 파생물(워싱턴조약)
전지역	희귀 야생 동식물의 개체, 종자, 가공품
전지역	새그물
전지역	위조, 변조 통화 등
전지역	반란, 선동 서적, 도화 등
전지역	풍속을 해치는 서적, 도화 등
전지역	국보, 중요 문화재 등
전지역	목적지 국가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화물, 원산지 오인 표시 화물
전지역	관세법 제69조의 12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 절차가 취해진 화물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4\\_kamotsu/01\\_export/export\\_kamotsu.html](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4_kamotsu/01_export/export_kamotsu.html), (검색일자: 2016. 10. 13.)

## 2) 안전보장규제

- 무기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 및 기술이 일본과 국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틀을 만들어 국제 사회와 협조해 수출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sup>328)</sup>
- 일본에서는 안보의 관점에 입각한 무역 관리를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근거해 시행함

328)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policy/anpo/gaiyou.html>, (검색일자: 2016. 10. 13.)

- 수출하려는 화물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거나 재래식 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함
  -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 내지 [제1의 제15항]에서 지정된 군사 전용 가능성이 특히 높은 민감한 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공하려는 기술이 외환령 [별표 1] 내지 [별표 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 수출업체와 기술 제공업체가 사전에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sup>329)</sup>
  - 또한 수출무역관리령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라도 수출하려는 화물 및 제공하려고 하는 기술이 대량 살상무기 등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이나 재래식 무기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수출자가 알게 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가 필요함<sup>330)</sup>

### 3 세관이 확인하는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규제

- 수입되는 물품은 종류에 따라 일본 국내의 보건,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 물품을 관리하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통관 시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관 기관에서 발급한 검역, 허가, 합격증서 등의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외국 기관의 증명 등을 얻지 못했을 시 통관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가. 수입규제

- 경제, 보건 위생, 공안 풍속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물은 관세법령을 제외한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당국의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수입 심사 또는 검사 시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될 수 있음

329)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policy/anpo/anpo02.html>, (검색일자: 2016. 10. 13.)

330)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policy/anpo/anpo03.html>, (검색일자: 2016. 10. 13.)

- 후생노동성에서는 주로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접촉을 통한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염 위험이 있는 동물, 사람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마약류, 각성제, 독극물 및 화장품 등을 규제함
- 농림수산업에서는 후생노동성과 함께 각 지방 동물검역소<sup>331</sup>와 식물검역소에서 의약품, 화장품 등과 감염 위험 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며 농업의 안전을 위한 농약, 비료, 병충해 위험이 있는 동식물과 가축전염병 등을 단속함
- 경제산업성에서는 화학물질, 원자력 안전, 자원, 연료 등의 안전성을 심사함
- 기타 총무성, 환경성, 경찰청, 국세청에서 위조품, 총기류 등 국민의 물리적 안전과 정상적인 소비를 위협하는 수입금지물품과 국제조약에 의한 특정 외래생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

〈표 2-Ⅷ-8〉 수입규제 타 법령 일람표

주관 부처		근거법령	주요 품목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심사관리과	독물 및 극물 단속법	독물, 극물
	의약식품국 감시 지도·마약 대책과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향정 신정 의약품 원료 등
		대마단속법	대마초, 대마초제품
		아편법	아편, 양귀비 열매의 껍질
		각성제 단속법	각성제, 각성제 원료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 정보과 검역 소 업무 관리실	식품위생법	모든 음식물 첨가제, 식기, 용기 포장, 장난감 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 화학물질대책과	노동안전위생법	유해물 등 (석면 등)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 지도·마약 대책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 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의 료기기, 지정 약물, 동물용 의약 품, 동 의약외품, 대외 진단용의 약품, 재생의료제품 등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표 2-VIII-8〉의 계속

주관 부처		근거법령	주요 품목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감염과	감염의 예방 및 감염 증 환자에 대한 의료 에 관한 법률	원숭이, 프레리 도그 등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 위생과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축수 산안전관리과	비료단속법	비료
		농약단속법	농약
		수산자원보호법	잉어, 금붕어 기타 붕어과 어류, 백련, 국련, 초어, 청어, 연어과의 수정란 및 치어, 챔새우속 치새우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식물 방역법	현화(종자)식물, 양치류 또는 선택 류에 속하는 식물 (그 부분, 씨앗, 과일과 기타 이에 준하는 가공품 포 함) 유해 식물 (박테리아, 기생 식물 등), 유해 동물 (곤충, 진드기 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광견병 예방법	개, 고양이, 너구리, 여우, 스킱크
		가축전염병 예방법	우제류 동물, 말, 닭, 오리 등 가 금류, 토끼, 꿀벌, 이 동물의 고 기, 소시지, 햄 등
	생산국 농산부 지역작물과	설탕 및 전분의 가격 조정에 관한 법률	설탕, 전분
생산국 축산부 우유제품과	가공 원료 유 생산자 보급금 등 잠정 조치 법	버터, 탈지 분유, 연유 등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쌀 껍질 등(쌀, 쌀가루, 찰쌀, 쌀 밥 등), 보리 등(보리, 밀, 메스린 또는 호밀을 가공 조제한 것)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 원 보안과	화약류 단속법	화약, 폭약, 화공품(도화선 등)
		고압가스 보안법	고압가스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 한 법률	화학물질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 정유비축과	석유 비축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및 중유	

〈표 2-Ⅷ-8〉의 계속

주관 부처		근거법령	주요 품목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부문 알코올실	알코올사업법	알코올분 90도 이상의 알코올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할당품목(청어 등) 수입제한품목(고래 등) 사전확인품목(백신 등)
총무성	정보우정행정국 우편행정부 우편과	우표류 모조 등 단속법	모조 우표류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 생물과	조수보호 및 수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조류, 짐승과 그 가공품, 조류의 알 등
		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관한 피해 의 방지에 관한 법률	블랙 버스, 늑대거북 등
경찰청	생활안전국 보안과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 총,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칼, 창과 장도, 칼날 길이 5.5cm 이상 의 칼, 비수 및 토비다시 칼 등
국세청	과세부 과세총괄과 소비세실	인지 등 모조 단속법	모조 인지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1_jr.htm), 검색일  
자 2016. 12. 14.

###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규제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 음식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제조·사용 기준, 성분 규격,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등은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가) 규제대상화물

- 수입식품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상업상 사용하는 모든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동물성·식물성 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기, 요리기구,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사용되거나 직접 접촉하는 기계 등의 기구, 포장용기 및 유아용 장난감 등을 그 규제대상으로 함
- 규제대상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나 영·유아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구 및 포장용기,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개인용, 실험연구용, 재수출용, 전시용 식품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됨<sup>332)</sup>
  - 개인용 및 실험 연구용의 경우 후생노동대신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문의해야 함

나) 통관절차<sup>333)</sup>

- 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제대상 물품 수입 시 도착 7일 이전에 수입신고 건별로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와 기타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증명서 또는 시험성적표 등의 관련서류를 검역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함<sup>334)</sup>
  - 육류 및 육류 제품, 복어 등의 식품은 수출국 정부가 발급하는 위생 증명서가 첨부 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검역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수행하고 물품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함
  - 식품위생법 <제27조> 식품 등 수입신청에 따라 후생노동성 식품위생 감시원이 교부하는 식품 등 수입신청필증을 제출하되 다만 <제26조> 식품 등의 검사명령, <제28조>의 보고, 임검, 검사, 수거에 따라 수입식품 등 신청 필인 외 합격증이 날인되어야 함

332) 일본 식품위생법 제4조

333)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a.html>, (검색일자: 2016. 11. 16.)

334) 일본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 식품 위생법 제27조, 제62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첨가물<sup>335)</sup>의 사용 기준은 적절한지, 유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과거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사함
-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명령검사 또는 행정검사를 실시하지만 일단 수입을 허용하고 시중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개연성이 가장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의 비용으로 등록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명령검사와 처음 수입되는 물품 등 검역소에서 수행하는 행정검사가 있음
- 물품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으면 수입통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료 또는 사료용, 공업용 등의 용도로 전환하여 별도의 세관절차를 진행하거나 보세구역 내 추가가공 후 다시 검역을 실시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여 물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
- 위반 내용은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수입자에게 통보되므로 이후의 취급은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함

## 2) 동·식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

- 일본에서는 식품, 동물, 식물, 사람을 구분하여 검역하고 있으며 각 후생노동성 검역소,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및 방역소에서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표 2-Ⅷ-9〉 일본 국가 검역

종류	검사의 대상	규제의 대상	담당 관서
검역	사람	인간의 전염병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	식품	음식	후생노동성 검역소
동물 검역	동물 및 축산물	동물 전염병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식물 검역	식물	식물 병해충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자료: 일본 식물방역소,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ndex.html>, (검색일자: 2016. 12. 30.)

335) JETRO, <https://www.jetro.go.jp/world/japan/regulations/>, (검색일자: 2016. 11. 16.)



가) 식물방역법<sup>336)</sup>

- 식물방역법은 일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수입 시 검사에서 발견이 어려운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물 종류에 대해 의무적인 검역을 규정하고 있음
  - 일반화물, 휴대품, 국제우편 등 형태와 선물이나 개인소비 등 용도에 관계없이 검역을 규제하고 있음
  - 단, 제재, 방부목재, 목공품, 죽공품, 가구집기 등의 가공품, 등나무 및 코르크, 마대, 솜, 면, 종이, 끈 밧줄 등의 섬유제품으로 식물의 포장재료로 사용된 적이 없는 제품 및 차, 건축순, 살구, 무화과, 감등 건조과일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사가 적용되지 않음<sup>337)</sup>
  
- 식물방역법상 수입규제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과 검사를 받아야만 수입이 허용되는 규제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 또는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 및 이의 포장용기를 원칙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sup>338)</sup>
  - 단, 시험 연구기관, 박물관 등의 시험 연구 및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전시 등이나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물로 사용할 시 미리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함<sup>339)</sup>
  - 이 제외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수입 금지품은 일반적으로 이동 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유전자원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거나, 검역 유해 식물(수입 검역 유해균)이지만 식물방역소장의 양수 허가를 받을 시 연구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식물검역 대상 식물류는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병해충이 없는것이 검사를 통해 입증되면 수입이 가능함
  - 기준 미달 시 소독,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하여야 하며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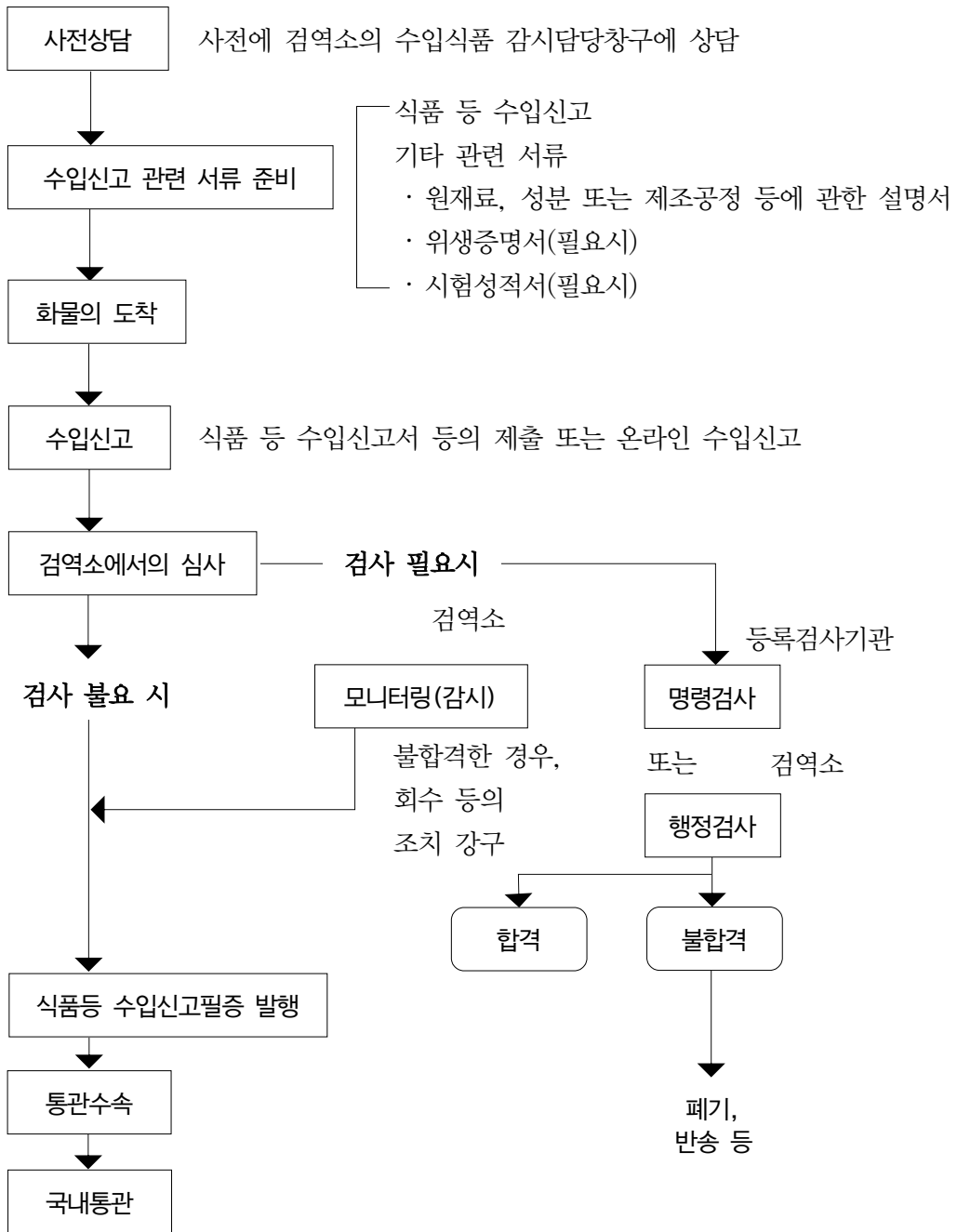
336) 일본 식물방역소, <http://www.maff.go.jp/ppsj/law/daijinkyoka/index.html>, (검색일자: 2016. 11. 1.6.)

337) 일본 식물방역소,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ifuyou/index.html>, (검색일자: 2016. 12. 20.)

338) 수입금지품 및 식물수입금지품 등, 이동제한식물 등에 대한 서류 모음 <http://www.maff.go.jp/ppsj/law/form/index.html>, (검색일자: 2016. 11. 16.)

339) 일본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 식물방역법 제6조,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 규칙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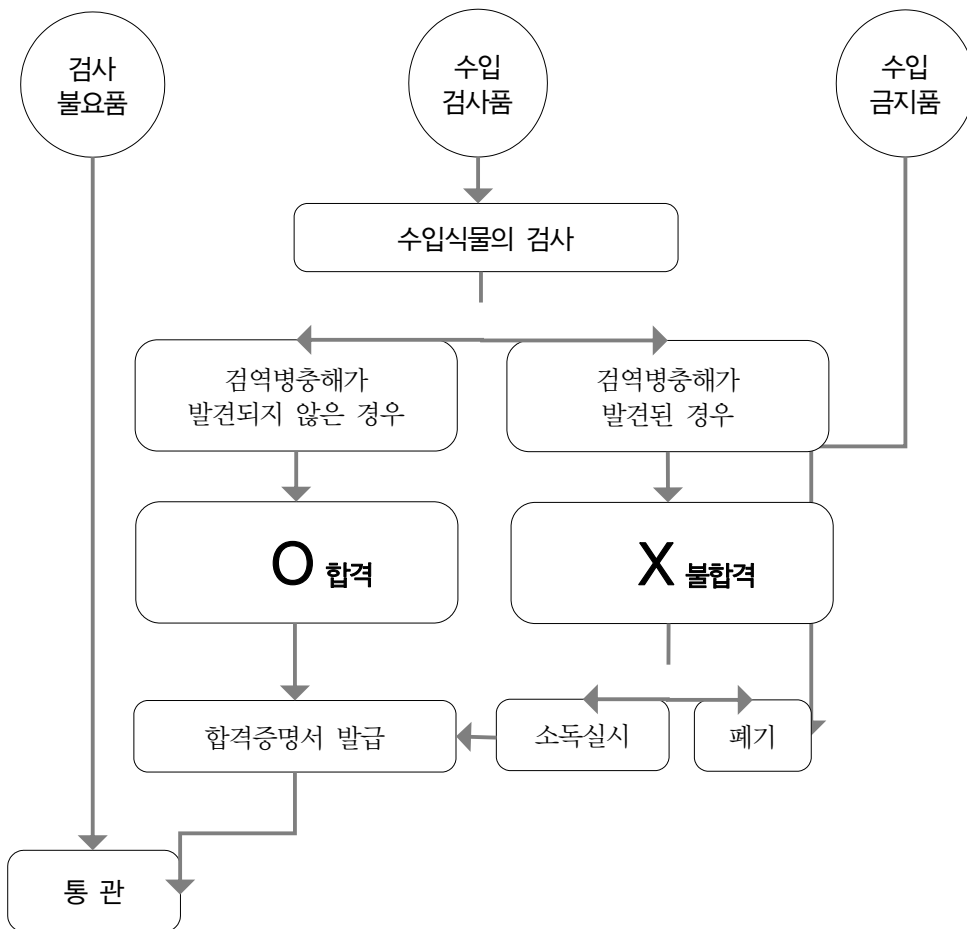
[그림 2-Ⅷ-1] 일본 식품검역 절차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topics/ysk\\_13/tp0419-1b.html](http://www.mhlw.go.jp/topics/ysk_13/tp0419-1b.html), (검색일자: 2016. 8. 12.) 및 이상엽 외 2인(2014) p.102

- 규제 대상인 식물을 수입할 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사를 받았다는 식물검사 합격 증명서 및 식물 수입인가 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340)</sup>
- 우편물이나 휴대용으로 수입되는 식물류는 수입식물류 또는 용기 포장에 식물 방역소에서 날인한 식물검사 합격증명서 등을 세관에서 확인함<sup>341)</sup>

[그림 2-Ⅷ-2] 일본 식물검역 절차



자료: 일본 식물방역소,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ikensa/index.html> (검색 일자: 2016. 12. 15); 이상엽 외 2인(2014), p. 104

34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okyo/zei/i\\_sodan1\\_13.htm](http://www.customs.go.jp/tokyo/zei/i_sodan1_13.htm), (검색일자: 2017. 1. 21.)  
 34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okyo/zei/i\\_sodan1\\_13.htm](http://www.customs.go.jp/tokyo/zei/i_sodan1_13.htm), (검색일자: 2017.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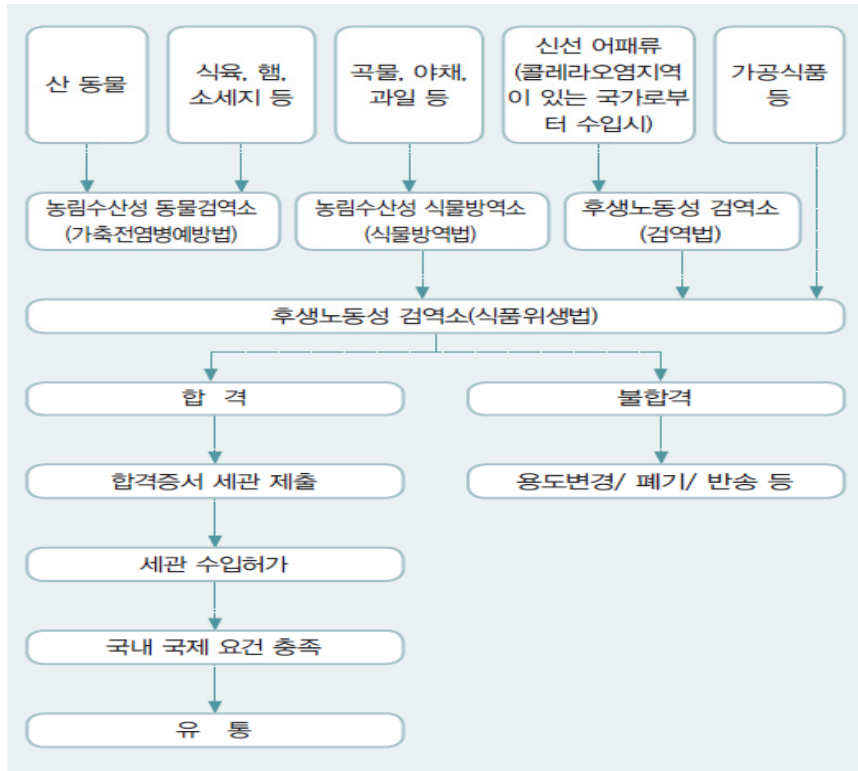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sup>342)</sup>

-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국내 침입 방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본 국내로 수입되는 가축은 수입금지 동물과 농림수산물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고 수입할 수 있는 수입제한 동물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음
  - 수입규제 대상으로는 소, 돼지, 양 등 우제류 동물 및 말, 가금류(닭, 메추라기, 꿩, 타조, 오리, 거위 등), 개, 토끼, 꿀벌 및 이들의 고기, 장기, 알 및 소시지, 햄 등의 가공품이 포함됨
  - 또한 개의 경우 광견병 또는 렙토스피라증, 고양이, 너구리, 여우, 스킨크는 광견병, 원숭이의 경우 에볼라 및 마루부루구병 등에 대한 수출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규제대상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물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검역증을 받거나 농림수산성의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수입규제 동물 중 우제류 동물 및 말의 경우 동물의 도착 예정일의 90~120일 전까지, 닭, 메추라기, 꿩, 타조, 칠면조, 오리 거위 등 가금류의 경우 도착 예정일의 40일 내지 70일 전까지 동물 수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우편이나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 또는 그 사본의 확인은 요구하지 않으나 수입물품의 포장, 용기에 동물검역소에서 날인한 '검역필'이 확인되어야 함
  - 수입검사 신청은 수입동물을 싣고 오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하는 2일 전까지 수입검사신청서를 동물검역소에 제출하여 이루어짐
-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에서는 사람, 동물 및 식물에 유해한 수입물품에 대해 위험성을 진단, 검사하고 전염병의 경우에는 소독, 격리, 도살 등의 조치를 취함

---

342) 일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법 제70조

[그림 2-Ⅷ-3] 일본 동물·식물·식품 등 검역절차 체계도



자료: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53

### 3)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입규제

- 약사법은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 기기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후생노동성에서 규제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으며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가) 규제대상 화물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거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되어 있는 의약 부외품 및化妆품을 대상으로 함<sup>343)</sup>

- 의약 부외품은 발모제, 목욕용제 등 인체에 큰 작용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정되어있음<sup>344)</sup>
- 화장품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메이크업 용품을 비롯하여 향수, 목욕 비누, 샴푸, 치약 등이 포함됨

## 나) 통관절차

-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에 의한 ‘제조 판매(제조)용 의약품 등 수입신고서(수입판매업 허가증)’, ‘의약품 등 수입보고서’등을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345)</sup>
  - 동물용 의약품 등은 약사법과 농림수산성의 동물용 의약품 등의 단속 규칙에 따라 규제함
  -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농림수산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제조 판매(제조)업 허가증’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판매) 승인지시서’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시험 연구 목적이거나 자기의 소유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확인원이 필요함
- 화장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화장품 제조 판매업 또는 화장품 제조 허가증이 있어야 함
  - 또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준 사이즈로 1품목당 24개 이내 (예를 들어 립스틱의 경우 브랜드 컬러와 상관없이 24개 이내)이면 위의 신고서 없이 특례로 수입됨
    - 인체세정용 비누, 샴푸, 치약류 등은 의약 부외품이나 개인용으로 수입 시 화장품에 해당하는 수량을 적용함
  - 제조판매업 허가기준은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과 안전관리기준을 만족해야 함

34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okyo/content/gyomu\\_topic.pdf](http://www.customs.go.jp/tokyo/content/gyomu_topic.pdf), (검색일자: 2016. 12. 21.)

34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5\\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5_jr.htm), (검색일자: 2016. 12. 21.)

345) 일본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 3, 제 14 조, 제14조의 9 제19조의 2, 제23조의 2, 제23조의 2의 3, 제23조의 2의 4 제23의 2의 5, 제23 조의 2의 12, 제23조의 2의 17, 제23조 2의 23, 제23조의 20, 제23조의 22, 제23조의 24, 제23조의 25, 제23조의 37, 제83조, 제83조의 2, 제83조의 2, 2

- 의약품과 의약 부외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 허가, 제조업 허가, 품목별 제조판매 승인과 외국 제조업자 인정에 대해 지방후생국에 수입신고해야함
  - 개인 사용용으로 수입할 시 독약, 극약 및 처방전 의약품은 1개월분 이내, 기타 의약품 및 의약 부외품은 2개월분 이내, 의료기기의 경우 의사용 의료기기는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없고 1회용 콘택트 렌즈는 2개월분 이내만 개인 수입이 가능함
- 승인기관은 후생노동성과 각 해당 독립법인이 관할하고 있으며 판매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판매허가, 외국 제조업자 인정 및 품목별 승인을 받고 지방후생국에 신고해야 함

#### 4) 워싱턴조약 해당 물품의 수입규제<sup>346)</sup>

- 멸종 위기 동식물의 수출입 등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멸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에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워싱턴조약이라 함
  - 멸종 위기 정도에 따른 동식물의 규제 정도를 동 조약 부속서에 I, II, III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애완 동물과 감상용 살아있는 동식물은 물론, 박제품,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코트 등 의류, 핸드백, 벨트, 신발, 은세공 품, 약초 등이 대상에 포함됨<sup>347)</sup>
-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한 수출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수출 허가서 및 경제산업성이 발급한 수입 승인증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하며 해당 물품은 통관절차가 가능한 세관이 지정되어 있음

34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7\\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7_jr.htm), (검색일자: 2016. 12. 21.)

347) 일본 관세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 5) 총포 도검류 등<sup>348)</sup> 의 수입규제

- 총포 도검류는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서 그 소지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무역관리령에 의해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sup>349)</sup>
- 수입물품이 일반 총포 권총 부품, 사냥용 총기 또는 경기용 총기인 경우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교부하는 총포 소지 허가증, 일반 도검류인 경우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교부하는 도검류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함<sup>350)</sup>
  - 환식 총포 등의 옛 총포 및 미술품으로의 가치가 있는 도검류의 경우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교부하는 총포 도검류 등록증 또는 등록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함

### 6) 독극물 및 마약류

- 대마의 경우 대마단속법에 의해 규제되며 후생노동대신이 교부하는 대마수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 독극물은 독극물처리법에 따르며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교부하는 독극물 수입업 등록표 및 등록품 백서(후생노동성 등이 조회 필인을 날인한 것)을 제출해야 함
  - 단, 독극물을 재수입하려는 경우 독극물 제조업 등록표 및 등록품 백서를 제출해야 함
- 각성제는 각성제 단속법에 따르며 후생노동대신이 교부하는 각성제 원료수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 마약의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교부하는 마약수입허가서, 항정신성약의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교부하는 항정신성의약품수입허가서, 마약 등 원료수입업자 면허증의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

348)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0-3-1 별표 1

349) 일본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제3조의 4, 제3조의 5, 제3조의 6, 제4조, 제14조,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35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8\\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8_jr.htm), (검색일자: 2016. 12. 21.)



- 기타 휴대수입의 경우 휴대수입허가서, 후생노동성 약사감시원에 의해 확인필의 인장이 날인된 의약품등 수입보고서, 마약항정신성의약품 원료를 후생노동성에 신고하고 수입 시 마약항정신성의약품 원료 수입계를 제출해야 함
- 아편의 경우 아편법에 따르며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 및 마약대책과장이 교부하는 아편수입위탁증명서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교부하는 양귀비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 나. 수출규제

### 1) 타 법령상 수출규제

- 특정 물품을 수출할 시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규제는 관세법 수출허가제와 결부시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sup>351)</sup>
- 화물을 수출할 경우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출에 관한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고, 수출신고에 따른 심사 또는 검사 시에 그 취지를 세관에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함<sup>352)</sup>

35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5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501_jr.htm), (검색일자: 2016. 12. 22.)

35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5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501_jr.htm), (검색일자: 2016. 12. 22.)

〈표 2-Ⅷ-10〉 수출규제 타 법령 일람표

근거법령	주요 품목	주관 부처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수출 무역 관리령	무기와 화학무기, 마약, 워싱턴조약 해당 물품 특정 유해 폐기물 등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 무역 심사과 무역 관리과
문화재 보호법	중요 문화재 또는 중요 미술품 천연기념물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	문화청 문화재부 전통문화과
조수보호 및 수렵 적정 화에 관한 법률	새, 짐승과 그 가공품, 조류의 알 등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등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마약 대책과
대마단속법	대마초, 대마초제품	
아편법	아편, 양귀비 열매의 껍질	
각성제 단속법	각성제, 각성제 원료	
광견병 예방법	개, 고양이, 너구리, 여우, 스컹크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우제류 동물, 말, 닭, 오리 등 가금류, 토 끼, 꿀벌, 이 동물의 고기, 소시지, 햄 등	
식물 방역법	현화(종자)식물, 양치류 또는 선태류(이 끼류)에 속하는 식물, 유해식물(세균, 기 생식물 등), 유해동물(곤충, 진드기 등)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도로운송차량법	중고 자동차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자동차 정보과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5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501_jr.htm), (검색일자: 2016. 11. 19.)

## 2) 중고자동차 수출규제

- 일본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성(운수지국 또는 자동차 검사 등록사무소)에서 수출 말소 가등락을 신청하여 수출 말소 임시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함

- 이미 일시적인 말소 등록을 받은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성(운수지국 또는 자동차 검사 등록사무소)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시 말소 등록 신청서를 반납한 후 수출 예정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함
- 세관에 수출 신고 시에는 이러한 인증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수출 말소 임시등록증명서 또는 수출 예정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4 품질표시 관련제도

- 일본은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외위법과 기타 법령에 의해 각 소관부서에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한 후 국내 판매단계에서 또한 별도의 규제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품질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제품별로 인증제도를 두고 있음
  - 인증 관련기관으로 농림수산물 및 식품, 사료, 살충제 등에 대한 농림수산물성, 허위 과장 표시와 성분표시, 소비자 안전에 관하여 소비자청, 유해물질에 대해 후생노동성, 기타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가스안전 등의 품질에 관하여 경제산업성 등에서 소관하고 있음<sup>353)</sup>

353)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164; 이상엽 외 2인(2014), p.115

## 가. 농산물 품질표시법(JAS법)<sup>354)</sup>

### 1) 개요

-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법’으로 불리며 농림수산물의 규격화로 농산물의 생산 및 물류과정을 원활히 하고 품질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은 사업자가 임의로 일본농림규격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 부착을 허용하는 JAS규격제도 및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품질을 표시하도록 하는 품질표시기준으로 구성됨
  - 이 법하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품목별 규격기준 및 품질표시기준을 정한 농림수산성 고시가 있음<sup>355)</sup>

### 2) 규제대상 및 규제 내용

- JAS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은 식료품 및 유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농림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으로서 정령에서 정한 것으로 하고 있음
  - 정령에서 정한 물품은 등심초(골풀)제품, 생사(生糸), 일반목재, 압각(押角)목재, 이부(耳付)목재, 전주, 침목, 합판(항공기용 제외), 마루목, 목탄, 농축산물로 만든 사료 등을 말함
  - 주세법에 의한 주류 및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은 제외됨
- JAS법의 대상이 되는 식품의 경우 가공했을 시 품질표시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식품 첨가물, 저장 방법, 용기 재질 등의 규제), 계량법(용량, 성분 정렬 등의 규정), 경품표시법(마약 광고의 금지 등), 건강증진법(영양 표시 기준 등) 등을 준용해야 함

354)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164; 이상엽 외 2인(2014), p. 115

355) 관련 영, 규칙 및 고시 링크 확인, 일본 농림수산부, [http://www.maff.go.jp/j/jas/jas\\_gaiyou.html](http://www.maff.go.jp/j/jas/jas_gaiyou.html), (검색일자: 2016. 8. 22.)

## 가) JAS마크 인증

- JAS법에서 규정하는 성분, 품질, 생산방법, 유통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한 규제 대상물품에 대해서 JAS마크를 부착하며 대상품목에 따라 일반마크, 특정마크, 유기마크, 생산정보마크, 정온관리유통마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356)</sup>
  - 일반마크는 품위, 성분, 성능 등 일반 JAS규격을 충족하는 식품이나 임산물 등에 부착함
  - 특정 마크는 특별한 생산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정 JAS규격을 충족하는 식품이나 동종의 표준 제품에 비해 품질 등에 특색이 있는 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에 부착함
  - 유기마크는 유기농 규격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에 부착함
  - 생산정보마크는 생산정보 공표 규격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투여 등의 정보가 공표되는 가공식품 등에 부착함
  - 정온관리유통마크는 제조에서 판매까지 유통과정 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유통시키는 가공식품에 부착함
- JAS법에 의한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등록 인증기관(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받은 기관)에서 제조시설, 품질 관리, 제품 검사, 생산 행정 관리 등이 인증마크를 받을 만큼 충분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임<sup>357)</sup>
-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품목별 규격검사를 수행하여 합격 시 농림수산성에 인증 등록을 요청하고, 농림수산성에서 이를 등록하면 인증서가 발급됨

## 나) 품질표시기준

- 수입자, 판매자 등은 이 법의 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실시하여야 하며<sup>358)</sup> 품질표시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공통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시기준으로 신선식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개별기준은 식음료 품별 특성에 따른 기준임

356) 일본 식물방역소,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index.html](http://www.maff.go.jp/j/jas/jas_kikaku/index.html), (검색일자: 2016. 8. 20.)

357) 등록 인증기관 목록 확인, 일본 농림수산부,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kikan\\_itiran.html](http://www.maff.go.jp/j/jas/jas_kikaku/kikan_itiran.html), (검색일자: 2016. 8. 22.)

358) JAS법 원문, <http://law.e-gov.go.jp/htmldata/S25/S25HO175.html>, (검색일자: 2016. 8. 22.)

- 구체적인 표시내용, 표시 방법 등은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신선식품(生鮮食品) 품질표시 기준, 유전자 변환에 관한 표시 기준, 현미 및 정미 품질표시기준, 수산물 품질표시기준 등 음식료품의 종류에 따라 농림수산물성 또는 소비자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 나. 가정용품 품질표시법<sup>359)</sup>

-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가정용품의 수입에 대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 합성수지가공품 품질표시규정, 전기기계기구 품질표시규정, 잡화공업품 품질표시규정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이 법에 의한 규제대상 물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표시하는 사업자는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서 규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함
  - 위반 시 소비자청 등 소관부서는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보완요구를 명령하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함
- 이 법은 크게 섬유제품, 합성수지가공품, 전기기계기구, 잡화공업품으로 구분하여 품질표시를 규제하고 있음
  - 전기세탁기, 전기밥통, 전기청소기, 냉장고, 에어컨 등은 전기기계기구의 표시 내용을 따라야 하며 보온병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잡화의 품질표시도 이 법에 따를 것을 규정함
  - 주택용 세정제·주방용 표백제·클렌저 등에는 ‘위험’ 주의환기 표시를 해야 하며 강화유리제기구·내열유리기구 또는 접착제 등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관계당국(소비자청 등)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절한 표시를 할 것을 명령하며, 위반 사업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명칭 및 위반사실을 공표, 판매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함

---

359)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164; 이상엽 외 2인(2014), p. 116

### 다. 유해가정용품 규제법<sup>360)</sup>

- 유해가정용품 규제법은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sup>361)</sup>로서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가정용품을 규제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가정용품 중 기저귀, 영유아용 의류, 속옷, 침구, 가정용 세정제, 가정용 접착제 등 주로 소비자의 생활용 제품이 해당됨
- 수은화합물 및 기타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특정 가정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가정용품의 판매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제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가정용품이 시장에 나온 후에는 시중검사 등을 통하여 감시함

### 라. 기타 관련 법<sup>362)</sup>

#### 1) 소비생활용품 안전법

- 소비생활용품 안전법(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은 소비생활용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제도, 제품 사고에 관한 제품 사고정보 보고·공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나, 식품위생법·약사법·소방법·독물 및 극물단속법·고압가스 안전법 등 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함

360)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178

361) 일본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htmldata/S49/S49F03601000034.html>, (검색일자: 2016. 12. 22.)

362)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 18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기 특정 제품 수입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특정 제품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할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는 내용도 함께 기술해야 함
- 사업개시 신고를 한 특정 제품의 수입자는 스스로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정 제품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등록검사 기관에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함

## 2) 전기용품 안전법

- 전기용품에 의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 전기용품을 지정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율적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함
  - 전기용품 중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감전, 화재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전선·배선기구·전열기구·전동력응용기기 등 115개 품목을 특정 전기용품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지정하여 비교적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 전기용품의 수입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산업성에 사업신고를 해야 하고, 전기용품의 기술상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검사 한 후 해당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함



## IX. 행정구제제도

### 1 행정구제제도 개요

---

#### 가. 개요

- 2016년 행정불복심사법 및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2016년 3월 31일까지 제기된 불복은 기존의 불복절차를 따르며 2016년 4월1일부터 제기된 불복의 경우 개정된 행정불복심사법 및 행정소송법의 절차를 따르게 됨
- 일본의 행정구제제도는 재조사청구(기존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리고 소송의 세단계로 이루어지며 개정된 법에 따라 재조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가 가능함<sup>363)</sup>
  -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내린 판단에 불복할 시 처분청인 세관장에 대해 재조사청구(기존의 이의신청)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재무 대신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재무대신은 관세불복심사회에 자문을 구해 심사청구사항을 처리함

---

36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4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401_jr.htm), (검색일자: 2016. 12. 22.)

- 일본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까지의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불복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관세가 국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는 관세법과 행정불복심사법의 절차에 따르며 관세를 제외한 내국소비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국세불복심판소장에 대해 이루어지게 됨
- 따라서 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의 경우 국세통칙법 <제75조의 4>에 따라 세관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국세심판소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같은 사전구제제도가 없음

## 나. 행정구제 관련법

- 일본의 관세 불복에 관한 내용은 관세법상 <제8장 제89조>에서 <제93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불복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불복심사법과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관세법 <제89조> 및 <제93조>에는 관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행정불복심사법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일본의 구제절차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sup>364)</sup>
- 관세법 통달 <제9장>에서는 재조사 청구와 관련한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 세관장의 처분범위, 재조사청구의 절차, 결과 통지 등에 대한 내용 및 행정불복심사법과 관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행정불복심사법에서는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절차, 심리절차, 행정불복심사회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송과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364) 일본 관세법 제93조에서는 관세의 확정 또는 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 처분, 제69조 2 제3항 수출금지화물 또는 제69조 11 제3항 수입금지화물 규정에 의한 통지는 심사청구의 재결 후가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기타 재무대신에 대한 심사청구 시 재무대신이 자문을 하는 기관인 관세불복 심사회의 운영과 구성은 관세불복심사회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sup>365)</sup>
  - 관세불복심사회는 관세법 <제91조>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재결을 위한 심리를 담당함
  -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 등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 등을 심사청이 심리원으로 지명함
  - 심리원은 처분청 심사청구인의 제출 서류에 의한 심리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청에 제출함

## 2 재조사청구<sup>366)</sup>

### 가. 재조사청구 절차

#### 1) 신청 시기

-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재조사청구라고 하고 이에 대한 답을 결정이라고 함<sup>367)</sup>
- 재조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조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 개정된 법에서는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선택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조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무대신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이때 심사청구의 신청 또한 재조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하도록 함

365) 일본 대사관 내부자료 「行政不服審査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2016. 10. 26.

366) 기존의 이의신청 절차

367) 재조사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은 행정불복심사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2) 재조사 청구서 작성방법

- 재조사 청구서(C-7000<sup>368</sup>)의 기재사항은 행정불복심사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함
  - 재조사 청구서에는 재조사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재조사 청구에 관한 처분의 내용, 처분(해당 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청구의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함

## 3) 세관 처분의 교시

- 심사청구, 재조사청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교시를 해야 하며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과 기한을 서면으로 교시해야 함
- 관세의 확정 또는 징수에 관한 처분 등의 불복에 대해서 세관은 C-7007을 사용하여 교시함
  - 수입금지 화물에 대한 불복에 대해 C-7008을, 기타 교시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대해서는 C-7009을 사용하여 교시함

## 4) 세관장의 처분 범위 및 기타 관련 내용

- 관세통달 <89-1>에 따라 세관장은 세관장이 세관장의 이름으로 내리는 처분, 물품의 수용 및 유치, 관세법 <제118조 제5항> 범죄 화물을 몰수하지 않는 경우의 관세 징수, 동법 <제134조 제4항> 내지 <제6항> 영치물건 또는 압류물건의 반환 등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관세법 <제69조의 2 제3항> 수출금지 화물 및 <제69조의 11 제3항> 수입금지 화물에 해당하는 취지의 통지 및 규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처리할 수 있음
  - 단, 관세법 <제11장>의 범칙사건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처분하지 않음

---

368) C-7000서식,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7000k-1.pdf](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7000k-1.pdf), (검색일자: 2016. 12. 22.)

- 재조사가 가능한 처분에 대해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교시하지 않은 경우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조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봄
  - 처분청은 재조사청구가 된 날<sup>369)</sup>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달을 경과해도 해당 재조사청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처분에 대해 즉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교시해야 함
- 재조사청구가 법정기간을 경과했을 시 또는 재조사청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됨
- 행정불복심사법 <제5조>에서는 재조사청구를 신청한 경우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 후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이의신청 절차<sup>370)</sup>

### 1) 신청시기

-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대해 불복할 수 있고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하며 신청에 대한 답은 결정이라고 함<sup>371)</sup>
-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불복심사법<sup>372)</sup> <제45조>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이의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결정 등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69) 제61조에서 대체 준용하는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결함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을 시 해당 결함이 보완된 날

370) 본 내용은 2016년 3월 31일자까지의 이의 신청에 한 해 적용되는 내용임

371) 일본 세관에서는 법 개정으로 2016년까지 세관장에 대한 일차적인 불복신청은 재조사 청구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2016년 이전의 일차적인 불복신청은 이의신청이라고 명명함

372) 1962년 법률 제163호

## 2)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C-7000<sup>373)</sup>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 C-7000의 기재사항은 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며 재조사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재조사청구에 관한 처분의 내용, 처분(해당 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청구의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함

## 3) 세관장의 처분 범위 및 기타 관련 내용

- 관세통달 <89-2>에 따라 세관장은 세관장이 세관장의 이름으로 내리는 처분, 물품의 수용 및 유지, 관세법 <제118조 제5항> 범죄 화물을 몰수하지 않는 경우의 관세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음
- 또한 동법 <제134조 제4항> 내지 <제6항> 영치물건 또는 압류물건의 반환 등에 대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관세법 <제69조의 2 제3항> 수출금지 화물 및 <제69조의 11 제3항> 수입금지 화물에 해당하는 취지의 통지 및 규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음
- 행정불복심사법<sup>374)</sup>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없음
  - 단 세관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교시하지 않았거나 이의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로 함

---

37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7000k.pdf](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7000k.pdf), (검색일자: 2016. 10. 29.)

374) 1962년 법률 제163호

### 3 심사청구(375)

-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정 후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시 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재무대신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음
  - 심사청구는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정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할 시 청구할 수 없으며 재조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의 처분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함
  
- 세관장의 결정에 대해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시 세관장의 처분 후 3개월 이내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음
  
-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시하지만 처분청 등을 통해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음
  - 구두 심사청구 시 청구서에 기재하는 심사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진술해야 하며 행정청이 녹취하여 진술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날인하게 함
  - 처분청 등을 통해 심사청구를 할 시 심사청구인은 처분청 등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진술하며 이때 심사청구는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제출한 때, 혹은 구두로 진술한 때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
  
- 재무대신은 심사청구서의 제출받은 때에 처분에 대해 조사·심리하여 재결서 등본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청구에 대한 답을 재결이라 함
  -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심사청구에 따른 처분의 내용, 심사청구에 관한 처분(해당 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통지받은 날짜,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심사 청구의 날짜를 기재해야 함
  
- 재조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행정불복심사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이 있으며, 각각의 청구는 각 법률에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관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심사청구는 신청이 불가능함

375) 심사청구는 2016년 행정불복심사법 개정 후와 개정 전 내용이 유사하며 절차적으로 큰 변화는 없음

#### 4 소송376)

---

- 소송은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르며 재무대신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단, 관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관세 확정 혹은 징수에 대한 처분 또는 체납 처분 및 <제69조의 2 제3항> 수출금지화물 또는 <제69조의 11 제3항> 수입금지화물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의 재결 후가 아니면 소송 제기는 불가능함
  - 따라서 관세법 <제93조>에 규정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송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재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

376) 일본 대사관 내부자료 「行政不服審査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2016. 10. 26.



## X. 벌 칙

### 1 벌칙 개요<sup>377)</sup>

---

- 관세 범죄에 관한 형벌은 관세법 <제10장> 벌칙, <제108조의 4>에서 <제118조> 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절차는 <제11장>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일본 관세법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두지 않아 관세 관련 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일본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일시적으로 두었지만 1960년대에 전부 삭제하였음<sup>378)</sup>
- 일본의 형벌은 기본적으로 확정 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sup>379)</sup>
  - 일본에는 관세법을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 벌칙조항 내에 범죄 관련 부과금이 일정 액수를 초과할 시 벌금의 액수를 높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377) 정재호·김수영·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378)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379) 정재호 외 2인(2014), p. 54

- 일본 관세법에서는 범죄 행위유형별로 예비범,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교사자나 방조범에 대한 규정은 일본 형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양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 벌금형만을 부과하고 있음
- 관세법에서 벌칙의 형량은 최근 강도 높게 개정되었음
- 예를 들어 수출금지물품의 수출 시 마약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였으나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그 강도를 높여 처벌하게 되었음

## 2 관세 형벌

---

### 가. 일본 관세법상 관세 형벌의 특징

#### 1) 확정형 벌금제, 징역 및 형의 병과

- 일본의 관세 형벌은 원칙적으로 배수형 벌금제가 아닌 확정벌금형 제도를 선택하고 있음<sup>380)</sup>
-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특수가중처벌법과 같은 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관세포탈죄<sup>381)</sup>와 밀수품취득죄<sup>382)</sup>에 있어서는 범죄 관련 부가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수형 벌금제를 적용하고 있음<sup>383)</sup>
- 예를 들어 관세포탈죄의 경우 관세포탈 금액의 10배가 5백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은 5백만엔을 초과하고, 포탈·환급받은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380) 정재호 외 2인(2014), p. 54

381) 일본 관세법 제110조

382) 일본 관세법 제112조

383) 법무법인 광장(2009)

-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일부 관세 형벌의 경우 강도 높은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수출입 금지화물의 수출입의 경우 기존의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을 바꾸었음
- 일본의 관세법은 대부분의 처벌규정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sup>384)</sup>

## 2) 양벌규정<sup>385)</sup>

- 일본은 관세법 <제117조>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벌규정<sup>386)</sup>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을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해 금지품 수출입죄, 조세포탈죄, 밀수품 취득죄 등의 위반 행위의 처벌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부과함<sup>387)</sup>
- 인격이 없는 사단 등(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진 것)은 법인으로 간주함<sup>388)</sup>

## 3) 예비, 미수범 등의 처벌

- 일본 관세법에서는 범죄행위에 따라 예비,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사와 방조행위에 대한 규정은 일본 형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sup>389)</sup>
  - 일본 형법 <제61조>에는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을 과하고, 교사자를 교사한 자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규정하고 있음

384) 정재호 외 2인(2014), p. 54

38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batsujo.htm>, (검색일자: 2016. 11. 22.)

386) 양벌규정은 일본 관세법 제108조의 4, 제112조, 제112조의 2, 제113조의2, 제114조 2, 제115조의 2 및 제116조에 적용됨

387) 일본 관세법 제117조 제1항

388) 법무법인 광장(2009)

389) 정재호 외 2인, (2014), p. 55

- 동법 <제62조>에서는 정범을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하며, 중범을 교사한 자에게는 중범의 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관세법에서는 예비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범에 비해 낮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음
  - 관세 포탈죄의 경우 예비범도 기수범으로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였으나 정범에 비해 낮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미수범에 대해서는 주요 관세법의 위반행위, 즉 수출입금지 물품의 수출입행위와 관세의 포탈죄, 무허가 수출입 죄에 대해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나. 관세법상 실질범(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sup>390)</sup>

### 1)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sup>391)</sup>

- 일본의 수출금지 물품은 일본 관세법 <제69조의2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 물품은 마약, 아동 음란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sup>392)</sup>를 조성하는 물품 등임
- 관세법 <제108조의 4>에 따라 수출금지 화물 중 마약을 수출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수출금지 물품 중

---

390) 일본에서는 관세법에 대한 분류를 실질범(미수범)과 형식범(질서범)으로 구분하고 있음

391) 일본 관세법 제108조의4

392)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1.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개인의 업무에 관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상품의 용기 혹은 포장 등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고,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해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로를 통하여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써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고,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해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태를 제외)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고, 양도 혹은 대여를 위해 전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아동포르노, 특허권 등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조성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있음<sup>393)</sup>

-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끝마치지 못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을 부과함<sup>394)</sup>
  - 마약 수출을 예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있음
  - 마약 외 수출금지물품 수출을 예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2) 수입금지 물품의 수입<sup>395)</sup>

- 수입금지 물품은 관세법 <제69조의11 제1항 1>내지 <제69조의 11 제1항 10>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수출금지 물품을 포함하여 그 외에 총기류, 폭발물, 화약류, 위조화폐, 풍속을 해하는 서적·도화·조각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입금지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수입금지 물품 중 마약, 총기, 폭발물, 화약류, 화약병기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위조화폐 등<sup>396)</sup>을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풍속을 해하는 서적·도화·조각물, 아동포르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 조성 물품<sup>397)</sup>을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393) 정재호 외 2인(2014), p. 56

394) 정재호 외 2인(2014), p. 56

395) 일본 관세법 제109조

396) 일본 관세법 제69조의11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397) 일본 관세법 제69조의11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 미수범에 대해서는 기수범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3) 수입 금지품의 운송 및 보세구역 장치

- 수입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 또는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물품이 관세법 <제69조의 1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제5호의 2>, <제6호>의 화물<sup>398)</sup>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함
- 미수범은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며 예비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물품이 관세법 <제69조의 11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sup>399)</sup>에 해당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함
- 미수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4) 관세포탈죄<sup>400)</sup>

- 관세법 <제110조>에서는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환급을 받은 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에 대해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sup>401)</sup>
  - 본 위반행위에 있어 통관업자의 위조 등 부정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통관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398) 마약, 약물, 총류, 화학물, 화학무기류, 병원체, 화폐 및 우편, 카드 등

399) 아동포르노, 특허권관련 물품, 부정경쟁을 조성하는 물품 등

400) 일본 관세법 제110조

401) 정재호 외 2인(2014), p.58

- 관세포탈 금액의 10배가 5백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은 5백만엔을 초과하고, 포탈·환급받은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함

### 5) 무허가 수출입<sup>402)</sup>

-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한 자를 비롯하여 신고 또는 검사에 있어 위조한 신고 혹은 증명을 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을 수출입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함<sup>403)</sup>
  - 통관업자가 위조한 신고·증명 또는 위조한 서류제출에 의해 화물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통관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함
- 무허가 수출입과 관련하여 미수범에 대해서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함
  - 예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중대한 과실로 무허가 수출입을 한 자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함<sup>404)</sup>

### 6) 밀수품 취득죄<sup>405)</sup>

- 관세법 <제112조>에서는 밀수품의 취득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08조의 4>, <제109조>, <제109조의 2>, <제100조>와 관련하여 범죄와 관련된 화물에 대해 이를 알고 운반, 보관 또는 유상·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의 매개·알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함<sup>406)</sup>

---

402) 일본 관세법 제111조

403) 정재호 외 2인(2014), p. 58

404) 일본 관세법 제116조

405) 일본 관세법 제112조

406) 정재호 외 2인(2014), p. 59

- 밀수품 취득과 관련된 관세 또는 관세 환급액의 5배가 3백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벌금을 3백만엔을 초과, 그 관세 또는 관세 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규정함
- 관세법 <제111조 1항>의 무허가 수출입 물품을 운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함

### 7) 몰수와 추징<sup>407)</sup>

- 수출입금지 화물 중 특정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 수입하려는 자에게 환적을 명할 수 있음
  - 몰수 대상인 수출금지 화물은 마약,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행위 조성 물품<sup>408)</sup> 등임
- 몰수 대상이 되는 수입금지 물품은 마약, 총기, 폭발물, 화약류, 화약병기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위조화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 조성 물품<sup>409)</sup>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상 범죄행위와 관련된 화물과 그러한 범죄행위용으로 제공한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밀수화물 운반<sup>410)</sup>과 관련된 화물을 몰수함
- 몰수의 대상 행위는 수출입금지 화물의 수출입죄<sup>411)</sup>, 수입금지 화물을 보세지역에 보관하는 등의 죄<sup>412)</sup>, 관세포탈죄<sup>413)</sup>, 무허가 수출입죄<sup>414)</sup>를 포함함
- 몰수하여야 하는 범죄화물(선박, 항공기 제외)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이루어진 때의 물품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함

---

407) 일본 관세법 제118조

408) 일본 관세법 제69조의 2 제1항 1호, 3호, 4호

409) 일본 관세법 제69조의 11 제1항 1호 내지 6호, 9호, 10호

410) 일본 관세법 제112조

411) 일본 관세법 제108조의 4 및 제109조

412) 일본 관세법 제109조의 2

413) 일본 관세법 제110조

414) 일본 관세법 제111조



- 범죄화물 또는 운반기구의 몰수 또는 범죄화물의 몰수를 대신하는 추징이 이루어진 때에는 본 범죄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표 2-X-1〉 관세법상 실질범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	위반 행위	처벌 내용	비고
제108조의 4	제1항. 수출금지물품 중 마약의 수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2항. 수출금지물품 중 마약을 제외한 물품 (아동포르노 등)의 수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109조	제1항. 수입금지물품 중 마약, 폭발물, 위조지폐 등의 수입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2항. 수입금지물품 중 음란물 등을 수입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109조의 2	제1항. 수입금지물품 중 마약, 폭발물, 위조지폐, 등 보세구역 장치 또는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2항. 수입금지물품 중 음란물, 특허관련 등 보세구역 장치 또는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110조	관세포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가중처벌조항 ○ - 예비: 기수처벌 - 미수: 기수처벌
제111조	무허가 수출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중대 과실 인정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감경처벌
재112조	밀수품 <sup>1)</sup> 취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가중처벌조항 ○

주: 1) 금지품 수출입 행위를 밀수로 보고 있음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batsujo.htm>, (검색일자: 2016. 10. 2.)

**다. 관세법상 형식범(질서범)에 대한 처벌규정<sup>415)</sup>**

-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해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인 경우 형식범이라고 함
- 일본의 관세법상 형식범은 용도의 사용<sup>416)</sup>, 개항 불가 시 입항하는 행위<sup>417)</sup>, 제 특례신고서 미제출<sup>418)</sup>, 입출항 관련 서류제출 등 위반<sup>419)</sup>, 보세구역 관련 절차 위반<sup>420)</sup>, 전문위원의 비밀누설<sup>421)</sup>, 중과실<sup>422)</sup>에 해당함

**〈표 2-X-2〉 관세법상 형식범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	위반 행위	처벌 내용
제112조의 2	세금 감면·경감세율 적용 화물 용도 외 사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113조	개항 불허 시 허가받지 않고 입항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제113조의 2	특례신고서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제114조 및 제 114조의 2	입출항 관련 허위서류 제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제115조 및 제 115조의 2	보세구역 관련 절차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제115조의 3	전문위원으로서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제116조	중대 과실로 관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 113조, 제114조, 제114조의2(제1호 및 제2호 제외), 제115조, 제115조의 2(제1호, 제3호, 제4호 제외)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각조에 해당하는 벌금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batsujo.htm>, (검색일자: 2016. 11. 16.)

415) 일본 관세국에서는 관세법에 대한 분류를 실질범(밀수범)과 형식범(질서범)으로 구분하고 있음  
 416) 일본 관세법 제112조의 2  
 417) 일본 관세법 제113조  
 418) 일본 관세법 113조의 2  
 419) 일본 관세법 제114조 및 제114조의 2  
 420) 일본 관세법 제115조 및 제115조의 2  
 421) 일본 관세법 제115조의 3  
 422) 일본 관세법 제116조

## 라. FTA 관련 처벌

### 1) EPA법상 처벌규정

- 일본은 우리나라의 FTA 특례법과 같이 관세법과 별도로 EPA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형태의 법률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단, EPA증명법을 두어 EPA 계약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EPA법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원산지 증명서의 제반 변경사항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서를 받은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 아닐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2중 특정 원산지 증명서에 허위 기재 표장을 잘못 사용한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특정 원산지 발급 검사 관련 내용의 누설, 발급 사무에 관한 내용 누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2) 관세법상 처벌규정

- 관세법 <제68조><sup>423)</sup>와 관련하여 EPA 세율 적용 시 세관 제출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제출 요건 등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EPA 증명법을 제외한 FTA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총칙에 따르며 관세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423)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시의 제출서류

### 3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 가. 조사<sup>424)</sup>

-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는 관세법 <제11장 제1절> 범칙사건의 조사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관 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미리 발하는 허가장에 따라 임검, 수색(搜索)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 시급한 경우, 범칙사건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장은 다른 세관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러한 처분을 허가함
  - 실제로 범칙사건이 존재하고 범칙사건의 종료 시에 발각된 사건에 대해 증거수취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범칙현장에서 임검, 수색 또는 압류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범칙 사실을 증명할 만한 물건을 신변에 숨기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시 당해 물건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편물, 서신 등에 관한 서류를 압류할 수 있음
- 임검, 수색 또는 압류는 일반적으로 일출에서 일몰까지 이루어지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증에 야간 집행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 야간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질문, 검사, 영치, 임검, 수색 또는 압류를 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창고 등 기타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입회시켜야 함
  - 세관 직원은 질문, 검사, 영치, 임검, 수색 또는 압류를 한 때에는 조서를 만들고 질문받은 자 또는 입회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하나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 취지를 부기해야 함
  - 영치 또는 압류 처분을 한 때에는 목록을 만들어 영치 또는 압류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또는 이러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함

424) 일본 관세법 제11장 제1절

- 세관 공무원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 또는 해상 보안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세관의 관할 구역 외에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음
- 세관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범칙 혐의 사건을 발견하거나 수사한 때에 즉시 이를 세관에 통지하여야 함

#### 나. 처분<sup>425)</sup>

-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관세법 <제11장 제2절> 범칙사건의 처분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관공무원은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에 관한 관세범칙사건<sup>426)</sup>과 관련하여 당해 거짓 기타 부정행위의 조사에 대해 범칙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함
  - 신고납세방식 적용과 관련한 관세범칙사건을 제외한 기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즉시 조사결과를 세관장에 보고하여야 하나, 범칙 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범칙 혐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증가 은폐 또는 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함
- 세관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해 범칙이 심증을 얻은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에 납부해야 할 취지를 통고해야 함
  - 다만, 징역형에 처하여야 하는 경우 및 범칙자가 통보 취지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함
  -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2일 이내에 통보 취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425) 일본 관세법 제11장 제2절

426) 일본 관세법 제110조 제1항의 기수범, 미수범 및 방조자 포함

## XI. AEO제도<sup>427)</sup>

### 1 AEO제도 개요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제도(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는 국제 물류의 보안 확보 및 원활화를 도모하고, 위험화물의 보안 관리 및 규정 준수의 체제가 정비된 자에 한해 세관 절차를 단순화 및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일본은 WCO의 SAFE WORK의 AEO 도입·구축 지침을 채택하여 2006년 3월에, 수출자를 대상으로 AEO를 실행함
  - 2007년에는 관세사 및 운송업자로, 2008년 4월에는 제조업자로 각각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약식신고(Simplified Declaration System)대상 화물지정의무가 면제되고 물품이 선적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공인업자(Authorized Operators)에게 적용되는 약식신고 혜택 또한 확대됨<sup>428)</sup>

---

42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kaizen.htm>, 검색일자 2016. 10. 22.

428) 강성훈·김미영·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공인을 받은 수입자의 경우에는 화물 인수 후 납세신고가 가능하고, 수출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화물에 대해 수출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본 AEO의 공인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창고업자, 보세운송인, 관세사, 제조업자 등 6가지임
- 일본 세관은 다음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 위 6가지 대상에 대해 공인하고 있음<sup>429)</sup>
  - 제출된 준수규칙이 관세법 등의 규정에 일치이며, 법령준수규칙, 각종 지침 및 기타 사내 규정에 대해 실효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부문(업무를 수행하는 공장, 창고, 영업소 등)에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규칙 등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법령준수규칙 등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 사내에서 정보의 전달 및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비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내부감사 체제와 직원과 관련된 AEO에 대한 사내 교육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
  - 화물의 보관·출하 장소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2 AEO 공인 기준

- AEO 공인 기준은 법규 준수도(Appropriate compliance records), 전자통관 시스템의 운영(Capability to use e-system for Customs procedures), 재정 건전성(Capability to conduct related operations properly), 법규 준수규칙(法令遵守規則, Establishment of a Compliance Program) 등 4가지 기준임
  - 수입자의 경우 관세법 <제7조의 5> 승인요건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법규 준수규칙의 기재사항, 수출자의 경우 관세법 <제67조의 4> 승인요건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법규준수규칙의 기재사항 등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429)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q1-2.htm>, (검색일자: 2016. 10. 22.)

### 가. 법규 준수도<sup>430)</sup>

- 법규 준수도는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관세법 및 관세관계 법령, 통관업법, 국세 관련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조건임
  
-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법규 준수도는 관세 및 기타 국세 관련법 위반, 제세금의 체납, 폭력 관련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
  - 관세법 기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 그 형의 집행의 종료일 또는 집행의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또는 국세범칙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기타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의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의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의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폭력 관련 집단의 일원이거나, 관세 관련법을 위반한 임원, 법인, 대리인,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 특례 수입자의 승인이 취소 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수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 준수도는 관세법,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관세법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집행 종료일부터 집행의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 중 수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에 처해져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의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3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q1-1.htm>, (검색일자: 2016. 10. 22.)



- 관세법 기타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의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의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의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폭력 관련 집단의 일원이거나 관세 관련법을 위반한 임원, 법인, 대리인,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 특정 수출자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특정 보세승인자로 인정받기 위한 법규 준수 요건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
    - 특정 보세승인자의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보세장치장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제43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특정 보세운송업자는 공인관세사 또는 특정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공장의 피허가자로 첫번째 특정 보세운송 허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 지정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로서 관리 시작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 또한 국제 운송화물 취급업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을 경과하여 특정 보세운송업자의 승인 신청일 이전 3년간 보세운송을 한 적이 있어야 함
- 공인관세사제도의 법령 준수도는 공인관세사의 공인이 취소된 날 및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통관업법의 통관업 허가의 기준 및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력과 관련이 없는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인증공급자의 경우 수입자의 법령 준수도 항목 및 수출자의 법령 준수도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특정 수출자의 승인이 취소된 날 및 인증공급자의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해야 공인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화물 확인서의 작성 등 수출신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및 화물이 수출을 위해 외국 무역선 등에 승선하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나. 전자통관 시스템의 운영

- 수출입자의 경우 NACCS(수출입·항만정보관리시스템)를 사용하여 신고 및 특례 신고 물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특정 보세승인 및 특정 보세운송의 경우 NACCS를 사용하여 외국화물의 장치 등에 관한 업무 및 특정 보세운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관세사는 NACCS를 사용하여 통관 수속 및 재무 성령에 따라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인증공급자는 NACCS를 사용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함

## 다. 재정 건전성

- 재정 건전성은 재정 건전성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관리할 수 있는지, 통관 절차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의 통관업무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재무 관련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
  - 회계장부 및 재무 서류의 작성·보관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책임자가 명확하여야 하며, 체납의 경우 세관에 연락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지 등이 요건임
  - 그 밖에 문제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가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요건임

## 라. 법규준수규칙

- 법규준수규칙(Compliance Program; 이하 법규준수규칙)은 7가지 요건을 만족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며 보안기준(Security Standard)이 주된 판단 요소임<sup>431)</sup>

---

43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a1-1-1.htm>, (검색일자: 2016. 11. 1.)

- 법규준수규칙의 7가지 요건은 조직구성(Organizational Set-up), 거래업체요건(Contracting Parties (Business Partners) Requirements), 화물관련 보안(Cargo/Conveyance/Premises/Personnel Security), 통관절차 적법성(Due Customs Procedures) 세관 협력(Consultation/Cooperation/Communication with Customs), 위험 관리(Crisis Management), 교육(Education/Training), 내부감사(Internal Audit)임<sup>432)</sup>
  - 조직구성요건은 법규준수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부서의 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center office)를 각 부서에 설립해야 한다는 요건임
  - 거래업체요건은 거래 업체가 화물보안, 원활한 사업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규준수규칙 이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임
  - 화물보안은 화물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추적시스템, 화물의 운송경로 및 수단에 대한 점검체계, 시건장치, 감시카메라, 경비시스템, 출입자 관리 등의 보안시스템 수립에 대한 요건임
  - 통관절차 적법성은 화물관리리스트 작성(물품명세, 원산지 표기, 품목분류, 관세율, 적용되는 무역관련 법령)과 주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여부에 대한 요건임
  - 세관협력은 세관이 법규준수규칙을 운영하기 위한 위험보고체계 구성에 대한 요건임
  - 위험관리는 비상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및 예방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요건임
  - 교육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건임
  - 내부감사는 법규준수규칙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내부감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임
  
- 법규준수규칙을 실행하고 무역 관련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관리부서는 조직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타 부서에서 총괄관리부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음<sup>433)</sup>
  - 사업 규모나 조직체계에 따라 총괄관리부서가 법규준수규칙에 대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총괄관리부서로서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43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검색일자: 2016. 11. 1.)

43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index02.htm>, (검색일자: 2016. 11. 1.)

- 총괄관리부서가 아닌 타부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 업체는 현재의 사업 규모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법령감사부서의 경우 총괄관리부서 및 사업부서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감사의 연속성 및 후속조치 등을 실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상설부서를 회사에 설치해야 함
- 내부감사의 경우 이 업무를 실제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새로 내부감사부를 설치할 필요는 없음<sup>434)</sup>
- 내부감사는 업무의 적법성 심사, 무역 관련 업무 등에 관한 법령준수규칙 등 관련 규정의 운용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내부감사부의 경우 총괄관리부서 및 각 사업부문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비롯하여 개별 통관 관련 업무가 관세법, 통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법규준수규칙과 관련하여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sup>435)</sup>
- 수출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 수입신고 및 특례신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 담보제공 및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 특례신고 화물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 법규준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 책임자의 성명, 직위
  - 수출입업무 및 법규준수 감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 신청자의 사업 등과 관련 임원 등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의 명칭 및 목적과 관련한 사항
  - 수입신고 등 담보 및 납세관리 또는 특례신고 화물관리에 대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하는 업무의 운영 관리 및 지도에 관련한 사항
  - 세관과의 연락체제, 법령에 위반하는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장부 작성, 보관 및 관리 관련 사항
  - 신청자의 재무 상황과 관련된 내용

43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index02.htm>, (검색일자: 2016. 11. 1.)

435) 일본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 신청자의 임원 및 종업원 등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및 연수와 관련된 사항
-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참고되는 사항 등

## 마. 기타 AEO 공인기업에 요구되는 보안대책

- AEO 공인기업은 테러 관련 물자 등의 불법 수출입 방지의 관점에서 수출입화물의 안전한 보관·수송을 위한 다양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물리적 보안뿐만 아니라 인적 보안 및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sup>436)</sup>
- 물리적 보안은 화물의 출입 동선의 구축 및 보안과 화물관리로 나눌 수 있음<sup>437)</sup>
  - 출입 동선에 대한 보안은 공장이나 창고를 울타리로 둘러싸거나 침입자의 식별이 용이한 환경을 정비, 건물 등의 상태 파악 및 시정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키 보관 및 반출 관리의 실시, 반입화물의 신속한 이동, 반출화물 적재 시 건물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 등을 포함함
  - 화물관리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승선 전 개조 유무의 확인,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 빌린 빈 컨테이너화물을 보관하는 것 등임
- 인적 보안은 인적 관리 및 업무 위탁처 관리를 포함함<sup>438)</sup>
  - 인적 관리는 사원 채용을 위한 내부 규칙 확립,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직원 채용, 직원 ID 관리 규칙 제정, 직원의 이동 및 퇴직 시 유니폼 및 직원 ID 회수 그리고 직원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말함
  - 업무 위탁처 관리는 보안 상황을 포함한 기준에 따라 업무위탁처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위탁처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교육, 보안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43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index01.htm>, (검색일자: 2016. 12. 28.)

43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index01.htm>, (검색일자: 2016. 12. 28.)

43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index01.htm>, (검색일자: 2016. 12. 28.)

- 정보 보안은 정보관리규칙을 책정하여 문서나 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처분, 네트워크에 로그인 시에 본인 확인을 요구, 인증 기능이 ID·패스워드 방식인 경우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구조로 하고, 동일한 암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3 AEO 공인 절차<sup>439)</sup>

---

- AEO의 공인 절차는 신청자가 세관과의 사전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해당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 특례수입자 신청을 위해서는 C-9000, 법규준수규칙, 자가 심사서(Self-check sheet)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세관에 신청해야 함
  - C-9000 2통, 이와 관련된 법령 준수규칙 2통 및 등기사항증명서 1통을 첨부해야 함
- 신청의 철회 시,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수출입자 번호 및 철회이유를 기재한 특례수입자 공인신청서 1통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에서는 접수된 공인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서면심사한 후, 특히 화물보안 관리에 관한 항목들을 현장에서 심사하여 AEO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AEO를 공인함<sup>440)</sup>
  - 세관은 특례수입자·특정 수출자승인통지서(C-9010) 또는 특례수입자·특정 수출자 불공인통지서(C-9020)로 내용을 통지함
  - 통지는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1개월의 기간을 초과할 시 미리 신청자에게 취지를 통보함
  - 세관이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보관 장소, 시건장치, 컴퓨터 시스템, 조명 장치 등을 심사할 뿐 아니라 법령준수규칙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또한 심사함<sup>441)</sup>

---

439)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의2-5(특례수입자의 승인절차)

440) 강성훈 외 2인(2015), p. 90

## 4 AEO 혜택

- 특례수입신고제도 이용 시에는 납세신고를 사후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물품이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sup>442)</sup>
  - 수입신고 항목이 적으며 납세를 위한 심사 및 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통관 소요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재고관리에 이점이 있음
  - 담보제공 없이 납세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으며 1개월 안에 받은 수입허가마다 또는 일괄하여 특례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음
- 특정 수출신고제도 이용 시 수출화물의 위치와 상관없이(자사공장이나 창고, 항구 및 공항으로 이동 중에 있더라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sup>443)</sup>
  - 수출자의 보안관리 및 법령준수 반영으로 수출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선적이 가능함
- 인정통관업자제도의 경우 인정통관업자가 물품을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화물 장치 장소 또는 선적예정항구 소재지 세관장에 수출 신고 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인정통관업자가 물품을 인수한 후 납세신고 및 월별 납세신고를 할 수 있음
- 특정 보세운송제도 이용 시 건별 운송 승인이 생략되며 수출화물 운송 시 인정통관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신고한 화물에 대해 그 장소에서 직접 적재항 등으로 운송이 가능한 혜택이 있음
- 특정 보세승인제도 이용 시 요건을 갖춘 장소를 신고하여 보세장치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장소에 대해 세관검사를 받되 허가수수료는 무료이며 일반 보세장치장의 허가기간보다(6년)보다 특정보세승인제도의 허가기간(8년)이 길다는 이점이 있음<sup>444)</sup>

44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검색일자: 2016. 11. 1.)

442) 일본 관세법 제7조의 2

44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검색일자: 2016. 11. 1.)

44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검색일자: 2016. 11. 25.)

- 인증공급자제도 이용 시 보세지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지역으로 반입 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음

## 5 AEO 사후관리<sup>445)</sup>

---

- 사후관리는 ① 공인기업 자체 심사 ② 세관에서 실시하는 공인기관 심사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일본의 공인기준 준수여부 평가 기준은 업무절차를 기반으로 구성된 법규준수 규칙의 이행 여부이며 업무범위는 통관뿐만 아니라 수출입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인 후 심사와 자체평가 모두 법규준수규칙을 기준으로 자율관리 이행 여부를 평가하며 ‘내부감사체크리스트’, ‘업무적합성 체크시트’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업에 관리도구를 제공하고 있음<sup>446)</sup>
- 공인기업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자가 심사(self-audit)를 실시해야 함
- 내부감사는 무역 관련 업무 등이 법규준수규칙 및 각 업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하여 부정 등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감사부서는 AEO제도의 취지와 각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사내부서가 법령감사부문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령감사부서는 총괄 관리 부서, 각 사업 부문 등에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개별 통관 관련 업무가 관세법, 통관법 기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있는 것인지 심사함
  - 법령감사부문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황에 따라 외부감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세관의 AEO 담당부서와 미리 상의해야 함
  - 법령감사부서는 정기 감사로 법규준수규칙, 운영 절차 등에 준거한 업무 수행상황

---

44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4-1-2.pdf>, (검색일자: 2016. 11. 25.)

446) 강성훈 외 2인(2015), p. 98



등을 확인하는 통상 감사업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총괄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특별 감사업무, 각 부문에서의 요청을 받아 각 부문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지원인 감사 지원업무, 개별 수출입 관련 업무가 관계 법령 및 법규준수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의 심사인 법령 심사업무를 담당함

- 법령감사부서는 감사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 시 확인할 항목을 정해야 함
  - 감사의 확인항목은 공인 때와 같은 업무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수규칙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체크 시트 등을 참고로 정함
  - 특별 감사 검토는 총괄관리부서에서 보고받은 사고 내용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법규준수규칙의 업무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기존 업무 순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 일본 세관은 법령감사 절차를 사내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표준감사 전체 구성은 감사절차, 감사항목, 감사결과 보고서 및 개선결과 보고서로 이루어짐<sup>447)</sup>
  
- 법령감사부서는 감사업무 수행 후 감사보고서에 따라 감사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피감사부서의 책임자 및 총괄관리부문에 해당 감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표 2-XI-1〉 일본 내부감사 체크리스트(수입자·수출자용) 예시

구분	내용
1. 준수체제 운영 등	① 회사 조직, 경영 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변경이 아닌가? ② 법령 준수체제의 현황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세관에 보고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사업부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처에 대해 법령 준수에 필요한 지휘·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회사명 및 소재지의 변경 이외에 상기 ①에서 ③까지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관에 연락하고 있는가?
2. 통관절차의 이행상황 및 화물 관리 상황 등	① 세관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업무가 준수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44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faq/a2-5-1.htm>, (검색일자: 2016. 11. 2.)

〈표 2-XI-1〉의 계속

구분	내용
2. 통관절차의 이행상황 및 화물 관리 상황 등	② 적절한 화물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시설의 보전 조치, 필요한 업무 등이 준수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감사부서의 자체 평가	① 내부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② 감사의 방법은 적절한가? ③ 해당 감사 결과를 필요한 부서 등에 적정하게 보고하고 있는가? ④ 감사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된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문에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4. 거래업체 관리	① 통관 절차 또는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회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그 업무가 관련 회사 등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통관 절차 또는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당사에 의한 위탁처 기업의 지도·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③ 관련 회사 등에 특정 수출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소비세의 면세 조치의 적용을 받는 운송에 관하여 당해 자회사 등이 만드는 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도·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세관 기타 관공서에 대한 연락체제	① 세관 및 관계 부처의 연락 담당자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화물의 이상 통관 절차 또는 다른 법령 절차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세관 및 관계 관공서에 연락되는 체제 단계는 유지되고 있는가?
6. 내부 연락 체제	① 각 부서의 책임자 등의 연락체제는 준수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② 부서 간 연락체제는 준수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③ 화물의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규정준수규칙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관계 부서 등에 보고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④ 상기 ③의 사고 등에 대해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등이 적절히 강구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7. 재무 상황	① 재무 상태는 건전인가? ② 재무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 법인의 감사의 실시 등 감사체제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③ 납세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의 정보 전달 연락 창구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8. 교육 및 징벌	① 직원의 연수·교육규정 준수규칙 등에 따라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② 실시되는 연수 등의 항목은 세관 수속 및 화물관리 등의 적정화 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자료: 강성훈 외 2인 (2015), p. 9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naibu\\_kansa01.pdf](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naibu_kansa01.pdf), (검색일자: 2016. 12. 1.)

- 감사 결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감사부서는 피감사부서의 후임자에게 업무 개선조치의 권고를 실시해야 함
  - 개선조치의 권고를 받은 피감사부서는 총괄관리부서와 회동 후, 조치해야 할 기한 까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령감사부서에 보고해야 함
  - 법령감사 책임자는 피감사부문에서 개선 결과를 보고받은 후 개선 내용을 확인하여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총괄관리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함
  
- 최종적으로 총괄관리부서는 일련의 감사 보고서를 인증한 세관의 인증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 실시에서 개선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세관에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
  
-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인심사는 자가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인터뷰 및 법규준수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역 및 시설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함
  - 심사는 화물보관장소가 적정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보관장소 주변의 환경 포함)에 중점을 둠
  
-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세관은 개선명령(Administrative order for improvement)을 통지하며 통지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AEO 공인을 취소할 수 있음
  
- AEO 공인 유효기간이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자가 심사 결과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받은 후 2년 내에 사후심사를 받아야하며 이후 3년 마다 별도의 감사를 받아 공인 여부를 검토함

##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I. 통관제도

#### 1 통관의 의의

- 교토협약<sup>448</sup>)에 따르면 통관은 ‘물품의 내수용 반입, 수출 또는 다른 세관절차로의 이관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관절차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함<sup>449</sup>)
  - 이 정의에 따르면 세관절차<sup>450</sup>) 중에서 화주가 내수용 반입, 수출, 다른 세관절차로의 이관을 허용받기 위한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신고로부터 시작하여, 세관의 물품검사 및 신고서의 심사를 거쳐 물품이 내수용 반입, 수출, 다른 세관절차로 이관될 때까지의 절차만이 통관의 개념에 포함됨<sup>451</sup>)
- 일본은 관세법 <제67조>에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거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관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448) 공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sation of Customs Procedures)으로 세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통해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3년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개정 의정서가 채택되어 2006년 발효,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개정교토협약 발효」, 2006. 02.

449)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2장(정의) 제5항

450) 세관절차란 관세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계자와 세관당국이 이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2장(정의) 제9항

451)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673

- 일본은 통관과 관련하여 일본 관세법 제6장(통관) <제67조> 내지 <제7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장(통관)과 동법 기본통달 제6장(통관)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기본통달 제6장은 제1절 일반수출통관, 제2절 특수수출통관, 제3절 일반수입통관, 제4절 특수수입통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기타 관세 관련 법령인 관세정률법에서 관세법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각종 관세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통관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2 전자통관

### 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sup>452)</sup>

- 일본에서는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을 통하여 대부분의 수출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처리하고 있음
  - NACCS는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에 따른 수출입 통관 기타 세관 수속 및 관련 민간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sup>453)</sup>가 운영하고 있음
  - 기존에는 항공화물 소속 등을 실시하는 Air-NACCS와 해상화물 수속 등을 실시하는 Sea-NACCS가 독립적 시스템으로 운용되었으나 2008년 Sea-NACCS의 갱신, 2010년 Air-NACCS 개정을 계기로 Air-NACCS와 Sea-NACCS를 통합함
  - 2010년에는 관세 등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의 운용을 개시함으로써 관세 납부절차도 수행하고 있음

452) NACCS, <http://www.naccs.jp/aboutnacccs/aboutnacccs.html>, (검색일자: 2016. 11. 16.)

453) 「독립 행정법인 정리 합리화 계획」(2007년 12월 24일 각의 결정)에 따라 특수회사로 민영화하기로 결정되어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세관수속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 통관절차 외에도 관계부처 시스템의 일체적인 운영을 도모한 통관 단일창구를 실행하였음
  - 2008년 국토교통성의 항만 EDI시스템과 법무부의 입국심사시스템, 2010년 경제산업성의 무역관리시스템, 2013년 농림수산부의 동식물 검역절차시스템 및 후생노동성의 식품 위생 절차 시스템을 NACCS에 통합함
  - 2014년에는 의약품 등 절차를 전자화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NACCS와 관세행정 관계 부처의 각 시스템이 상호 접속·연계됨으로써 한 번의 입력과 송신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수출입·항만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 통관 단일창구의 실현에 의해 각 절차에 공통되는 정보의 중복 입력이 불필요하게 되며, 여러 행정절차의 신청을 하나의 창구에서 할 수 있게 되었음

## 나. 수출입코드

### 1)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Japan Shippers & Consignees Standard Code)<sup>454)</sup>

-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는 수출입 업무를 하는 당사자를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 ‘표준코드’, ‘수출입자코드’, ‘NACCS코드’, ‘JASTPRO<sup>455)</sup>번호’ 등으로 불림
  - 12자리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I와 O는 제외)이 조합된 코드로 회사의 명칭 및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번호가 데이터화됨
- 표준코드 없이 수출입 통관은 가능하지만 표준코드를 사용하면 세관 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통관이 가능함
  - 표준코드를 취득함으로써 무역업자의 이름을 간소화할 수 있고, 다른 무역업자와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화물관리와 무역업자 파악 등이 용이하게 되어 통관이 신속해짐
  - 통관실적이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됨에 따라 신뢰도가 증가하고, 통관 실적이 있는 화물은 기존 실적을 바탕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함

454) 일본 무역관계절차 간소화협회, <http://www.jastpro.org/code/index.html#4>, (검색일자: 2016. 10. 31.)

455) 표준코드를 운영하는 일본 무역관계절차 간소화협회(Japan Association for Simpl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의 약어

- 세관이 사용하고 있는 NACCS가 표준코드를 채용함에 따라 수출입 신고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화물 관리, 선하 증권(B/L)의 작성, 관세 등의 계좌이체, 각종 서류의 작성 등 NACCS 시스템 참여자의 민간업무에도 이용됨
  - 세관 통관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은행 등 NACCS 참여자의 서류 작성, 화물 관리사무 등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표준코드는 무역업자의 이름, 주소 등을 즉시 확정하기 때문에 NACCS 전용 계좌를 이용한 관세 등의 계좌납부, 거치 담보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제도의 이용이 가능함
  - NACCS에서 표준코드를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의 특례, 종합평가 신고 등 통관 제도의 이용이 가능함
  
- 표준코드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주민기본대장)을 JASTPRO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 JASTPRO가 신청에 따라 표준코드를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다음날 영업일에 NACCS에 반영되며, 수출허가서 및 수입허가서의 상단 업체명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함
  - 표준코드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sup>456)</sup>
    -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 세관 발급코드<sup>457)</sup>

- 세관 발급코드란 수출입업자와 해외 송하인(Shipper) 및 수하인(Consignee)을 식별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코드임
  - 증가하는 수출입 신고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아울러 수출입절차에서 수출입의 편리성 향상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함
  - 세관 발급코드는 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관 수출입자코드와 일본 업체의 무역 상대방이 되는 해외 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456) 신규등록 수수료는 6,600엔, 갱신등록 수수료는 3,150엔, 변경등록 수수료는 1,350엔

45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zeikancode.htm>, (검색일자: 2016. 10. 31.)

송하인·수하인 코드가 12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 12자리 코드의 첫 번째 자리는 수출입자의 경우 숫자, 송하인·수하인의 경우 알파벳(P 제외)으로 시작하여 2번째 내지 8번째 자리는 일련번호, 9번째부터 12번째 자리는 본·지점 코드로 구성됨

- 세관 발급코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수출입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 사항의 입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수출입자 세관표준코드가 있으며 NACCS에 의한 수출입 신고와 관련하여 포괄평가신고, 포괄보험을 이용할 수 있음
  -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거치 담보와 계좌이체 납부(전용계좌 및 실시간) 등의 이용도 가능함
  
- 세관 발급코드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메일<sup>458)</sup>로 발송하면 됨
  - 법인이 아닌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서 외에 주민표, 개업신고서 등의 확인서류를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송부하여야 함
  - 세관 발급코드의 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이 있던 전자메일 주소로 발급 통지서가 송부되며, 세관에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급 통지서를 보낼 때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됨
  - 세관 발급코드에 따른 등록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전자메일로 송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민표, 개업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송부하여야 함
  
- 표준코드와 세관 발급코드는 수수료, 대상 등은 상이하나 기능은 동일하므로 이미 표준코드를 발급받은 경우 따로 세관 발급코드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 세관 발급코드는 표준코드와는 달리 등록, 갱신, 변경 시 수수료가 무료이고, 코드 발급대상에 수출입자 외에 해외 송하인과 수하인도 포함됨
  - 표준코드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반면, 세관 발급코드는 유효기간이 없어 갱신이 필요없지만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코드가 삭제될 수 있음

---

458) tyo-chosa-iio-zeikancode@customs.go.jp



- 표준코드와 세관 발급코드를 모두 취득하고 세관 발급코드로 사용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 또는 NACCS센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특례수입신고제도, 특정수출신고제도, 포괄담보제도 등을 변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세관 수출입자코드에 따른 설정 변경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NACCS 전용계좌 이체납부, 실시간 계좌이체 납부 등을 세관 발급코드로 전환하려면 계좌명칭인 코드변경 신청서 등을 NACCS센터에 제출하고 NACCS 설정 정보를 변경하여야 함

#### 다.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sup>459)</sup>

- 일본에서는 NACCS를 도입하지 않은 수출입업자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세관관서의 창구에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를 설치하여 NACCS를 이용한 전자수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이용약관에 동의<sup>460)</sup>하는 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요금도 무료임
    - 다만, NACCS 미사용자에게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NACCS 도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에 따라 통관업자와 NACCS 사용자에게는 이용이 제한됨
  - 단말기가 설치된 세관<sup>461)</sup>의 관할 내에 있는 화물로 NACCS에 화물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화물은 전자신고가 가능함<sup>462)</sup>
    - NACCS 화물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말기에서 직접 화물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입(납세)신고에 관한 절차(수입 허가 전 반출 승인 신청 포함), 수출신고 및 반송신고 관련 절차, 화물정보 등록, 수출입신고 첨부 서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459)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useful/index\\_madoguchi.htm](http://www.customs.go.jp/zeikan/seido/useful/index_madoguchi.htm), (검색일자: 2016. 10. 31.)

460)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 이용약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세관 직원에 제출하면 되며 필요한 경우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등기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461) 2016년 현재 66개의 세관에 설치·운영 중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useful/leaflet26\\_2ichiran.pdf](http://www.customs.go.jp/zeikan/seido/useful/leaflet26_2ichiran.pdf), (검색일자: 2016. 10. 31.)

462) B/L번호, AWB번호, EMS번호 등의 화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화물은 정보등록이 가능하지만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은 화물정보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창구 전자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단말기를 이용한 수입(납세)신고 시 예비심사제도 이용을 위한 예비신고는 불가능하지만 개별 납부기한 연장 및 포괄적 납부기한 연장은 이용 가능함
-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수출입 관련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이외에 세액의 자동 계산, 납부서 자동생성 등의 장점이 있음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등의 운송서류, 포장명세서(P/L), 기타 법령에 의한 허가·승인증<sup>463)</sup> 등의 신고 첨부서류를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USB 등에 저장하여 지참하면 됨
  - 품목코드, 거래가격 등 필요 사항을 입력하면 과세가격(수출의 경우 신고가격)의 산출과 세액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 수출입신고에 따른 입력 항목의 일부가 등록된 화물정보에서 생성되며, 신고한 내용을 USB 등에 저장하였다가 재사용이 가능함
  - 관세 등의 납세를 위한 납부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계좌이체 방식 외에 ATM,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 후 세관에 수출입신고 첨부서류를 서면 또는 PDF 등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세관은 심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지정표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 등을 전달하며 검사 및 납세 종료 후 수출입 허가 통지서를 발급함

---

46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수속은 불가능함

## II. 수입 통관 절차

- 일본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일본에 도착된 물품 (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을 일본에(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을 거쳐 일본에) 반입하는 것을 말함
- 외국물품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한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 납부 또는 징수, 수입 허가의 일련의 행위를 수입 통관절차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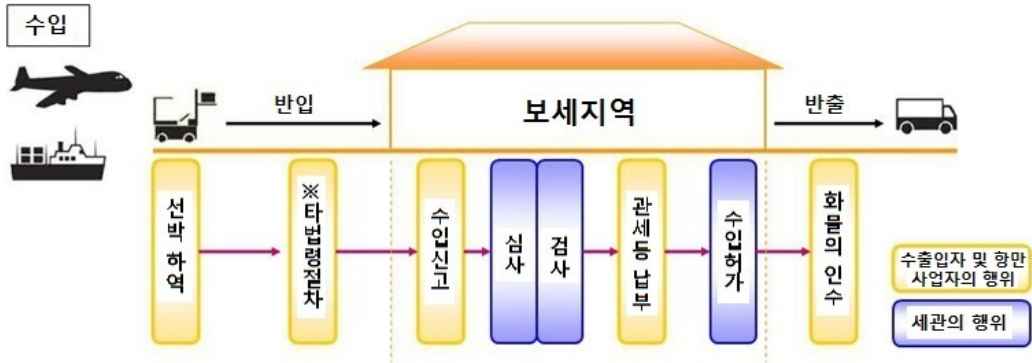
### 1 일반수입통관

---

-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검사를 거쳐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 이루어짐
  - 항공회사,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행함
- 수입자는 항공회사, 선박회사에서 운송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입수하여 수출자가 보낸 송품장 등과 함께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

- 세관은 수입신고 된 화물의 서류심사,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세금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수입을 허가함
- 수입허가서를 보세구역의 담당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

[그림 3-II-1] 일본의 수입 절차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2-2\\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2-2_jr.htm), (검색일자: 2016. 10. 31); 이상엽 외 2인(2014), p. 152에서 재인용

### 가. 수입신고

- 일본 관세법 <제67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67조>에 의한 수입 신고와 함께 하여야 함<sup>464)</sup>
- 수입신고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이며 수입허가를 청구하는 행위로서 수입절차가 수입신고에 따라 개시됨<sup>465)</sup>

464) 일본 관세법 제7조(신고)

465)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 I』, 2012, 6, p. 204

-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음<sup>466)</sup>
  - 관세법 <제4조>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초가 되는 물품의 수량과 성질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시의 현황에 따른다고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5조>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입신고일에 적용하는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1) 수입신고인<sup>467)</sup>

- 관세법 <제67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물품을 수입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이며, 송장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이 됨
  - 물품이 수입허가 전에 보세구역 등에서 전매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자가 수입자가 됨
  - 관세정률법, 잠정조치법 등에서 규정한 감면세, 관세할당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인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제한된 자의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 경우에도 통관업자 등에 의한 대리신고는 인정됨

### 2) 수입신고시기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에 관계되는 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에 해야 함<sup>468)</sup>
  - 다만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특례 수입자가 NACCS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됨

466)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8, p. 684

46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3_jr.htm), (검색일자: 2016. 10. 31.)

468) 일본 관세법 제67조의 2(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시기)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외국무역선, 부선 등에 적재한 상태, 보세구역 반입 전 등에 수입신고할 수 있음<sup>469)</sup>
- 외국무역선 또는 부선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 및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물품이 타 화물과 혼재되지 않고, 적재상황, 물품성질, 형상 등이 선박에서 검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해당 화물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재상태에서 수입신고할 수 있음<sup>470)</sup>
- 수입신고를 NACCS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 당해 수입신고에 관계되는 수입물품이 일본에 신속하게 반입될 필요가 있고 당해 수입물품의 성질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단속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세구역 반입 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화물 도착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수입이 허가됨<sup>471)</sup>
- 기타 관세조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세율의 인상, 감면조치의 폐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등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처리가 가능함<sup>472)</sup>

### 3) 수입신고 서류

#### 가) 수입(납세)신고서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sup>473)</sup>
- 수입신고서에는 물품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물품의 원산지 및 적출지 및 송하인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물품을 적재하고 있던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인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함<sup>474)</sup>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서는 납세신고서를 겸하므로 수입(납세)신고서라 칭함

469)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의 4(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특례)

470)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의 2-3-1(수입화물의 본선취급), 67의 2-3-2(수입화물의 부선취급)

471)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의 4 제3항

472)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의 2-3-3(수입화물의 반입전 신고)

473)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수입신고의 절차)

474) 일본 관세법 제7조 제2항

[그림 3-11-2] 수입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

別紙 3-1

税関様式 C 第 5020 号

### 輸入(納税)申告書

1 (内国消費税等課税標準数量等申告書兼用)  
申告年月日 平成26年7月1日

2 あて先 東京税関 長殿 船(取)卸港 Tokyo

3 輸入者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3-1-1 (印)  
住所氏名印 税関三郎  
電話番号 00-0000-0000

4 仕出人 〇・〇〇 〇〇〇〇 U.S.A  
住所氏名 ABC Co., Ltd. 輸入、移入又は輸入先

IC	IS	IN	IA	BP
RE-IMP	ISK	IMR	IAC	IBP

船(取)卸港符号	
船(機)籍符号	2
貿易形態符号	518
原産国(地)符号	304
輸入者符号	99999
※ (調査用符号)	

品番	名	単位	正味数量	申告価格(CIF) △内国消費税等課税標準額	税率 △種別等・税率	関税額 △内国消費税等税額	減免税未項 適用区分
15 ( )	9105.21	000	17 1 2	18 320 750	19 FREE	20 0	
16 税戻額	-4						
22				320,750	23 6.3%	24 20,160	
14	WALL CLOCK	21		20,100	26 17 63%	27 5,423	
29	1 CARTON SABURO ZEIKAN 1-1, 3 CHOME,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JAPAN			32 関税法施行令第4条第1項第3号 又は第4号に係る事項有 <input type="checkbox"/> 無 <input checked="" type="checkbox"/>	28 税額 合計 (欄数) 1 1 額	¥0- ¥20,100 ¥5,400	関税(0欄) △税(欄) △消費税(1欄) △地方消費税(1欄)

納期限の延長に係る事項		延長しない税額	
関税	円(特定期) 月		
酒	円(特定期) 月		
酒	円(特定期) 月		
酒	円(特定期) 月		
酒	円(特定期) 月		
酒	円(特定期) 月		
酒	円(特定期) 月		
酒	円(特定期) 月		
酒	円(特定期) 月		

31 仕入書 (有) 税関通関 輸入貿易管理令 別表第1・2第 関税法の条関係許可・承認等 法令名 食品・植物・家畜・薬事・化審

30 通関士記名押印 山田 一夫 (印)

(注) 1. ※印の欄は記入しないで下さい。  
2. この申告による課税標準又は納付すべき税額に誤り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ときは、修正申告又は更正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なお、輸入の許可後、税関長の調査により、この申告による税額等を更正することができます。  
3. この申告に基づく処分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処分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2月以内税関長に対して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規格 A4)

**〈작성방법〉**

수입신고서는 검은 색의 펜으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고, 정정할 때는 정정하는 내용을 2개의 선으로 지우고 위쪽에 정정 사항을 기입하고 정정 인을 날인하면 된다.

- (1) 신고 연월일
- (2) 신고하는 세관 관서
- (3) 수입자 자신이 수입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 주소, 성명(원칙적으로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 날인
- (4) 수출자 주소, 성명(원칙적으로 송장상 발송인)
- (5) 통상 수입의 경우 IC<sup>1)</sup> 틀 안에 × 표시
- (6) 화물선 목적항
- (7) 적재선(기) 명칭
- (8) 화물선(항공기)의 입항 연월일
- (9) 원산지
- (10) 적출국 도시명과 국가
- (11) 선하증권(B/L)의 번호
- (12) 화물 보관장소
- (13) 신고번호 등: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기입
- (14) 품명(송장의 상품명)
- (15) ‘번호’란에는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코드 번호 6자리, ‘통계 분할’란에는 통계 번호 3자리
- (16) 실행 관세율표상 해당되는 통계 단위
- (17) (16)의 단위에 의해 표시되는 수량
- (18) CIF 가격(엔화)
- (19) 적용되는 세율, 신청 구분에 따라 아래 표에 × 표시(면세의 경우 Free)
- (20) 신고가격(천엔 미만 버림)에 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관세액) 엔 단위까지 기입
- (21) 소비세, 주세 등의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부과 물품에 × 표시
- (22) 신고가격에 관세액(백엔 미만 버림)을 더한 금액
- (23) 내국소비세의 세율
- (24) (20)과 같이 계산. 엔 단위까지 기입
- (25) (24)에 기입한 소비세액에서 백엔 미만 반올림한 금액
- (26) 지방소비세의 세율
- (27) (25)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엔 단위까지 기입
- (28) 세목마다 세금을 계산하고 각 세목마다 각각의 합계액(백엔 미만 버림)
- (29) 화물 외장 총개수, 마크 및 번호
- (30) 수입승인증서 등이 있으면 그 번호
- (31) 첨부 서류에 따라 "有"란에 × 표시
- (32) 거래 내용에 따라 평가 신고가 필요하며, 해당 부분에 × 표(종합 신고의 경우에는 접수 번호 포함)

주: 1) BP: 수입 허가 전 반출 승인 신청, IS: 창고 입고 승인 신청, IM: 이입(국내에서 물자 이동) 승인 신청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5020k.pdf](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5020k.pdf), (검색일자: 2016. 10. 31.)



## 나) 첨부서류

- 수입신고 시에는 송장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관세편익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sup>475)</sup>
  - 송장만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에 관계되는 물품의 운임 명세서, 보험료명세서, 포장명세서, 가격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sup>476)</sup>
  - 경제연계협정 등과 같은 관세 편익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체약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sup>477)</sup>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기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물품, 검사완료 또는 조건의 구비를 필요로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시에 허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sup>478)</sup>
  - 수입물품에 대한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은 관세법 기본통달 [별표 1]의 제3란에 규정된 허가서 등에 의함
  - 수입물품에 대한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 조건의 구비의 증명은 관세법 기본통달 [별표 2]의 제3란에 규정된 서류에 의함<sup>479)</sup>

## 4) 수입신고 세관

- 수입신고는 화물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함<sup>480)</sup>
  - 세관의 관할 지역은 다음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

475) 일본 관세법 제68조(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의 제출서류)

476)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

477)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

478) 일본 관세법 제70조(증명 또는 확인)

479)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aisei/zeikantsutatsu/kihon/TU-S47k0100-s06-03~04.pdf>, (검색일자: 2016. 10. 31.)

480) 세관별 관할 보세구역은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hozei/zouchi.htm> 참조, (검색일자: 2016. 10. 31.)

〈표 3-II-1〉 일본의 세관과 관할 지역

세관명	관할지역
하코다테 세관	홋카이도, 아오모리 현, 이와테 현 및 아키타 현
도쿄 세관	야마가타 현, 군마 현, 사이타마 현, 치바 현(일부), 도쿄, 니가타 현과 야마나시 현
요코하마 세관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토치 기현, 치바 현(일부) 및 가나가와 현
나고야 세관	나가노 현, 기후 현, 시즈오카 현, 아이치 현과 미에 현
오사카 세관	토야마 현, 이시카와 현, 후쿠이 현, 시가 현, 교토 부, 오사카 부, 나라 현과 와카야마 현
고베 세관	효고 현, 돗토리 현, 시마네 현, 오카야마 현, 히로시마 현, 도쿠시마 현, 가가와 현, 에히메 현 및 고치 현
모지 세관	야마구치 현, 후쿠오카 현(일부), 사가현(일부), 나가사키 현(일부), 오이타 현과 미야자키 현
나가사키 세관	후쿠오카 현(일부), 사가 현(일부), 나가사키 현(일부), 쿠마모토 현과 가고시마 현
오키나와 지구 세관	오키나와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yotsu/map/index.htm>, (검색일자: 2016. 10. 31.)

### 5) 수입신고 시간

- 수입신고는 세관의 통관창구 개청시간에 하여야 하는데 개청시간은 세관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여야 함<sup>481)</sup>
  - 각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청시간 내에 세관 창구 또는 NACCS를 통하여 그 사무의 요청신고를 하여야 함
- NACCS를 통한 수입신고의 경우 개청시간 외 사무요청의 신고가 있고 간이심사 처리로 구분되는 물품은 개청시간 외에도 수입신고가 접수되는 때에 허가가 이루어짐
  - 서류심사,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구분 통지는 개청시간 외에 실시되지만 심사 또는 검사는 개청시간 내에 행해짐<sup>482)</sup>

481) 각 세관별 개청시간은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sukan/jikangai.htm> 참조, (검색일자: 2016. 10. 31.)

## 나.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 1)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 관세법 <제67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필요한 경우 세관의 검사를 거쳐 허가되는데, 검사 여부는 간이심사, 서류심사, 화물검사의 3가지로 구분하여 결정됨<sup>483)</sup>
- 간이심사는 NACCS에 의하여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며, 서류심사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고, 화물검사는 세관원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함

〈표 3-II-2〉 수입신고 후 심사의 구분

구분	심사 종류	심사 내용
구분 1	간이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면제</li> <li>- 무세 또는 면세,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제도나 계좌이체 방식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납세) 신고 후 즉시 수입 허가</li> <li>- 단,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li> </ul>
구분 2	서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에 통관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li> </ul>
구분 3	화물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원에 의한 화물검사를 받아야 함</li> </ul>

자료: 이상엽 외 2인, 『주요국의 통관제도 일본편』, 2014. 9. p. 160

- 서류심사는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로 구분되며, 심사 방법은 보통심사와 중점심사가 있음
  - 원칙적으로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수입이 허가되며, 사전심사 시 수입신고의 형식요건인 품명, 수량 등, 납세신고의 형식요건인 신고가격, 품목분류, 감면세 적용 등의 타당성 여부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여부 등을 확인함<sup>484)</sup>
    - 심사관 등이 각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관 정보 종합 판정시스템, 각종 자료, 정보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중점심사를 실시함
  - 사후심사는 납세에 관한 사전심사에서 발견된 의심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수입허가 후 실시하여 사전심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임<sup>485)</sup>

482) 일본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세관 관련 업무의 취급에 대한 통지 제6장 1-1

483) 일본 시스템 도입 관서 수입통관 사무처리 체제에 대한 통지 제1-I-2(심사구분의 종류)

484) 일본 수입통관사무처리 체제에 대한 통지 제1-III-1(사전심사)

- 다른 법령의 해당 여부, 품목분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확인 등 수입신고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위해 수입신고에 따른 물품과 신고내용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화물검사를 실시함<sup>486)</sup>
- 화물검사는 현장검사, 본선검사, 부선검사, 검사장검사, 위임검사의 5종류가 있으며 견본확인, 일부지정검사, 전부검사의 3가지 방법으로 행함

〈표 3-II-3〉 화물검사의 종류와 방법

구분	검사 종류	검사 내용 및 대상
종류	현장검사	거대중량화물, 위험화물, 부패 또는 손상화물, 벌크화물, 검사 개수가 많은 화물 등 세관검사장 반입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화물에 대하여 현재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
	본선검사	쌀, 보리, 밀, 소금, 황화철광, 규사 등의 물품이 다른 화물과 동일선 선창 내에 혼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적재상황과 화물의 성질 및 형상이 본선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고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한 화물은 본선에서 검사 <sup>1)</sup>
	부선검사	양파,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 염화마그네슘, 목재, 선철, 철강판 등의 물품이 다른 화물과 혼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적재상황과 화물의 성질 및 형상이 본선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고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한 화물은 부선에서 검사 <sup>2)</sup>
	검사장검사	현장, 본선, 부선검사에 규정된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장에 반입시켜 검사
	위임검사	화물의 장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일부 화물에 대해서 보세담당직원에 위임하여 현품검사
방법	견본확인	수량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 그 일부를 견본으로 채취하여 품목분류, 가격검정, 타 법령 확인 등을 검사
	일부지정검사	성질 및 수량 확인이 필요한 화물 중 균질등량으로 포장되거나 포장별로 내용 및 실수량이 표시되거나 포장명세서 등이 첨부되는 등 그 일부에 대한 검사만으로 화물 전체의 성질 및 수량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일부만 검사
	전부검사	포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변질, 손상된 화물, 감세, 면세, 환급의 조건의 확인이 필요한 것 등 견본확인, 일부 지정검사에 의하여 화물의 성질, 수량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화물 전체에 대하여 검사

주: 1) 본선에 적재된 상태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와 동일

2) 부선에 적재된 상태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와 동일

자료: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3-8(수입검사의 종류), 67-3-10(수입검사 방법)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485) 일본 수입통관사무처리 체제에 대한 통지 제1-III-3(사후심사)

486) 일본 수입통관사무처리 체제에 대한 통지 제2(화물검사업무 등)

## 2) 예비심사제도

- 예비심사제도란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나 수입 관련 절차의 종료 전이라도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 심사 및 검사 필요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sup>487)</sup>
  - 예비심사를 이용하면 서류의 심사는 화물의 도착 전에, 화물검사 여부의 결정은 수입 신고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과 화물 반출을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함
  - 신선화물, 거래처의 납기기한이 엄격한 화물, 판매시기 및 사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화물, 다른 법령 절차가 필요한 화물, 화물의 종류가 많아 서류심사에 시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유용함
  
- 예비심사의 신청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능하며, 화물이 장치될 예정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예비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서류심사와 검사의 사전통지를 완료함<sup>488)</sup>
  - 예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예정일을 기입한 수입(납세)신고서와 송장, 기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신고는 수입신고 예정일의 외국 환율이 공시된 날 또는 예비신고를 하려는 화물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은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중 늦은 날에 제출하면 됨
  - 예비신고된 화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검사의 사전통지는 수입신고예정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통지를 한 후에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사전통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예비신고를 한 화물의 수입신고는 예비신고서의 신고일자 란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하여 수입신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sup>489)</sup>
  - 수입신고로 전환된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의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검사)가 완료 되었으면 관세 등의 납부 후 수입을 허가함

48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8\\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8_jr.htm), (검색일자: 2016. 10. 27.)

488) 일본 예비심사제도에 대한 통지 2, 예비신고, 3, 예비신고 사무처리 요령

489) 일본 예비심사제도에 대한 통지 4, 수입신고

## 다. 관세의 납부

-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의 세액을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건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수입허가 후에도 납부할 수 있음
-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부서와 함께 일본은행(국세의 수납을 하는 대리점을 포함) 또는 그 관세의 수납을 하는 세관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함<sup>490)</sup>
  - 현재 일본에서는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납부,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 등의 전자적 납부를 시행하고 있음

### 1)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Multi-Payment Network) 방식<sup>491)</sup>

-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의 수납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공공요금 등이 납부된 때에 수납기관에 통보되는 네트워크임
  - 전화, 가스 등의 요금, 각종 세금 등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되면 당해 납부 정보가 금융기관에서 수납기관으로 통보됨
- 세관도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따라 관세 등의 납부방법의 선택사항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세관의 심사 종료 후 수입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됨
  - 또한 전자방식의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수입신고부터 관세납부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신회선을 이용할 수 있어 세관 창구 방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함
    -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세 등 수납서비스의 제공은 금융기관의 임의이므로 납부 전에 금융기관의 서비스 상황, 제공방법, 운용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490) 일본 관세법 제9의 4조(납부절차)

49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312\\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312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이용해 관세 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그 수입 신고 등을 할 때에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납부한다는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세관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납부서에 같음하여 수납기관번호(세관은 00120), 납부번호, 확인번호 등을 표시한 납부번호 통지정보가 전달됨
  - 통지정보의 납부번호 등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ATM 등 편리한 채널을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함

## 2)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직접방식)<sup>49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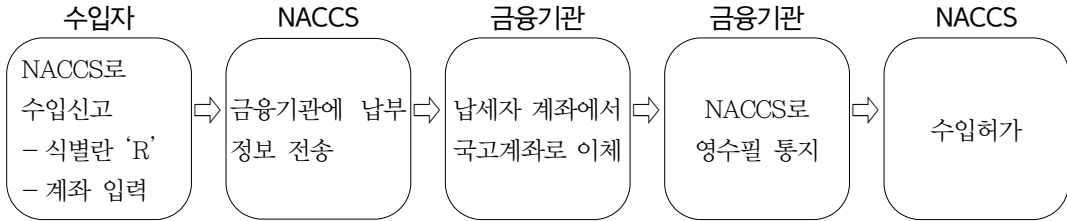
-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이란 납세자의 일반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부방법으로 직접방식(Direct)이라고도 함
  - 사전에 이용자, NACCS센터, 금융기관<sup>493)</sup>의 삼자 간에 계좌이체 계약을 체결한 자가 NACCS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sup>494)</sup> 납부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직접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음
- 직접방식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NACCS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 방법 식별란에 'R'을 입력하고 사전에 지정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함
  - 세관의 수입신고 심사가 종료되면 NACCS에서 금융기관에 계좌번호, 납세액 등 납부 정보가 전송되고, 납부 정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미리 지정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세액을 국고금 계정에 이체 처리함으로써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짐
  - 납부가 이루어지면 영수 통지정보가 금융기관에서 NACCS로 전송되고, 영수 통지에 따라 NACCS에서 영수, 수납 등의 처리를 하고 수입이 허가됨

492)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31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313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493) 직접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NACCS, [http://www.naccscenter.com/\\_files/00106450/20161003ginko.pdf](http://www.naccscenter.com/_files/00106450/20161003ginko.pdf), [http://www.naccscenter.com/\\_files/00105811/shinyoukinnko160905.pdf](http://www.naccscenter.com/_files/00105811/shinyoukinnko160905.pdf) 참조, (검색일자: 2016. 11. 2.)

494) 기존에는 NACCS 전용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의 납부가 가능했으나 2017년 3월까지 전용계좌 방식은 폐지되므로 계속해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계좌를 이용한 직접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함

[그림 3-II-3]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



자료: 이상엽 외 2인(2014), p. 166

- 직접방식은 자동으로 관세 등의 납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신고 시마다 납부를 지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화물의 조기 반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자동이체 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에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수입신고 할 때마다 유리한 납부수단의 선택이 가능함
  -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정성 및 편리성이 높아 지고, 납부 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일반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계좌 잔액을 증액하면 즉시 납부가 가능한 상태가 됨
  
- 납부에 따른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고, 납기 연장을 하는 경우 직접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함

## 라. 수입허가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관장은 신고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을 허가함<sup>495)</sup>
  - 수입이 허가되면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므로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관세가 납부된 경우만 수입을 허가함<sup>496)</sup>

495)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일본 관세법은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질적 요건은 사후심사를 하고 형식적 요건의 심사 결과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보임

496) 일본 관세법 제72조(관세 등 납부와 수입허가)



-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으로서 국내에 도착하더라도 관세법상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형식상 수입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적법하게 인취되는 것은 수입허가를 받은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을 적용함<sup>497)</sup>

**〈표 3-II-4〉 수입허가된 물품으로 간주되는 것**

수입허가 간주 물품
① 일본 우편사업주식회사가 교부한 우편물(신고가 필요한 것 제외)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서신을 송달하는 자가 교부한 서신
② 허가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제6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징수된 것
③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품(제69조의 2 제2항),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품(제69조의 11 제2항) 몰수(제118조 제1)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것
④ 수용 물품의 공매 또는 매각(제84조 제1항 내지 제3항), 영치물건 또는 압수물건의 공매(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회부되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수한 것
⑤ 영치물건 또는 압수물건의 귀속(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것
⑥ 통고처분(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것
⑦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어 몰수가 집행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것 또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것 등

자료: 일본 관세법 제74조

**마. 물품 반출**

- 수입물품은 수입허가를 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한바, 이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 허가 후 반출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시간 장치하는 것은 수입자의 거래 시기를 놓치게 되는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본에서는 허가 전 반출 승인제도, 특례수입신고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음

497) 일본 관세법 제74조(수입이 허가된 물품으로 보는 것)

### 1) 수입허가 전 반출승인제도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허가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음<sup>498)</sup>
  - 승인을 받아 국내로 반입된 외국물품은 과세물건의 확정(제4조), 적용법령(제5조), 관세 등 납부와 수입허가(제72조) 등의 규정을 제외하고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봄
- 허가 전 반출은 귀중품, 위험물, 변질 손상 우려 물품 등 특별히 반출이 긴급하거나 전시회 출품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때, 협정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늦어지는 때, 양륙 후 수량이 확정되는 계약에 의한 화물<sup>499)</sup> 등에 이용할 수 있음<sup>500)</sup>
  -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수입금지물품,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등 또는 검사 완료 등의 증빙 또는 확인이 되지 않은 물품, 원산지 위장 표시물품의 경우는 허가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없음
  - 오로지 관세의 납기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등 명백하게 허가 전 반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에 관계된 물품이 유세인지 무세인지 관계없이 승인을 해도 무방함<sup>501)</sup>
- 허가 전 반출 승인을 받은 후 불명확했던 수량, 가격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가격교섭이 장기화되는 등 특별한 거래실태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을 경과해도 수입허가에 이르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허가의 촉진을 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sup>502)</sup>

498) 일본 관세법 제73조(수입허가 전 물품의 반입)

499) 수입신고 시 수량, 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의 잠정가격신고제도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50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1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13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501)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3-3-2(수입허가 전 인취 승인 기준)

502)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3-3-4(수입허가 전 인취 승인 후의 처리)

## 2) 특례수입신고제도

- 특례수입신고제도는 보안관리 및 범규준수체제가 정비된 자(AEO공인기업)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sup>503)</sup>
  - 수입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반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입자의 원가 절감 등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수입신고 시 납세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항목이 대폭 축소됨 - 통상의 수입신고에 있어 신고항목은 55개이지만 특례신고의 경우 19개 항목임<sup>504)</sup>
  - 납세를 위한 심사 및 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므로 통관소요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재고 관리 등이 용이함

### 가) 특례수입신고제도의 신청 및 요건

- 특례수입신고제도를 통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수입자 승인신청서를 주된 무역업무를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AEO제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sup>505)</sup>
  - 승인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수출입자부호, 특례신고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범칙, 체납 등의 사실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특례수입자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일정한 인적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관세법 등의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유무, 최근 3년간 관세 및 수입 화물 관련 내국세의 체납 여부, 화물의 수입에 관한 업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0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9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901_jr.htm), (검색 일자: 2016. 11. 2.)

504)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9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903_jr.htm), (검색 일자: 2016. 11. 2.)

505)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의 2-5(특례수입자의 승인신청 절차)

〈표 3-II-5〉 특례수입신고제도 승인의 요건

특례수입자 인적요건

- ① 과거 3년간 「관세법」 기타 국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졌거나 또는 「관세법」 또는 「국세범칙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② 과거 2년간 상기 ① 이 외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사실이 없을 것
- ③ 과거 2년간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지 않았을 것
- ④ 폭력단원 등이 아닐 것
- ⑤ 상기 ①에서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아닐 것
- ⑥ 폭력단원 등에 의해 그 사업활동이 지배되지 않을 것
- ⑦ 과거 3년간 관세 또는 수입화물 관련 소비세 또는 지방소비세 대해 증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⑧ 최근 3년간 관세 또는 수입화물 관련 내국소비세 등을 체납한 적이 없을 것
- ⑨ 최근 3년간 동안 특례수입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⑩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화물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⑪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화물의 수입에 관한 업무(세관 절차 및 화물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당해 수입자(법인의 경우는 종업원을 포함)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법령 준수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자료: 관세법 제7조의 5(승인의 요건)

나) 특례수입자의 수입 및 납세신고

(1) 수입신고

- 특례수입신고제도에 따른 수입(인수)신고는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 시마다 화물을 장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관서에 함<sup>506)</sup>
  - 송장, 보험료 명세서 등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타 법령 절차 관련 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 타 법령 절차에서 필요없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세관에서 당해 절차의 필요성 판단을 위하여 송장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06) 일본 관세법 제7조의 2(신고의 특례)

- 특례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수입신고시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이 필요함
  - 담보 금액은 ‘전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 특례신고하여 납부한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관세 등의 합계액이 가장 많은 달의 합계액’ 또는 ‘향후 1년간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특례신고에 따라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의 합계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담보를 제공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이 기간에 수입허가를 받은 특례신고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담보함
  - 담보제공명령통지서에 기재된 제공기간의 초일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례신고화물에 관한 수입신고는 허가되지 않으며, 특례수입자의 승인이 취소됨

〈표 3-II-6〉 특례수입신고 시 담보의 제공

담보제공 사유
① 지난 1년간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② 지난 1년간 납부기한 후 특례신고를 한 경우 ③ 최근 결산(분기 결산을 포함)시의 유동비율이 100%에 못 미치고,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미치지 않는 경우 다만, 상기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가 필요없음 ㉠ 특정 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경우 ㉡ 분기 결산을 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분기 결산 시 유동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했으나 그 것이 두 분기 연속된 것이 아닌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완전 모회사가 상기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기 ① ~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의 8-1(특례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

(2) 납세신고

- 특례수입신고를 통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물품의 납세신고는 당해 물품에 관계되는 과세표준,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특례신고서)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물품의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함<sup>507)</sup>

507) 일본 관세법 제7조의 2(신고의 특례)

-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특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레수입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바. 서류보관 및 사후조사

### 1) 서류보관

- 물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해당 장부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sup>508)</sup>
  - 서류보관 의무보관 기간은 수입허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장부는 7년, 관련 서류 등은 5년임
  - 다만, 관세법 <제68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됨

〈표 3-11-7〉 수입서류 보관 의무

종류	기재사항	보존기간
장부 비치	품명, 수량, 가격, 수출자 성명(명칭), 수입허가 연월일, 수입허가번호를 기재(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기존 장부, 송장 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기입한 것으로도 가능)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7년
관련 서류	수입허가 화물의 계약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포장명세서, 가격표, 공급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매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수입허가를 받은 화물의 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전자적 기록	전자거래(EDI거래, 인터넷거래 등에 의한 거래,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정보를 수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당해 전자거래의 거래정보(거래에 관하여 수취하거나 송부하는 구매주문서, 계약서, 송품장, 영수증, 견적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에 보통 포함되는 사항)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chobo.htm>, (검색일자: 2016. 11. 15.)

508) 일본 관세법 제94조(장부의 비치)

## 2) 사후조사

- 사후조사란 수입자의 사업소 등을 세관 직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을 하는 조사를 말함<sup>509)</sup>
  - 수입화물의 통관 후 수입화물에 관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신고에 대하여 시정과 동시에 수입에 대한 적절한 신고지도를 실시하여 적정한 과세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함
  - 세관직원은 수입화물에 대한 계약서, 송품장, 기타 무역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함

## 2 특수수입통관

### 가. 우편물

- 우편물도 서신을 제외하고 수입 시에 통관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성질상 일반적인 화물과 구별하여 간이절차에 따라 처리함
  - 일본은 현재 우편사업주식회사의 관리하에 국제우편물이 처리되고 있음
  - 우편사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된 우편물은 수입허가된 물품으로 간주하여 교부된 때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지만, 특정한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함

#### 1)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외국에서 보낸 우편물 중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이거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선물 등의 기증물품, 발송인의 일방적인 송부로 인하여 가격을 모르는 물품 등은 수입신고가 필요 없음<sup>510)</sup>
  - 서신을 제외한 모든 우편물은 세관검사 대상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됨

509)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chobo.htm>, (검색일자: 2016. 11. 16.)

51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kusaiyubin/61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kusaiyubin/6101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 세관검사는 세관 국제우편출장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일본우편주식회사 우체국에서 실시됨

〈표 3-II-8〉 우편물의 간이 통관절차

구분	배송 및 납부 방법
무세 또는 면세의 경우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 배송
세금합계액이 1만엔 이하 또는 1만엔 초과 20만엔 이하로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	세금납부를 일본우편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취지를 신청하고 세금 및 취급수수료를 납부하면 세관에서 일본우편주식회사를 경유하여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 및 '납부서', 우편물을 직접 배달
기타의 경우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가 통지되면 배달 우편국에서 '납부서'를 교부받아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세금납부 후 우편물 수령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kusaiyubin/61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kusaiyubin/6101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물품, 기증품 등인 우편물에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가 발송되어 납세를 통지함<sup>511)</sup>
  - 과세통지서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의 품명, 관세 등의 과세표준, 세율, 징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취인은 과세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계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편물을 받을 수 없음
  
- 과세통지된 우편물의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됨
  - 동일 발신인으로부터 동일 수신인에게 동일 시기에 분할하여 우송된 것은 당해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과세가격을 합계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희망하지 않아 세관에 신청한 때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됨

511)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7-4-1(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 등의 송부)



2)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기증품 등은 제외)은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의 납부를 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음
  - 외국에서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통관 수속의 안내문이 발송<sup>512)</sup>되고, 수취인은 이에 따라 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어 통관을 의뢰하거나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수입신고된 우편물은 심사 및 검사가 끝난 후 세관 또는 통관업자 등으로부터 납부 세액이 통지되고 수취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함
  - 세액의 납부가 확인되면 수입허가가 되고, 우편물의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면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됨

3)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 세관의 국제우편출장소는 우편물의 검사 결과 물건의 내용, 가격 등이 불명확한 경우, 타 법령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이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문을 발송함<sup>513)</sup>
  - 안내문의 연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안내문을 송달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함

〈표 3-II-9〉 우편물의 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물건의 내용, 가격이 불명한 경우	송장 등 내용 및 가격이 명확한 자료
수입 무역관리령,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처에서 발급한 허가·승인서
별송품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국 시에 세관에 제출해 확인 날인을 받은 별송품 신고서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kusaiyubin/6102\\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kusaiyubin/6102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512)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6-4-2(수입 우편물의 통관절차)

513)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6-4-4(직접 과세처리하지 않는 수입 우편물의 처리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당해 안내 날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수입 수속을 하지 않는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발송인에게 반송됨<sup>514)</sup>
  - 수입에 필요한 수속 등을 위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신문의 수취인 기재란에 소속이 늦어지는 이유를 기재한 후 송부하면 2개월을 한도로 보관이 가능함

**나. 휴대품·별송품<sup>515)</sup>**

**1) 휴대품의 수입통관**

- 일본에 출입국하는 여행객이나 선박 등의 승무원 휴대품 등은 법령상 구두신고가 인정<sup>516)</sup>되지만,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세관에서는 공항 등 세관검사장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입이 규제된 물품의 유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에 대해 확인함
  - 일본에 입국하는 자는 휴대품에 대하여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함
- 여행자 휴대품 중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일정 범위의 것은 면세되며,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간이세율이 적용됨

**〈표 3-II-10〉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품목		면세범위	비고
주류		3병	1병에 760ml 정도의 것
담배	궐련	200개비	일본제 담배는 외국산 담배와 별도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 기타 담배 250g까지 면세수입 가능
	엽궐련	50대	
	기타 담배	250g	
향수		2온스	2온스는 약 56ml

514) 일본 보통우편에 관한 시행규칙 제149조

515)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10(여행용구 통관 취급하는 화물의 수입신고)

516)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수출신고의 절차) 및 제59조(수입신고의 절차)

〈표 3-II-10〉의 계속

품목		면세범위	비고
미곡		연간 100kg	지방 농정 사무소 등이 확인한 '쌀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세관 제출용)'를 세관에 제출
기타 품목	해외시가의 합계 금액이 20만엔 이하인 물품	20만엔	1품목당 해외 시가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로 취급되며, 20만엔의 면세범위의 계산에 불포함
	기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와 담배는 면세 제외 -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분명히 본인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면세되지 않음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eitaibetsuso/71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eitaibetsuso/7104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 2) 별송품의 수입통관

- 별송품이란 입국하는 자가 이사화물, 휴대품 등과 별도로 외국에서 우편, 항공편, 택배 등을 이용하여 송부한 물품으로 입국 후 6개월 이내의 것은 휴대품과 동일하게 간이한 절차로 수입통관이 가능함
  - 일본에 입국하는 자는 휴대품에 대하여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통을 제출하고, 그 중 1통을 세관에서 확인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면 이를 보관하여야 함
  - 특송품의 면세범위, 간이세율은 휴대품과 동일하게 적용됨
- 별송품이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도착한 경우 세관의 별송품 통관 담당부서에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수령함
  - 선박회사, 항공사, 운송업자 등이 물품의 도착 통지를 하면, 통지를 한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운송관계서류를 수령하여야 함
  - 수령한 운송관계서류와 입국 시 세관의 확인을 받은 별송품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심사 및 검사가 완료된 후 과세대상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별송품이 우편을 통하여 도착한 경우 세관의 국제우편출장소에서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문이 송부되고, 수취인은 입국 시 확인을 받은 별송품 신고서를 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하여야 함

- 여행자 등의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수입되는 별송품은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범위 내의 것은 면세됨
- 별송품의 외장에 별송품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과세물품으로 취급되어 국제 우편물 과세통지서가 송부되기도 하므로 납부 전 면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세관 등에서 별송품 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물건의 외장, 운송장 등에 별송품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소액물품

### 1) 20만엔 이하 물품

#### 가) 간이통관

- 20만엔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일반 수입화물에 비해 간단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있음
  - 수입신고서의 품명란 각 란의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의 물품은 간이통관이 가능함
    - 다만 수입승인대상이거나 관세정률법 무조건 면세(제14조), 외교관용물품(제16조) 등의 면세규정을 제외한 기타 세금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잠정조치 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는 간이통관에서 제외됨
  - 관세정률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화물 컨테이너의 재수출 면세 또는 <제3호>의 수출화물의 용기로 사용되는 화물의 재수출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도 간이통관이 가능함<sup>517)</sup>
- 수입화물에 대하여 소액화물 간이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소액화물 간이통관처리’라고 표시하여 신고함<sup>518)</sup>
  - 이 경우 수입신고서 상단의 신고종별 부호, 적재선(기)명, 입항 연월일, 선하증권번호, 적재선(기) 국정부호, 무역형태별 부호, 원산지 부호, 수입부호와 수입신고서 중단의 세금감면조항 적용 구분 부호 등의 기재 생략할 수 있음

517)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1(수입소액화물 간이통관 처리)

518)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2(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 화물의 수입절차)

- 신고자가 간이통관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통관절차에 의함
- 소액화물 간이통관 처리되는 화물에 적용되는 세번, 세율,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후의 수입신고 시에 선례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함<sup>519)</sup>
-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상기 화물에 적용한 세번, 세율 및 관세법 <제70조>의 비해당에 대하여는 선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나)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의한 수입신고

-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의 품목별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AWB) 또는 송품장에 수입신고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당해 AWB 등으로 일반 수입신고서를 대신할 수 있음<sup>520)</sup>
- 다만 수입승인대상이거나 관세정률법 무조건 면세(제14조), 외교관용물품(제16조) 등의 면세규정을 제외한 기타 세금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잠정조치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는 제외됨
- AWB 등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AWB 등에 수입(납세)신고서라고 표시하여 2통을 제출하고, 수입이 허가된 때에는 허가의 취지가 기재되어 신고자에게 1통이 교부됨
- AWB 등의 내용이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세액 등의 신고 등의 규정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야 함 - 화물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 지역,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화물장치 장소 등

519)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3(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 화물의 세번 등의 처리)

520)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4(AWB 등에 의한 수입신고)

## 2) 1만엔 이하 물품

### 가) 적하목록 등에 의한 수입신고

- 개별 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서류, 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이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된 경우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음<sup>521)</sup>
- 이 경우 전용 신고서에 화물의 수입자명,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적하목록 등을 첨부하여 적하목록 등에 수입 품목별 화물의 과세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함<sup>522)</sup>

### 나) 1만엔 이하 물품의 면세

-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관세 및 소비세가 면세됨<sup>523)</sup>
  - 소비세 이외의 기타 내국 소비세(주세, 담배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그 세금은 면세되지 않음
  - 또한,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여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특히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 가죽가방, 핸드백, 장갑, 편물제 의류, 가죽제의 신발류 등은 면세되지 않음
-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물품은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sup>524)</sup>
  - 한 건의 신고에 따른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으로 하나의 송품장에 따른 화물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송품장에 기재된 모든 화물 과세가격의 합계액
  - 우편물은 1개의 포장에 포장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으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 수취인에 같은 시기에 분할되어 우송된 것은 당해 분할된 모든 우편물 과세가격의 합계액

521)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6(적하목록 등에 의한 수입신고)

522)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7(적하목록 등에 의한 신고 절차)

523)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8호(소액물품의 무조건 면세)

524)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21(소액물품의 무조건 면세)

## 라. 기타 특수물품

### 1) 소금<sup>525)</sup>

- 수입한 소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금사업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함
  - 소금의 판매 또는 사용(자가사용을 포함)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금 특정 판매업체로 세관장의 등록을 받아야 함
  - 특수용 소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용 소금 특정 판매업체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의약품·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 외품 또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소금
    - 시약 염화나트륨
    - 세균 등의 시험 연구를 위한 매체로 사용되는 소금 기타 독점적 학술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소금
    - 구리 도금 처리 과정 등에서 독점적으로 촉매용으로 제공되는 소금
    - 철, 아연, 기타 금속 성분을 함유하는 염으로 직육면체 또는 구형 등의 덩어리로 성형된 것
    - 염화나트륨 함량이 60% 이하의 소금으로 염화나트륨과 그 외의 성분을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것
    - 판매처를 한정하여 시험적으로 판매되는 염으로 연간 판매 수량이 100톤 이내의 것

### 2) 담배<sup>526)</sup>

- 담배와 시가 담배 등의 담배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재무대신의 특정 판매업의 등록을 받아야 함
  -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52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2\\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2_jr.htm), (검색일자: 2016. 11. 16.)

526)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3_jr.htm), (검색일자: 2016. 11. 16.)

- 입국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휴대하거나 별송하여 수입하는 담배는 면세 수량을 넘는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이 부과됨

〈표 3-II-11〉 담배의 세율

종류	관세	담배세 및 담배특별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필련	잠정 면세	11,500엔/1,000개피 <sup>1)</sup>	- <sup>2)</sup>
파이프 담배	협정 29.8% 또는 기본 35%	12,244엔/1kg	8%
시가	협정 29.8% 또는 기본 35%	12,244엔/1kg	8%

주: 1) 입국자가 수입하는 담배의 담배세 등의 세율 특례에 의한 것

2)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담배는 소비세 미부과

자료: 일본 관세국, [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3\\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3_jr.htm), (검색일자: 2016. 11. 16.)

### 3) 쌀<sup>527)</sup>

-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지방 농정국 또는 식물방역소에 신고하여 수입 수량을 확인받아 미곡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 사용 목적의 것은 1명당 연간 100kg에 한하며, 이 경우 관세 및 소비세는 면제됨
- 개인 사용 목적 이 외의 경우 지방 농정국 등에 등록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과 등록금 납부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함
  -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면세, 〈제15조 제1항〉 특정용도 면세, 〈제16조 제1항〉 외교관용 물품 등 면세, 〈제19조의2 제1항〉 과세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된 쌀은 제외됨

52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4_jr.htm), (검색일자: 2016. 11. 16.)



4) 주류<sup>528)</sup>

- 수입하고자 하는 주류의 총량이 10kg 이하인 것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음
  -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병(1병당 760ml)까지 관세, 소비세 및 주세가 면제됨
- 자기의 영업장(주점, 음식점 등)에서 음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주류는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 자기의 영업장(주점, 음식점 등)에서 음용에 공하는 업을 하는 자가 수입한 주류를 자기의 영업장(주점, 음식점 등)에서 음용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주류 판매업자가 보세지역에서 주류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그 품목, 알코올 도수 등의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주류 품목 등의 표시 방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이 경우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 및 소비세는 면제되지만 주세는 과세됨

---

52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5\\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kojin/3105_jr.htm), (검색일자: 2016. 11. 16.)

### Ⅲ. 수출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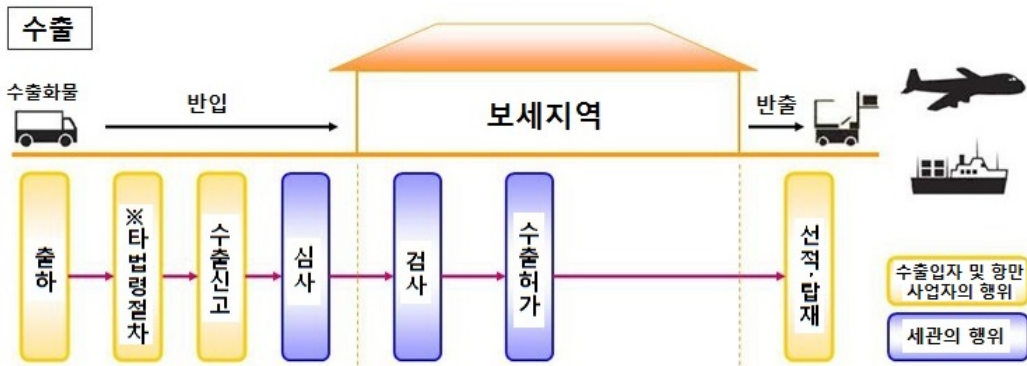
- 일본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함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수출신고, 물품검사, 수출허가의 일련의 행위를 수출 통관절차라 함

#### 1 일반수출통관

---

- 화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화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그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지만, 수출 허가는 원칙적으로 수출하려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이루어짐
  - 수출신고는 수출자가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을 반입하는 보세구역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하여야 함

[그림 3-III-1] 일본의 수출 절차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2-2\\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102-2_jr.htm), (검색 일자: 2016. 10. 31); 이상엽 외 2인(2014), p. 187에서 재인용

### 가. 수출신고

- 일본 관세법 <제67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1) 수출신고인

- 일본 관세법 <제67조>는 화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자는 화물 수출자임
  - 통관업법 규정에 의하면 통관업자는 업으로서 수출통관절차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지만, 그 통관업자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통관업자가 대리하는 경우도 수출신고자는 화물의 수출자임<sup>529)</sup>

529)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 I』, 2012. 6, p. 196

## 2) 수출신고 서류

### 가) 수출신고서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는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sup>530)</sup>
- 수출신고서에는 물품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물품의 목적지 및 수하인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물품을 적재할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530)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수출신고의 절차)

[그림 3-III-2] 수출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

輸 出 申 告 書

税関様式C第5010号

あ て 先 ① 東京税関 長殿 申告年月日 ④ 平成16年4月1日  
 積込港 ⑤ 東京  
②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3-1-1 積載船(機)名 ⑥ AMERICA MARU  
 輸出者住所氏名印 税関 三郎 出港予定年月日 ⑦ 平成16年4月3日  
 仕向地 ⑧ BANGKOK THAILAND  
 代理人住所氏名印 \_\_\_\_\_ (都市) (国)  
 蔵置場所 ⑨ ○○ H/W  
③ ○-○○ ○○○○ THAILAND 本船扱  中扱   
 仕向人住所氏名 XYZ Co., Ltd. ⑩

11  
 申告番号  
 999-0000-(D)  
 積込港符号  
 船(機)籍符号 1  
 貿易形態別符号 518  
 仕向国(地)符号 111  
 輸出者符号 99999  
 ※ (調査用符号)

品名	統計品目番号	単位数	量	申告価格 (F. O. B)	※ (調査欄)
(1) <u>⑫ USED MOTOR VEHICLE</u>	<u>⑬ 8703.22-910</u>	<u>⑭ NO</u>	<u>⑮ 10</u>	<u>⑯ 2,500 000</u>	
(2)					
(3)				<u>⑰</u>	
				CIF US\$23,809	

数量、記号、番号

⑱ 10UNITS BANGKOK IN DIA 1-10  
CARGOS TO BE CONTAINERISED VIA ○○ HOZEI WAREHOUSE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及び「輸出貿易管理令」関係 ⑲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第48条第1項に基づく輸出貿易管理令第1条第1項別表第1の項  (該当)  (非該当) ⑲  
 輸出貿易管理令第2条第1項第2号の項  ⑳  
 輸出貿易管理令第4条第1項第1号の項(号)  ㉑  
 輸出貿易管理令第1条第1項別表第1の項  (許可)  (非許可) ㉒  
 輸出許可証又は輸出承認証の番号 ㉓  
 保税運送区分 陸路、海路、空路  ㉔  
 年 月 日から 年 月 日まで

申告書 1 枚 1 冊 ㉕  
 添付書類 (輸出貿易管理令関係を除く)。  
 仕入書  ㉖  
 輸出取引承認書   
 その他関税法第70条関係許可・承認書等 (法令名)   
 関税定率法、関税暫定措置法第 条第 項第 号関係   
 国内消費税輸出免税(還付金)関係

※ 税関記入欄

1 検査場検査 \_\_\_\_\_  
 2 現場検査 \_\_\_\_\_

※ 受理 \_\_\_\_\_  
 ※ 審査 \_\_\_\_\_

通関士記名押印 \_\_\_\_\_

(注) ※印の欄は記入しないで下さい。  
 「不服申立てについて」この申告に基づく処分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処分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2月以内に税関長に対し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規格A4)

**〈작성방법〉**

수출신고서는 검은 색의 펜으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고, 정정할 때는 정정하는 내용을 2개의 선으로 지우고 위쪽에 정정 사항을 기입하고 정정 인을 날인하면 된다.

- (1) 신고하는 세관의 명칭
- (2) 수출자 자신이 수출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주소, 성명(원칙적으로 송장에 기재된 발송인), 날인
- (3) 화물 수취인(화물을 수출하는 상대방)의 주소, 성명(원칙적으로 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
- (4) 신고 연월일
- (5) 화물 적재항(공항)의 명칭
- (6) 화물 적재 선박명칭(항공기의 소속 회사명 및 AIR WAY BILL NO)
- (7) 출항 연월일
- (8) 목적지와 국가명
- (9) 화물 보관장소
- (10)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입
- (11)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기입
- (12) 일반적인 상품명(예를 들어, 송장의 상품명)
- (13) 수출통계 품목표의 번호(6 자리) 및 분할번호(3 자리)
- (14) 수출통계 품목표의 통계 단위.(두 통계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입)
- (15) (14)의 '단위'에 의해 표시되는 수량 기입
- (16) FOB 가격 엔화 기입
- (17) 결제가 FOB 전 이외 총액 1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매매기준가격 및 결제금액에 밀출 표시
- (18) 화물의 총개수, 외장 마크 및 번호 기입. 화물을 컨테이너 포장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포장 화물 및 컨테이너 포장 장소
- (19) 무기 관련화물 등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 내지 15항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고 '적용' 틀 안에 × 표시
- (20) 마약 원료, 특정 유해 폐기물, 희귀 야생 동식물 등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2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 항목과 호의 번호를 기입하고 '적용' 틀 안에 × 표시. 해당하지 않는 화물의 경우 '비해당' 틀 안에 × 표시
- (21) (19) (20)에 해당하는 화물로 수출무역관리령 제4조에 따라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허가요(許可要)' 틀 안에 × 표시
- (22) 항목의 번호로 16를 기입.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에 해당하고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물의 경우 '허가요'틀 안에 × 표시 기입.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하지만 무기 제조 등에 이용되지 않는 화물의 경우 '허가 불요' 틀 안에 × 표시
- (23) 수출 허가증 등의 번호를 기입 ((19)에서 (23)까지 기입 방법을 모르는 경우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기입)

- (24) 수출 신고에 따라 보세 운송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구분과 운송기간
- (25) 신고서의 장 수 및 란 수를 기입
- (26) 첨부 서류에 따라 오른쪽 '유(有)'란에 × 표시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5010k.pdf](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5010k.pdf), (검색일자: 2016. 11. 2.)

## 나) 첨부서류

-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하는 때에 송장 또는 송장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sup>531)</sup>
  -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수출 관계 타 법령의 허가·승인증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관세정률법 등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경감, 면제 또는 환급과 관련해 수출신고 시 특정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해 서류
    -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소비세의 수출면세를 받는 화물의 수출 사실 증명 신청서 등

## 나.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 NACCS를 통한 수출신고 역시 수입신고 시와 마찬가지로 심사가 간이심사, 서류심사, 화물검사의 3가지로 구분되어 통보됨<sup>532)</sup>
  - 전산상의 정보를 통해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간이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함
  - 서류심사를 위해서는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함
  - 수출허가를 위한 화물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세관장은 화물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검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 장소 외 검사를 허가함

531)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위한 서류 등)

532) 일본시스템 도입 관세 수출통관 사무처리 체제에 대한 통지 제1-I-2(심사구분의 종류)

## 다. 보세구역 반입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1년 관세법 개정 이후 모든 수출화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수출허가를 위해서는 보세구역 반입이 필요함
  - 수출통관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특정수출신고제도 등을 마련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 특정수출신고제도

- 특정수출신고제도는 보안관리 및 법규준수체제가 정비된 자(AEO공인기업)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출자에 대하여 보세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sup>533)</sup>
  - 특정수출자가 되면 수출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수출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출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선적이 가능해져 소요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특정수출신고제도를 통한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수출자 승인신청서를 주된 무역업무를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AEO제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승인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수출입자부호, 범칙 등의 사실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함<sup>534)</sup>
- 특정수출자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일정한 인적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관세법 등의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유무, 임직원, 대리인 등의 폭력 단원 여부, 화물의 수출에 관한 업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53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6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601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534)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의 10(특정 수출자의 승인 신청 절차 등)



〈표 3-III-1〉 특정수출신고제도 승인의 요건

특정수출자 인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과거 3년간 「관세법」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li> <li>② 과거 2년간 「관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한 타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형을 받지 않았을 것</li> <li>③ 과거 2년간 상기 ①~② 이 외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사실이 없을 것</li> <li>④ 과거 2년간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지 않았을 것</li> <li>⑤ 폭력단원 등이 아닐 것</li> <li>⑥ 상기 ①에서 ⑤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아닐 것</li> <li>⑦ 폭력단원 등에 의해 그 사업활동이 지배되지 않을 것</li> <li>⑧ 최근 3년간 동안 특정수출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li> <li>⑨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화물의 수출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li> <li>⑩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화물의 수출에 관한 업무(세관 절차 및 화물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당해 수출자(법인의 경우는 종업원을 포함)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법령 준수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li> </ul>

자료: 일본 관세법 제67조의 6(승인의 요건)

- 수출관리령에 따라 안전보장규제를 받는 물품, 특정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 등의 경우 특정수출신고제도에 따른 수출신고를 할 수 없음
  - 이란, 이라크,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로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은 특정수출제도의 대상이 아님

2) 특정위탁수출신고제도<sup>535)</sup>

- 인정통관업자에 의한 통관수속, 특정보세운송업자에 의한 화물운송에 의한 화물의 경우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인정통관업자와 특정보세운송업자가 취급하는 화물은 적정한 화물관리 등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특정위탁수출신고제도는 이들이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함

<sup>535)</sup>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604\\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extsukan/5604_jr.htm), (검색일자: 2016. 11. 2.)

- 인정통관업자는 수출자로부터 통관수속 의뢰를 받는 경우 해당 의뢰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화물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포괄 또는 개별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출자가 계속적으로 특정위탁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특정위탁수출포괄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함
    - 포괄신고를 하는 경우 인정통관업자는 적어도 반년에 1회 화물장치장소에서 화물관리체제가 확보되어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결과 화물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확인된 경우 송장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NACCS를 이용하여 특정수출포괄신고를 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확인된 경우 신고 때마다 신고화물을 확인한 후에 신고수속을 함
  - 포괄신고를 하는 자 이외의 자가 통관수속을 의뢰한 경우 인정통관업자는 그 신고 관련 화물의 특정보세운송업자와 신고에 관한 화물과 송장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NACCS를 이용하여 신고를 함
    - 이 경우 수출신고 때마다 특정보세운송업자의 코드,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세구역 코드 등을 NACCS에 입력해야 함
  
- 특정보세운송업자가 수출자로부터 특정위탁수출신고 관련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인정통관업자로부터 수취한 화물관련 정보와 운송할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화물의 기호, 번호, 수량, 신고시기 등 당해 화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운송할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 관련 세관에 통보하여야 함
  - 특정보세운송업자는 운송할 화물의 세관검사, 운송 중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해 인정통관업자와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라. 수출허가

- 수출허가는 수출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서와 현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타 법령상 규제를 충족하며 수출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 부여됨
  -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은 외국화물이 되고 외국으로 운송할 상태가 됨

## 마. 서류보관 및 사후조사

### 1) 서류보관

- 물품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는 수출화물에 대한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해당 장부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sup>536)</sup>
  - 서류보관 의무보관 기간은 수출허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임
  - 다만, 관세법 <제68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됨

〈표 3-III-2〉 수출서류 보관 의무

종류	기재사항	보존기간
장부 비치	품명, 수량, 가격, 수입자의 성명(명칭), 수출허가 연월일, 수출허가번호를 기재(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기존 장부, 송장 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기입한 것으로도 가능)	수출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관련 서류	수출허가 화물의 계약서 및 수출허가 화물 거래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수취한 서류	수출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전자적 기록	전자거래(EDI거래, 인터넷거래 등에 의한 거래,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정보를 수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당해 전자거래의 거래정보(거래에 관하여 수취하거나 송부하는 주문서 등에 보통 기재되는 사항)	수출허가일의 다음날부터 5년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chobo.htm>, (검색일자: 2016. 11. 16.)

### 2) 사후조사

- 사후조사란 수출자의 사업소 등을 세관 직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을 하는 조사를 말함<sup>537)</sup>
  - 수출화물의 통관절차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기업의 적정한 수출관리체제 및 통관처리체제 구축을 촉진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수출 통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세관직원은 수출화물에 대한 계약서, 송품장, 기타 무역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수출신고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함

536) 관세법 제94조(장부의 비치)

537)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shiryo/chobo.htm>, (검색일자: 2016. 11. 16.)

## 2 특수수출통관

### 가. 휴대품

- 외국물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외국물품의 휴대반출신고서’에 품명, 수량, 특징 등을 기입하여 현품과 함께 세관의 출국창구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sup>538)</sup>
- 외국물품을 기내 또는 선박으로 위탁하는 경우 항공사 등에 물품을 맡기기 전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귀국 시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구별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나. 우편물<sup>539)</sup>

- 가격이 20만엔 이하인 우편물을 외국에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는 필요없고 일본우편주식회사 배달우체국에 신청하면 됨
- 배달 신청 시 배달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세관표부 또는 세관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배달우체국에 제시된 우편물은 세관의 국제우편출장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관우체국에 보내져 세관검사를 받은 후 외국에 발송됨
  - 세관검사 시 타 법령에 의해 수출 허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 우편물 통관수속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이 경우 안내문에 따라 수출 수속을 하여야 함
- 배달우체국에 제시하기 전 세관 국제우편출장소, 가까운 세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사전검사를 받은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제시되면 원칙적으로 개봉검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발송됨

538)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2-8(여행용구 통관 취급하는 화물의 수출신고)

539)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6-2-1(수출 우편물의 통관절차)

- 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외국에 보내는 경우 세관에 송장 등 수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수출신고된 우편물은 세관심사 및 검사가 종료된 후 수출허가를 받으면 외국으로 발송됨
  - 수출신고가 필요한 우편물도 사전검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면 사전검사를 하는 세관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함
    - 위약품 반송, 수리를 위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등의 경우 수출 시 세관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관세 등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 참고문헌

- 강성훈·김미영·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 I·II』, 2012. 6.
- 국회예산정책처, 『일본경제 장기침체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2015. 8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 산업통상자원부, 「TPP 참여의 득실과 한국의 입장」, 『함께하는 FTA』, vol.27, 2014. 8.
- 이상엽·김미영·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정재호·김미영·홍현표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
- 정재호·김수영·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근거한 북한 수출입 금지 조치 연장 발표」, 2015. 3. 31.
- 일본 관세국, 「원산지규정의 개요」(原産地規則の概要), 2016. 6.
- 일본 관세국, 「일반특혜관세설명서」(一般特惠関税マニュアル), 2016

일본 관세국, 「EPA」(原産地規則), 2016. 6.  
 일본 대사관 내부 자료 「行政不服審査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2016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5*, 2016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14*, 2015

〈웹사이트 자료〉

외교부, <http://www.mof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stat.kita.net](http://stat.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keri.koreaexim.go.kr](http://keri.koreaexim.go.kr)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  
 일본 내각 관방 TPP 정부 대책 본부, <http://www.cas.go.jp>  
 일본 무역관계절차 간소화 협회, <http://www.jastpro.org>  
 일본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NACCS) <http://www.naccs.jp>  
 일본 식물방역소, <http://www.maff.go.jp>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일본 중앙은행, <https://www.boj.or.jp>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  
 IMF, <http://www.imf.org>  
 JETRO, <https://www.jetro.go.jp>  
 KOTRA, <https://www.kotra.or.kr>  
 Web Japan, <http://web-japan.org>  
 WTO, <http://www.wto.org>

## 부록. 제2호 승인물품대상 국가 및 지역

구 분	대상물품
<p>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덴마크, 도미니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중국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오만,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네갈, 솔로몬, 세인트키츠,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p>	<p>고래 및 그 조제품</p>
<p>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 베르데,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라소,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리타니아, 멕시코, 모로코, 나미비아, 네덜란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생 피에르 미클롱, 세인트 빈센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시리아, 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영국, 미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참다랑어 (대서양 또는 지중해에서 축양된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p>
<p>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한민국,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남방참다랑어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p>
<p>중국, 북한 및 타이완</p>	<p>연어와 송어 및 이들 조제품</p>



구 분	대상물품
일본의 지역에 속하지 않는 바다 (해당 해수면을 선적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외국 항만에서 선적된 경우 및 일본에서 출어한 어선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이며, 본국 이외에서 출어한 선박에서 적재된 것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바다 포유류 및 그 조제품 물고기, 갑각류 기타 수생 동물 및 이들 조제품 동물성 생산품 해초 및 그 조제품
이라크	1990년 8월 6일 이후 이라크에서 불법으로 취득된 문화재
북한	모든 화물
에리트레아	총포류, 화약류, 폭발물, 군용품 등
리비아	총포류, 화약류, 폭발물, 군용품 등
소말리아	목탄
시리아	군용품 등
시리아	2011년 3월 15일 이후 시리아에서 불법으로 취득 된 문화재
우크라이나(크림자치공화국 또는 세바스토폴 특별시를 원산지로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모든 화물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안티가 바부다,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차드, 칠레,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그루지야,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 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파생물

구 분	대상물품
<p>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라오,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사모아, 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공화국,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p>	
<p>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차드, 칠레,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그루지야,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라오,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p>	<p>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파생물</p>

구 분	대상물품
<p>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사모아, 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공화국,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안도라, 북한, 페로제도, 아이티, 키리바시, 마셜, 마이크로네시아, 대만, 통가, 터크스케이커스제도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선적지로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북한, 콩고 민주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그루지야,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바티칸,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남아프리카,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공화국, 동티모르, 토고, 통</p>	<p>오존층 파괴물질</p>

구 분	대상물품
<p>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선적지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안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바티칸,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Науру,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사모아, 산마리노, 부르키 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마케도니아 공화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선적지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 특정물질 및 이를 함유하는 것</p>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일본 II 편 -

---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주)정인애드  
인 쇄  
I S B N 978-89-8191-877-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